

消費稅 負擔 分布와 高稅率
商品市場의 正常化에 관한 研究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에 經濟開發을 시작하여 世界的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高度成長을 이룩해 오면서 所得水準과 生活水準이 급속히 상승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충되는 效率(efficiency)과 衡平(equity)의 문제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岐路에 서게 되었고, 결국에는 高度成長 發展戰略에 입각하여 效率을 選擇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히 衡平에 대한 論議는 相對的으로 위축되어 왔으며, 마찬가지로 政府의 財政活動의 근간이 되는 租稅制度도 역시 效率에 치중하여 衡平이 相對的으로 적게 부각되어온 側面이 있었다.

그러나 經濟發展 過程에서 效率을 추구하면서 필요에 의해 빈번하게 稅法이 改正되어 온 결과, 現行의 租稅制度는 衡平性이 미흡하거나 또는 效率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일부에서 乖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名目的인 制度만 남고 實效性이 상실되면서 資源配分의 歪曲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내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分配의 問題가 부각되면서 租稅負擔의 衡平性에 대한 관심과 論議가 漸增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名分만 남고 實效性을 상실하고 있는 稅制에 대한 改善의 必要性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包括的인 시각에서 現行 租稅制度를 考察하면서 改善方案을 제시해보기 위한 일환으로 間接稅, 그 중에서도 특히 消費稅에 치중하여 上記의 두 가지 분야를 集中的으로 研究하였다. 本 報告書의 첫번째 研究主題에서는 消費稅의 階層別

負擔 分布에 대하여 規範的인 측면에서의 衡平問題보다는 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 측면에서 稅負擔 分布와 不平等度를 측정하여 數理的으로 分析하는 것에 치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規範經濟學(normative economics)的인 측면에서의 衡平에 대한 判斷基準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둘째 研究主題에서는 租稅制度나 稅務行政面에서 實效性を 잃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現況 및 問題點을 實證的으로 分析하면서 歪曲된 資源配分을 시정하기 위한 改善方案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提供하는 實證分析의 研究結果와 資料가 向後的 稅制改編에 크게 도움이 되어 先進化된 租稅制度 및 稅務行政을 定立하는 데 一助하게 되기를 바란다.

本 報告書는 成明宰 專門研究委員이 執筆하여 完成되었다. 著者는 本 報告書를 發刊하기까지 資料整理 및 原稿整理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申基銑 研究員과 李賢暎, 申壽美 研究助員의 勞苦에 진심으로 感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에 담긴 내용은 著者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10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第 1 部 머리말	15
I. 消費稅의 機能과 位相	17
II. 問題提起	20
第 2 部 消費稅의 都·農別,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析 및 政策改善方向	23
I. 序 論	25
II. 租稅負擔과 消費稅의 現況	28
III. 資料와 方法論	32
1. 資 料	32
2. 所得階層	33
3. 所得과 消費支出, 稅目別 消費稅額의 算出	35
4. 分配的 逆進度 指數	36
IV. 稅負擔 實證分析	38
1. 實證分析(都市家口)	38
가. 附加價値稅	43

나. 特別消費稅	43
다. 教育稅	51
라.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51
마. 逆進度 分析	52
2. 實證分析(農村家口)	54
가. 附加價值稅	58
나. 特別消費稅	58
다. 教育稅	59
라.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59
마. 逆進度 分析	60
3. 關聯 研究와의 比較	61
가. 附加價值稅	61
나. 特別消費稅	64
다. 教育稅	65
라.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66
4. 主要 外國의 階層別 消費稅 負擔 分布	66
가. 美 國	67
나. 英 國	70
다. 네덜란드	70
라. 덴마크	71
마. 스웨덴	72
V. 稅負擔 分析의 問題點 및 向後 補完點	73
1. 所得의 定義 및 消費支出과 稅負擔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73
2. 稅負擔 分析의 基準	76
3. 各種 消費稅의 轉嫁 및 稅額의 割當方式에 대한 假定 ...	79

VI. 우리나라 消費稅의 構造	83
1. 附加價值稅	84
2. 特別消費稅	85
3. 酒 稅	87
4. 담배消費稅	89
5. 電話稅	90
6. 教育稅	90
VII. 改善方向	92
1. 附加價值稅	92
2. 特別消費稅	93
3. 酒稅, 電話稅, 教育稅	94
4. 담배消費稅	95
VIII. 結 論	97
〈附 錄〉	99
1. 稅目別 消費稅額의 算出根據	99
가. 附加價值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99
나. 酒 稅	100
다. 特別消費稅	103
라. 教育稅	105
2. 逆進度 指數	107
가. 지니係數	107
나. KPS 指數	109
다. 쿠즈네츠 指數	109
라. 타일의 엔트로피 指數	110

第3部 消費稅 高稅率品目の 問題點 및 稅務行政에 미치는 影響	111
I. 序 論	113
II. 高消費稅率 適用에 따른 高價消費財 關聯 現況 및 問題點	117
1. 陰性的인 市場의 生成原因 및 社會·經濟에 미치는 影響	119
2. 消費稅 高稅率 品目の 課稅 現況	122
3. 寶石類(貴金屬類 包含)	126
가. 總名目消費稅負擔率 및 問題點의 要約	126
나. 貴金屬·寶石의 流通市場	129
다. 貴金屬·寶石의 流通實態와 課稅 現況	133
라. 稅務行政에 미치는 副作用	138
마. 國內 貴金屬·寶石產業의 現況	142
바. 主要 外國의 貴金屬·寶石加工產業의 現況	148
4. 毛皮類	151
가. 消費稅率	151
나. 毛皮市場의 現況	154
다. 毛皮 關聯 問題點	164
5. 酒 類	168
가. 酒類의 流通過程	169
나. 外國의 酒類流通構造：免許制度를 中心으로	171
다. 우리나라 酒類 流通過程의 問題點	173
III. 改善方案 및 期待效果	179
1. 寶石類(貴金屬類 包含)	179

2. 毛皮類	184
3. 酒類	188
IV. 結 論	196
參考文獻	199

表 目 次

〈表 1- 1〉	우리나라의 消費稅 收入	18
〈表 2- 1〉	租稅負擔率의 國際比較	28
〈表 2- 2〉	直接稅·間接稅 比率(國稅基準)	29
〈表 2- 3〉	直接稅·間接稅 比率의 國際比較(國稅基準)	30
〈表 2- 4〉	年度別 間接稅 徵收現況	30
〈表 2- 5〉	主要 消費稅의 所得階層別 稅負擔(都市家口, 1991) ...	39
〈表 2- 6〉	主要 品目の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都市家口, 1991)	44
〈表 2- 7〉	所得分位別 構成比와 逆進度 指數(都市家口, 1991) ...	52
〈表 2- 8〉	主要 品目別 特別消費稅의 逆進度 指數 (都市家口, 1991)	54
〈表 2- 9〉	主要 消費稅의 所得階層別 稅負擔(農村家口, 1991) ...	56
〈表 2-10〉	所得分位別 構成比와 逆進度 指數(農村家口, 1991) ...	60
〈表 2-11〉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 分析에 關한 既存의 研究 結果	62
〈表 2-12〉	所得階層別 消費稅 負擔 分布의 國際比較	68
〈表 2-13〉	附加價値稅의 稅收實績	85
〈表 2-14〉	特別消費稅의 主要 品目別 課稅現況(1991年)	86
〈表 2-15〉	年度別·酒類別 酒稅賦課 現況	88
〈表 2-16〉	담배消費稅의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89
〈附表 1〉	酒類別 販賣價格 對比 酒稅 負擔率	102
〈附表 2〉	主要 品目別 特別消費稅의 稅率	103
〈附表 3〉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의 主要 品目別 流通마진率 ...	103

〈附表 4〉	主要 品目別 販賣價格 對比 特別消費稅 負擔率	… 104
〈附表 5〉	教育稅의 課稅標準과 稅率	…………… 105
〈附表 6〉	主要 品目別 販賣價格 對比 教育稅 負擔率	…………… 106
〈表 3- 1〉	主要 品目別 特別消費稅 課稅 現況(1991年)	…………… 123
〈表 3- 2〉	寶石類, 貴金屬類, 毛皮類의 輸入實績	…………… 124
〈表 3- 3〉	年度別·酒類別 酒稅賦課 現況	…………… 125
〈表 3- 4〉	寶石 및 寶石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變遷	… 126
〈表 3- 5〉	貴金屬 및 貴金屬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變遷	…………… 127
〈表 3- 6〉	主要國別 寶石(貴金屬 包含)關聯 稅率	…………… 129
〈表 3- 7〉	世界 다이아몬드 小賣市場 規模(推定)	…………… 131
〈表 3- 8〉	東南아시아의 다이아몬드 市場 規模(1988年 現在)	…………… 132
〈表 3- 9〉	貴金屬寶石의 年間 結婚禮物 去來 推定額(1987年)	…………… 133
〈表 3-10〉	다이아몬드의 輸入 現況	…………… 134
〈表 3-11〉	寶石, 貴金屬의 特別消費稅 課稅實績	…………… 135
〈表 3-12〉	公賣된 다이아몬드(裸石 및 0.3「캐럿」以上 製品 包含)의 品質(1992年)	…………… 136
〈表 3-13〉	國內 金 需給 現況	…………… 137
〈表 3-14〉	金の 月別 國內外 價格比較(1992年)	…………… 138
〈表 3-15〉	密輸 規模(1991年)	…………… 139
〈表 3-16〉	密輸檢學實績	…………… 140
〈表 3-17〉	寶石類 公賣 現況(1992年 11月 13日)	…………… 141
〈表 3-18〉	金の 報勳福祉公團 委託販賣 現況	…………… 141
〈表 3-19〉	韓國의 寶石, 貴金屬 輸出比重	…………… 142
〈表 3-20〉	裡里 貴金屬團地의 投資 現況(1991年)	…………… 143
〈表 3-21〉	裡里 貴金屬團地 入住業體 現況	…………… 144
〈表 3-22〉	裡里 貴金屬·寶石加工團地의 主要 品目別·年度別 輸出實績	…………… 145

〈表 3-23〉	年度別 다이아몬드 輸出 推移(通關基準)	146
〈表 3-24〉	年度別 金 輸出 推移(通關基準)	146
〈表 3-25〉	生産業體가 指目하는 天然寶石業界의 主要 輸出競爭國	147
〈表 3-26〉	生産業體가 指目하는 合成寶石業界의 主要 輸出競爭國	147
〈表 3-27〉	生産業體가 指目하는 身邊裝飾用品의 主要 輸出競爭國	147
〈表 3-28〉	主要 國家別 金 加工生産	148
〈表 3-29〉	벨기에의 다이아몬드 輸出入 現況	149
〈表 3-30〉	홍콩의 寶石輸出 및 再加工輸出 現況	149
〈表 3-31〉	毛皮類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變遷	151
〈表 3-32〉	毛皮類에 대한 關稅率 및 輸入價格(100원 基準) 對比 稅負擔額	152
〈表 3-33〉	韓國과 日本의 毛皮類 關稅率 比較	153
〈表 3-34〉	毛皮와 同 製品의 特別消費稅 課稅實績	155
〈表 3-35〉	毛皮 關聯 製造業의 生産 및 出荷, 附加價値 動向	157
〈表 3-36〉	밍크의 年度別 輸出入 現況	160
〈表 3-37〉	여우의 年度別 輸出入 現況	161
〈表 3-38〉	美國의 毛皮衣類 國家別 輸入 現況 I	162
〈表 3-39〉	美國의 毛皮衣類 國家別 輸入 現況 II	163
〈表 3-40〉	밍크와 여우의 飼育頭數	164
〈表 3-41〉	世界 밍크 生産量	165
〈表 3-42〉	酒類 販賣免許 現況(1992年 1月 現在)	170
〈表 3-43〉	酒類의 用途別 出庫實績(1992年)	174
〈表 3-44〉	稀釋式 燒酒의 用途別 出庫實績(1992年)	175

圖目次

[圖 2-1]	都市家口의 所得階層別 消費稅 實效稅率	40
[圖 2-2]	主要 品目別·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의 實效稅率 (都市家口)	46
[圖 2-3]	農村家口의 所得分位別 消費稅 實效稅率	57
[圖 2-4]	主要 外國의 消費稅 負擔 分布(消費稅 計)	69
[附圖 1]	로렌즈 曲線	108
[附圖 2]	相對的 租稅集中 曲線	108
[圖 3-1]	貴金屬·寶石 流通構造	130

第 1 部

머 리 말

I. 消費稅의 機能과 位相

현행 우리나라의 消費稅는 一般消費稅인 附加價值稅를 중심으로 몇 가지의 個別消費稅가 함께 課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는 一般消費稅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供給하는 모든 財貨와 用役을 課稅對象으로 하여 10%의 單一稅率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例外的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免稅 및 零稅率制度를 도입하고 있으며, 記帳能力이 부족한 零細事業者들에 대해서는 課稅特例制度를 두어 附加價值가 아닌 外形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2% 또는 3.5%의 稅率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와 같이 一般消費稅의 稅率이 單一稅率인 경우에는 '競爭市場'(competitive market)에서 一般消費稅를 과세하더라도 모든 財貨나 用役의 價格을 일정한 비율만큼 상승시키므로 課稅 前後의 財貨와 用役間의 相對價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따라서 單一稅率의 一般消費稅는 相對價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消費者나 生産者의 消費·生産行態를 歪曲하지 않으므로 資源配分을 인위적으로 歪曲하지 않는다는 長點을 지닌다.

個別消費稅는 附加價值稅가 안고 있는 短點을 補完하거나, 財政目的 또는 기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그 稅目으로는 國稅로 特別消費稅와 酒稅, 電話稅가 있으며 地方稅로 담배消費稅가 있다¹⁾. 個別消費稅는 稅收確保라는 一般的인 機能 이외에도 奢侈性 消費財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一般的으로 逆進的인 稅目으로 알려진 附加價值稅 負擔의 逆進性을 緩和하거나, 社會·

1) 우리나라에서는 內國稅 중에서 證券去來稅도 間接稅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것을 消費稅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本 研究에서는 證券去來稅를 消費稅에서 論外로 처리하였다.

經濟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財貨나 用役에 대한 消費나 生産을 抑制하여 資源配分을 보다 效率的으로 하는 機能을 하고 있다. 또한 外部不經濟의 발생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를 矯正하는 機能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景氣調節이

〈表 1-1〉 우리나라의 消費稅 收入

(單位：億원)

	1989	1990	1991	1992
國稅	212,341	268,475	303,198	352,184
內國稅	152,084	191,302	240,891	300,800
直接稅	68,974	83,404	116,273	145,734
所得稅	35,569	47,231	64,594	80,084
法人稅	31,079	32,261	45,855	59,410
間接稅	80,632	103,841	120,851	150,001
附加價值稅	52,602	69,644	82,526	100,763
特別消費稅	12,570	19,118	22,465	30,686
酒稅	8,931	10,244	11,453	13,290
電話稅	2,374	2,615	3,114	3,604
證券去來稅	4,155	2,240	1,293	1,658
過年度收入	855	2,126	1,525	2,915
印紙稅	1,623	1,931	2,242	2,150
關稅	21,176	27,654	34,355	31,532
防衛稅	34,832	44,306	12,631	1,629
教育稅	4,234	5,213	15,321	18,223
專賣納付金	15	-	-	-
地方稅	49,608	63,674	80,351	93,448
담배消費稅	14,130	15,718	16,469	17,244
登錄稅	10,911	13,776	18,950	20,720

原資料：國稅廳；財務部 租稅政策課.

資料：財務部，『財政金融統計』，1993. 5.

國稅廳，『國稅統計年報』，1992.

內務部，『地方稅政年鑑』，1992.

經濟企劃院，『財政關聯統計集』，1992.

나 國際收支 改善, 貯蓄增大 등의 부수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미미한 편이다.

1992년 현재 우리나라의 國稅와 地方稅의 徵收實績은 각각 35조 2,184억원과 9조 3,448억원으로 總合計, 즉 總租稅의 徵收實績은 44조 5,632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上記의 다섯 가지 消費稅의 徵收實績은 16조 4,587억원으로 總租稅의 약 36.9%를 차지하여 매우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表 1-1〉 참조).

흔히 附加價値稅는 國民經濟의 資源配分을 인위적으로 歪曲하지 않으면서도 租稅抵抗이 크지 않아 稅收를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稅目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현재 附加價値稅의 稅入規模는 약 10조원을 약간 上廻하여 租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6%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는 所得稅나 法人稅 등 稅收入 規模가 매우 큰 稅目들보다도 오히려 그 規模가 더 커서, 單一 稅目으로는 최대의 稅入比重을 점유하고 있어 財政收入 측면에서 볼 때 所得再分配, 즉 國民들의 稅負擔 分布 등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하다.

特別消費稅와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와 같은 個別消費稅의 收入規模도 약 6조 4천억원에 이르러 그 비중도 14.5%로 매우 크기 때문에 個別消費稅가 稅收確保의 機能은 물론이고 附加價値稅 負擔의 逆進性 補完이나 특정한 財貨나 用役에 대한 消費 또는 生産抑制, 外部不經濟 등의 縮小를 통한 '市場의 失敗' 是正 등과 같은 役割을 遂行하면서 國民經濟의 資源配分에 미치는 영향도 至大하다.

II. 問題提起

일반적으로 消費稅는 直接稅에 비해 租稅抵抗이 작으면서도 稅收를 增大하는 것이 直接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消費稅가 總租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이에 따라 消費稅의 構造, 즉 課稅對象이나 稅率의 構造變化가 國民經濟의 資源配分과 稅負擔 分布, 外部不經濟의 縮小 또는 解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고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消費稅 體系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定立은 國民들이 政府의 財政役割에 거는 기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의 資源配分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消費稅의 올바른 方向定立을 위해서는 消費稅의 歸着이나 資源配分에 미치는 影響 등에 대한 基礎的인 調查·研究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消費稅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이나 그 體系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經濟分析을 통하여 바람직한 消費稅制의 모습을 마련하거나 整備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였다. 물론 稅制發展審議委員會와 개별 租稅專門家들이 消費稅 體系에 대하여 總論的으로 연구하면서 각 세목별로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消費稅 體系를 변경함에 따른 效果分析과 같은 微視的인 연구는 부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행히도 消費稅의 階層別 稅負擔 分布와 주요 品目別 稅負擔의 累進度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여 그 동안의 政策樹立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李啓植·裴竣皓(1986)와 郭泰元(1987)이 1984년의

消費支出資料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던 포괄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消費行態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消費稅制 整備를 위해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3低好況에 따른 高度成長과 1980년대 말에 발생하였던 급격한 資本利得(capital gain)의 增加에 뒤이은 消費의 過熱現象과 같이 經濟環境이 急變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濟主體들의 消費行態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上記 研究에서의 分析結果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環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生産 또는 消費와 관련하여 外部不經濟에 대한 國民的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自動車와 石油類製品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排氣가스의 排出量이 급증하여 環境汚染의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고, 交通量의 增加에 의해 交通滯症이 심화되면서 빚어지는 混雜費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外部效果의 問題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外部不經濟의 문제를 一掃하거나 또는 社會·經濟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消費稅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消費稅制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役割分擔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消費稅制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의 消費稅制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寶石類와 貴金屬類 등의 流通市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오히려 脫稅 및 市場의 陰性化·地下經濟化 등과 같은 副作用을 間接적으로 조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制度的·行政的인 是正이 필요하다.

本 研究에서는 社會·經濟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消費稅制의 體系를 再定立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基礎資料를 마련함을 基本目的으로 한다. 그 첫 단계로 本 研究의 第Ⅱ部에서는 消費稅 課稅에 따

른 相對的인 稅負擔의 歸着問題, 즉 階層別 稅負擔 分布를 분석하여 稅目別 特性에 맞는 消費稅를 再定立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마련한다. 그리고 第Ⅲ部에서는 現行의 消費稅制 중에서 명분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높은 消費稅率을 적용함에 따라 副作用이 빚어지고 있는 품목들과 非正常的인 經濟活動이 빚어지고 있는 품목에 대한 問題點을 지적하면서 對應方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외에 總論的인 문제와 外部不經濟 등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별도의 研究에서 다루기로 한다.

第 2 部

消費稅의 都·農別,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析 및 政策改善方向

I. 序 論

우리나라의 國稅收入은 間接稅의 비중이 매우 높은 構造를 가지고 있다. 間接稅의 비중은 197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0년에는 總稅收의 70%를 상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최근에는 直接稅와 間接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¹⁾. 直接稅와 間接稅는 특성상 매우 異質的이어서 각각 동일한 액수의 租稅收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資源配分과 國家競爭力 등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所得再分配를 포함한 資源配分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直接稅, 즉 所得課稅나 財產課稅 등은 所得이나 富의 隔差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로 차등과세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기가 용이하므로 비록 租稅抵抗은 크지만 所得分配의 改善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²⁾. 반면에 消費稅를 비롯한 間接稅는 소득이나 담세력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분리하여 차등과세하기가 어렵고 또한 대체로 정률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租稅抵抗은 작으나 일반적으로 租稅負擔이 逆進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高所得層이 주로 소비하는 奢侈性 消費財에 대하여 一般消費稅 이외에 特別消費稅나 酒稅 등의 個別消費稅를 부과함으로써 一般消費稅의 逆進性을 補完하고 있으

1) <表 2-1> 참조.

2) Pechman and Okner(1974)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은 대체로 누진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법인세는 법인세의 전가에 대한 가정에 따라 세부담 분포가 변화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Pechman and Okner(1974) 5장 참조).

며,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外部不經濟를 초래하는 財貨나 用役에 대해서도 개별과세하여 消費의 抑制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소비재 가운데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個別消費稅의 賦課는 低所得層의 稅負擔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오히려 所得分配의 逆進性을 심화시키므로³⁾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累進的이라고 여겨지는 所得·財產課稅에 대한 稅負擔 分布에 대한 연구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逆進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消費稅의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에 초점을 맞추어 각 소비세목별로 稅負擔 分布를 분석하여 소비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물론 국민의 전체적인 租稅負擔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消費稅뿐만 아니라 所得·財產課稅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연구해야 더 효과적이겠으나 兩者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消費稅의 稅負擔 分析에 特化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效率性 측면에서의 稅收增大보다는 衡平性 측면에서 消費稅負擔 分布의 逆進性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 消費稅가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所得階層別 그리고 都·農別로 稅負擔 分布를 분석하여 각종 소비세의 逆進度(또는 累進度)를 연구함으로써 향후의 소비세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所得分配의 衡平性을 제고하여 消費稅負擔의 隔差를 축소하기 위한 세제의 정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기존 관련 연구와의 比較靜學的인 研究 및 時系列的인 所得分配의 構造變化를 고찰해 봄으로써 소비세의 구조변화가 소득재분

3) 崔洸(1987), pp.15~16 참조.

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消費稅로의 세제정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연구와도 비교·검토하여 消費稅負擔에 대한 국가간의 비교도 동시에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消費稅負擔의 隔差 및 逆進性의 정도를 측정하여 문제점의 핵심에 접근해 보고 국제비교 등을 통한 정책개선방향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租稅負擔率과 直·間接稅의 比率를 국제비교하고 間接稅의 종류와 徵收實績 등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資料의 구조와 특성을 소개하고 각종 경제변수들을 정의하며 또한 세부담 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稅負擔 分布를 階層別, 都·農別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관련 연구의 연구결과와 비교·연구한다. 또한 주요 外國의 消費稅負擔 分布에 대한 研究結果도 간략히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消費稅負擔 分析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각의 방법론에 대하여 기여점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해 보면서 예상되는 장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의 間接稅의 種類와 도입목적, 間接稅가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며, 또한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 酒稅, 담배消費稅 등 각종 소비세의 導入目的 및 制定背景과 歷史的 變遷過程, 構造와 特性을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제Ⅶ장에서는 제Ⅳ장에서의 분석결과에 따라 消費稅의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消費稅制의 개편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Ⅷ장에서는 消費稅負擔 分析의 결과를 정리해 보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II. 租稅負擔과 消費稅의 現況

租稅가 國民總生産(GNP) 또는 國內總生産(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租稅負擔率이라고 한다. 租稅(또는 租稅負擔率)는 주어진 經濟與件 및 租稅制度下에서 經濟活動의 결과로서 그 규모가 內生的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租稅負擔率은 1991년 현재 18.6%로서 선진국들의 21~30% 수준에 훨씬 미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競爭相對國인 대만의 20.2%(1990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表 2-1> 참조).

<表 2-1> 租稅負擔率의 國際比較

(單位：%)

	韓國 (1991)	日本 (1989)	臺灣 (1990)	美國 (1989)	英國 (1989)	獨逸 (1989)	이탈리아 (1988)	프랑스 (1988)
租稅負擔率	18.6	21.9	20.2	21.2	29.7	23.7	24.6	25.2
國稅	14.7	14.1	13.3	12.0	25.8	20.4	23.8	21.7
地方稅	3.9	7.8	6.9	9.2	3.9	3.3	0.8	3.5

資料：財務部, 「租稅概要」, 1992. 3.

租稅負擔率은 經濟活動의 결과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租稅의 比率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政府의 財政能力을 결정하게 된다. 租稅負擔率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면 경제의 효율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부문에의 財政支出을 통해 적정 수준의 公共財를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인 競爭力 提高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稅負擔이 과중하거나 과소하게 되어 經濟의 效率을 저해하거나 또는 政府의 財政能力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國家競爭力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 세부담의 적정성을 논의할 때에는 上記의 租稅負擔率과 같은 巨視經濟指標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所得이나 稅負擔의 階層別 分配狀態, 直接稅와 間接稅의 構造와 같은 微視的인 측면에서의 고찰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총체적인 國家競爭力은 조세의 절대규모뿐만 아니라 微視的인 分配狀態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는 1976년의 대폭적인 세법개정에 따라 종전의 각종 消費稅⁴⁾를 대체하고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가 신설되면서 현행 세제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졌다. 우리나라의 租稅收入構造는 전통적으로 間接稅 위주의 구조를 지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間接稅의 비중이 內國稅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여 財政收入의 상당부분을 간접세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많이 감소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서로 엇비슷해지고 있다. 이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表 2-3〉 참조). 현재 우리나라의 個別消費稅로는 特別消費稅, 酒稅, 電話稅, 證券去

〈表 2-2〉 直接稅·間接稅 比率(國稅基準)

(單位：%)

	1970	1975	1980	1985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直接稅	38.5	33.9	28.7	31.8	34.0	37.9	45.0	43.7	45.9	44.2
間接稅	61.5	66.1	71.3	68.2	66.0	62.1	55.0	56.3	54.1	55.8

註：1992년은 豫算임.

資料：財務部, 「租稅概要」, 1992. 3.

4) 營業稅, 通行稅, 物品稅, 織物類稅, 石油類稅, 電氣가스稅, 入場稅, 遊興飲食稅 등을 지칭한다(韓國開發研究院, 『韓國財政 40年史』, 第4卷, 1991, pp.367~415 참조).

〈表 2-3〉 直接稅·間接稅 比率의 國際比較(國稅基準)

(單位：%)

	韓國 (1991)	日本 (1990)	臺灣 (1990)	美國 (1989)	英國 (1989)	西獨 (1989)	프랑스 (1988)	이탈리아 (1989)
直接稅	45.9	72.5	57.0	91.7	55.4	53.2	39.1	57.9
間接稅	54.1	27.5	43.0	8.3	44.6	46.8	60.9	42.1

註：西獨, 프랑스, 英國, 이탈리아, 臺灣, 日本(消費稅)은 附加價値稅 施行國임.
 資料：財務部 消費稅制課, 『消費稅制基本統計』, 1992. 9.

〈表 2-4〉 年度別 間接稅 徵收現況

(單位：億圓)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國稅合計(I~IV)	118,763	136,063	163,437	194,842	212,341	268,475	303,198	352,184
I. 內 國 稅 計	74,969	84,640	100,120	125,402	152,084	191,302	240,891	300,800
○ 直 接 稅 計	26,714	30,464	39,244	53,535	68,974	83,404	116,273	145,734
○ 間 接 稅 計	45,570	51,279	57,358	68,522	80,632	103,841	120,851	150,001
· 附加價値稅	29,012	32,012	36,505	42,052	52,602	69,644	82,526	100,763
· 特別消費稅	9,808	10,858	11,897	13,332	12,570	19,118	22,465	30,686
· 酒 稅	5,102	5,558	5,815	7,805	8,931	10,244	11,453	13,290
· 電 話 稅	1,666	1,955	2,357	2,834	2,374	2,615	3,114	3,604
· 證券去來稅	73	189	784	2,499	4,155	2,240	1,293	1,658
○ 過年度收入	1,929	2,062	2,520	2,138	855	2,126	1,525	2,915
○ 印 紙 稅	757	835	998	1,207	1,623	1,931	2,242	2,150
II. 關 稅	15,661	19,425	26,965	25,736	21,176	27,654	34,355	31,532
III. 防 衛 稅	16,632	18,434	23,195	29,111	34,832	44,306	12,631	1,629
IV. 教 育 稅	3,211	3,724	4,113	5,123	4,234	5,213	15,321	18,223
V. 專 賣 納 付 金	8,290	9,840	9,043	9,470	15	-	-	-

註：지방양여금을 포함한 총세입기준임.

原資料：國稅廳, 關稅廳.

資料：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2. 10.

_____, 「租稅概要」, 1992. 3.

_____, 租稅政策課.

來稅⁵⁾, 印紙稅, 담배消費稅 등이 있으며 防衛稅⁶⁾와 教育稅 등도 特別消費稅額이나 酒稅額의 일정비율만큼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다.

5) 엄밀한 의미에서 證券去來稅는 消費稅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證券去來稅를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6) 방위세는 199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그 이후의 방위세 수입은 過年度 수입으로서 소량이 징수되고 있다.

Ⅲ. 資料와 方法論

1. 資 料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資料는 統計廳의 1991년도 都市家計年報와 農林水産部の 1991년도 農家經濟統計이다.

都市家計年報의 자료는 전국 62개 市에 거주하는 구성원이 2인 이상인 都市家口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農家와 漁家, 單獨家口 그리고 飲食店이나 旅館業·下宿業 등 家計收支의 파악이 곤란한 家口와 外國人 家口는 제외하고 있다. 標本(sample)은 4,500가구로 매월 조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연도인 1991년의 경우에는 총 4,500가구 중 월평균 調査에 응한 家口의 數가 4,280가구이며, 크게 勤勞者 家口와 非勤勞者 家口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500가구 중에서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거나 또는 累積 調査月數가 3개월 이하인 가구를 제외한 4,182가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農家經濟統計 자료는 전국의 농촌을 310개 調査地區로 구분하고 각 調査地區別로 10호씩 무작위로 추출(random drawing)하여 총 3,100가구의 표본을 調査對象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3,100가구 중에서 1,000가구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都市家計年報와 農家經濟統計의 자료는 調査項目과 調査目的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兩者를 單一資料로 綜合(pooling)하여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農家經濟調査 자료에서는 支出項目 중에서 耐久消費財에 대한 項目이 제외되어 있어 特別消費稅와 教育稅에 대한 稅負擔 分析의 대상이 非耐久消費

財인 설탕과 같은 소수의 품목에 국한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고 두 분석에서의 상대적인 수치를 비교하기로 한다.

2. 所得階層

本節에서는 세부담 분포 분석을 위한 소득계층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선 소득계층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人口基準 10分位(population decile)이고 다른 하나는 所得基準 10分位이다⁸⁾. 前者는 家口를 所得順으로 再整列한 후 人口數로 分位를 나누는 것이며, 後者는 所得 區間을 설정한 후 구간별로 分位를 나누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前者의 예를 따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母集團으로부터 무작위로 抽出(random drawing)된 標本은 모집단의 稅負擔 特性을 대표하므로 그러한 표본으로부터의 稅負擔 分析은 모집단의 稅負擔 特性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 표본의 추출과정에서 조사에 응한 집단과 응하지 않은 집단간에 서로 다른 특성이 존재하여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대표하는 ‘選擇的 誤謬의 問題(selection problem)⁹⁾’ 등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

7) 이외에도 일반적인 標本抽出時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본조사에 따른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극히 고소득인 가계와 극히 저소득인 가계는 母集團(population)에서의 비율만큼 표본추출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없다면 좀처럼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8) 李啓植·裴堉皓(1986), p.64 참조.

9) Manski(1989, 1990) 참조.

하여 표본이 지니고 있는 偏倚(bias)를 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類推原理(analogy principle)'에 따라 표본의 특성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羅城麟·玄鎮權(19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市家計年報나 農家經濟調查의 자료는 표본의 특성이 統計廳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여 발간하는 「人口住宅 總調查報告書」에서 全數調查하는 母集團이 지닌 특성과 相異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의 標本이 母集團의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標本特性的 母集團化가 필요하다. 그러나 所得分位를 구분함에 있어 열쇠가 되는 母集團이 지닌 所得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구할 수가 없으므로 모집단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所得特性을 잘 반영하는 代理變數(proxy variable)가 있다면 그 代理變數를 이용하여 표본특성을 母集團化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료의 제약상 여의치 않다¹⁰⁾.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대표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代理變數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표본추출시의 偏倚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표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표본을 소득수준에 따라 再整列하고 10분의 1씩 나누어 所得分位를 결정하고 稅目別·階層別로 總所得과 可處分所得, 消費支出에 대비한 消費稅의 實效稅率을 추정한다.

10) 羅城麟·玄鎮權(1993)에서는 家口員의 數와 消費支出을 代理變數로 하여 標本特性的 母集團化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표본의 추출과정에서 代理變數와 所得이 서로 독립적(independent)이거나 代理變數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代理變數를 사용하여 母集團化하더라도 표본의 소득특성이 모집단의 소득특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3. 所得과 消費支出, 稅目別 消費稅額의 算出

본 연구에서는 세목별 實效稅率을 추정하기 위한 분모로 總所得과 可處分所得, 그리고 消費支出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都市家計年報와 農家經濟調查의 자료는 調査項目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용 가능한 자료의 정도에 따라 所得과 消費支出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都市家計年報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總所得을 勤勞所得과 事業 및 副業所得, 그리고 其他所得의 합으로 하며 固定資產을 처분한 收入이나 저축으로부터의 인출액 등은 제외한다. 可處分所得은 總所得에서 租稅(直接稅)와 準租稅의 성격을 지닌 醫療保險料와 退職寄與金 등의 社會保障分擔金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한다. 消費支出은 耐久 및 非耐久 消費財(또는 用役)에 대한 支出額의 합으로 하며 固定資產의 취득이나 저축 등은 제외한다.

農家經濟調查의 자료에서는 總所得(또는 農家所得)을 農業所得과 兼業所得, 事業以外所得, 移轉收入의 합으로 정의하며 農家可處分所得은 總所得에서 租稅公課金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農業所得과 兼業所得, 事業以外所得은 각각 農業收入, 兼業收入, 事業以外收入에서 農業支出과 兼業支出, 事業以外支出을 차감한 것이다. 消費支出은 家計費로 하는데, 農家經濟調查의 支出項目에는 耐久消費財에 대한 지출항목이 없으므로 자료의 여건상 耐久消費財에 대한 지출은 消費支出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都市家計年報와 農家經濟調查의 자료에서 租稅는 直接稅만이 직접 조사되었으며 소비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支出額만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消費稅額은 稅目別 課稅對象의 항목별 지출액으로부터 역산하여 산출하였다.

附加價値稅와 電話稅는 세율이 10%의 단일세율이므로 稅額의 산출이 비교적 용이하여 총지출액의 11분의 1을 세액으로 산정하였

다. 물론 附加價值稅의 課稅特例者와 같이 10%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非課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세액의 산출은 오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 비중은 매우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을 무시하기로 한다.

담배消費稅는 판매가격에 상관없이 20개비당 360원의 從量稅가 부과되므로 담배에 대한 지출액으로부터 세액을 직접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金珍洙(1993)는 담배 판매가격에 對比한 1991년의 담배消費稅의 평균세율을 56.5%로 추정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總支出額의 56.5%를 담배消費稅額으로 산정하였다.

酒稅는 酒類別로 세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판매가격에 對比한 세액의 비율을 販賣價格 對比 平均稅率로 산정하여 산출하였다. 주류별 소비자 판매가격은 稅包含 出庫價格¹¹⁾에 적정 유통마진¹²⁾을 더하여 산출하였다.

特別消費稅와 教育稅도 酒稅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支出項目 중에서는 特別消費稅와 教育稅의 課稅對象과 非課稅對象이 混在된 것이 있어 일정한 假定에 따라 總支出額의 일정 비율만큼을 課稅對象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산출하였다. 자세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附錄을 참조하기 바란다.

4. 分配的 逆進度 指數¹³⁾

본 연구에서는 所得分配의 逆進度(또는 累進度)를 측정하는 指數로 「지니係數」(Gini coefficient)와 「케탄-포다-숫指數」(Khetan

11) 稅前 出庫價格에 酒稅와 教育稅, 附加價值稅를 포함한 가격.

12) 본 연구에서는 稅後 出庫價格의 40%를 稅包含(附加價值稅) 유통마진으로 가정하였다.

13) 本節에서 소개되는 逆進度 指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附錄 참조. 관련 逆進度 指數에 대해서는 Atkinson(1970), Guthrie(1979), Kakwani (March, April 1977, March 1983), Kiefer(1984) 참조.

-Poddar-Suits, 이하 KPS), 「쿠즈네츠指數」(Kuznets measure)와 「타일의 엔트로피指數」(Theil's entropy measure)를 변형한 것을 사용하기로 한다(편의상 각각 KU指數와 TH指數라고 하자)¹⁴⁾. 「지니 계수」는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편중된 소득분배를 나타내고 0에 가까울수록 보다 균등한 所得分配狀態를 나타낸다. KPS指數는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累進的인 稅負擔을, 1보다 작으면 逆進的인 稅負擔을 나타낸다. KU指數와 TH指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KU &= K^* - K & TH &= (T^* - T) / \ln(n) \\
 K^* &= \frac{n}{2(n-1)} \sum_{i=1}^n \left| s_i^* - \frac{1}{n} \right| & T^* &= \sum_{i=1}^n s_i^* \ln(n \times s_i^*) \\
 K &= \frac{n}{2(n-1)} \sum_{i=1}^n \left| s_i - \frac{1}{n} \right| & T &= \sum_{i=1}^n s_i \ln(n \times s_i)
 \end{aligned}$$

n은 標本의 數이며 s_i^* 와 s_i 는 각각 전체 所得(또는 消費支出)에 對比한 i번째 消費者의 稅前·稅後 所得의 비중이다. K^* 와 T^* (또는 K와 T)는 「쿠즈네츠指數」와 「타일의 엔트로피指數」로서 K^* (또는 K)는 0과 1 사이, T^* (또는 T)는 0과 $\ln(n)$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0에 가까울수록 所得分配가 보다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의 변형인 KU指數와 TH指數는 모두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그 값이 陽數이면 稅負擔이 累進的이고, 0이면 比例的이며, 만약 陰數이면 逆進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4) KPS指數는 李啓植·裴竣皓(1986), KU指數와 TH指數는 李俊求(1992), pp.272~276 참조.

IV. 稅負擔 實證分析

1. 實證分析(都市家口)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教育稅의 여섯 가지 세목을 합한 消費稅 전체의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는 總所得基準의 경우, 1~5分位에서 逆進的이며 6~10分位에서는 累進的이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3.7~3.8%의 수준에서 比例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可處分所得基準의 경우도 總所得基準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여 3.8~4.0% 정도의 수준에서 대체로 比例的이다. 그러나 消費支出基準에서는 所得基準의 경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消費支出基準에서는 4~5分位에서 미약하나마 消費稅의 負擔이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累進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거의 比例的이라고 할 수 있다(<表 2-5>와 [圖 2-1] 참조).

위와 같은 결과는 消費稅가 逆進的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分位別 平均消費性向(average propensity to consume)이 1分位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消費稅의 稅負擔 分布가 대체로 逆進的이었던 점과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원인을 찾자면 過消費 현상과 報告되지 않은 所得을 들 수 있다. 分析對象期間인 1991년은 過消費가 만연하였던 시기로 特別消費稅 등의 個別消費稅가 과세되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특히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1980년 후반의 호황기에 급증한 資本利得이나 陰性所得 등의 所得을 過少報告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表 2-5〉 主要消費稅之所得階層別稅負擔(都市家口,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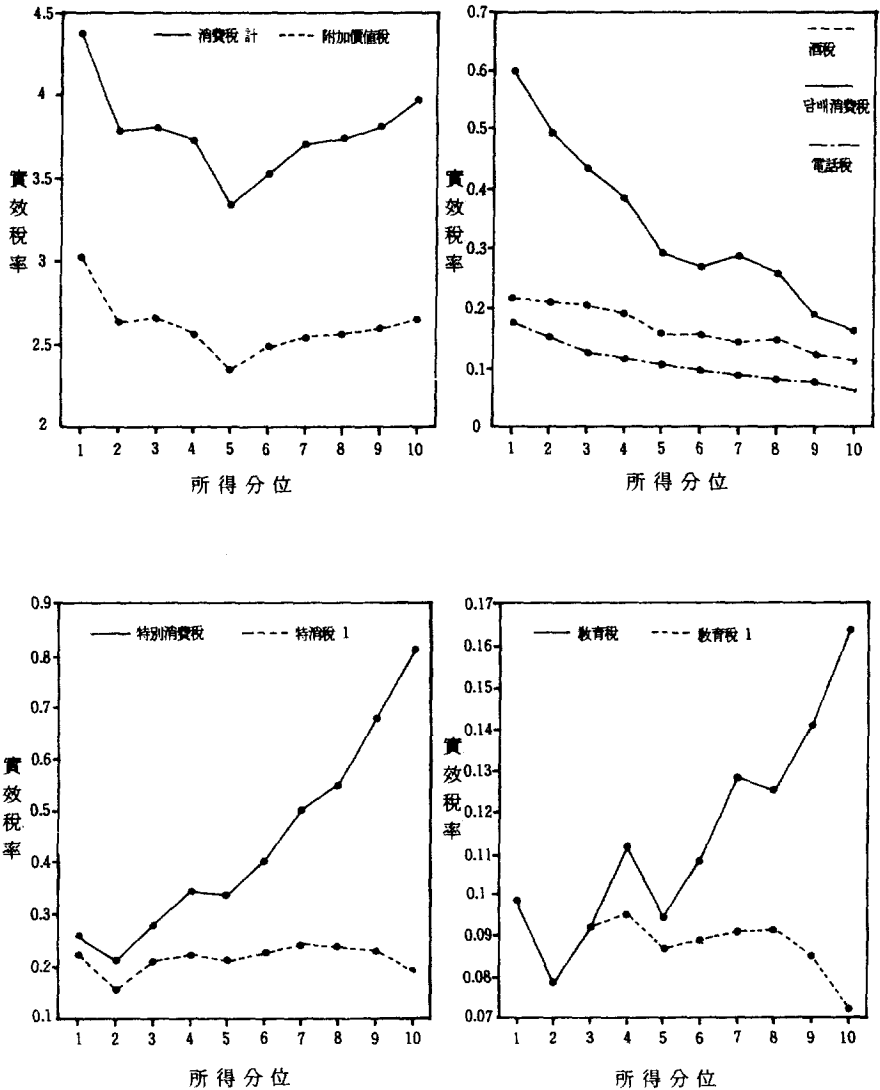
(單位：%)

所得分位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消費性向											
總所得 對比	93.17	80.21	76.96	76.04	73.57	74.03	74.83	75.11	74.92	72.03	75.29
可處分所得 對比	94.32	81.52	78.22	77.44	75.26	75.60	76.59	77.30	77.60	75.39	77.46
總所得基準											
附加價值稅	3.022	2.629	2.663	2.571	2.352	2.484	2.550	2.561	2.594	2.647	2.586
特別消費稅	0.257	0.213	0.282	0.346	0.339	0.406	0.504	0.552	0.683	0.814	0.527
(乘用車, 揮發油除外)	0.224	0.158	0.211	0.226	0.214	0.228	0.246	0.240	0.234	0.195	0.219
酒 稅	0.216	0.211	0.204	0.192	0.158	0.159	0.145	0.151	0.125	0.115	0.152
電話 稅	0.177	0.153	0.127	0.118	0.106	0.099	0.090	0.083	0.078	0.066	0.096
教育 稅	0.098	0.079	0.092	0.111	0.094	0.108	0.128	0.125	0.141	0.164	0.125
(乘用車 除外)	0.098	0.079	0.092	0.095	0.087	0.089	0.091	0.091	0.085	0.072	0.086
訖叫消費稅	0.601	0.497	0.433	0.385	0.291	0.270	0.287	0.260	0.190	0.165	0.282
小 計	4.372	3.781	3.801	3.723	3.340	3.527	3.705	3.732	3.811	3.972	3.768
可處分所得基準											
附加價值稅	3.060	2.672	2.706	2.619	2.406	2.537	2.610	2.636	2.686	2.771	2.660
特別消費稅	0.260	0.216	0.287	0.352	0.346	0.415	0.516	0.568	0.707	0.852	0.542
(乘用車, 揮發油除外)	0.227	0.160	0.215	0.230	0.219	0.233	0.252	0.247	0.242	0.204	0.225
酒 稅	0.219	0.214	0.207	0.196	0.161	0.162	0.148	0.155	0.130	0.120	0.157
電話 稅	0.179	0.155	0.129	0.120	0.109	0.101	0.092	0.085	0.081	0.070	0.098
教育 稅	0.099	0.080	0.093	0.113	0.097	0.110	0.131	0.129	0.147	0.172	0.129
(乘用車 除外)	0.227	0.160	0.215	0.230	0.219	0.233	0.252	0.247	0.242	0.204	0.225
訖叫消費稅	0.609	0.506	0.440	0.392	0.298	0.276	0.294	0.268	0.197	0.172	0.290
小 計	4.426	3.843	3.863	3.792	3.417	3.602	3.791	3.841	3.948	4.157	3.877
消費支出基準											
附加價值稅	3.244	3.278	3.460	3.381	3.197	3.356	3.408	3.410	3.462	3.675	3.434
特別消費稅	0.276	0.265	0.367	0.455	0.460	0.549	0.674	0.735	0.912	1.131	0.700
(乘用車, 揮發油除外)	0.241	0.197	0.275	0.297	0.291	0.308	0.328	0.320	0.312	0.271	0.291
酒 稅	0.232	0.262	0.265	0.253	0.214	0.215	0.194	0.200	0.167	0.160	0.202
電話 稅	0.190	0.191	0.165	0.155	0.145	0.134	0.120	0.110	0.104	0.092	0.127
教育 稅	0.105	0.098	0.119	0.146	0.128	0.146	0.171	0.167	0.189	0.228	0.166
(乘用車 除外)	0.105	0.098	0.119	0.126	0.118	0.121	0.121	0.122	0.114	0.101	0.114
訖叫消費稅	0.645	0.620	0.563	0.506	0.396	0.365	0.384	0.347	0.254	0.229	0.375
小 計	4.693	4.714	4.938	4.896	4.540	4.765	4.951	4.969	5.087	5.514	5.005

[圖 2-1] 都市家口の 所得階層別 消費稅 實效稅率

總所得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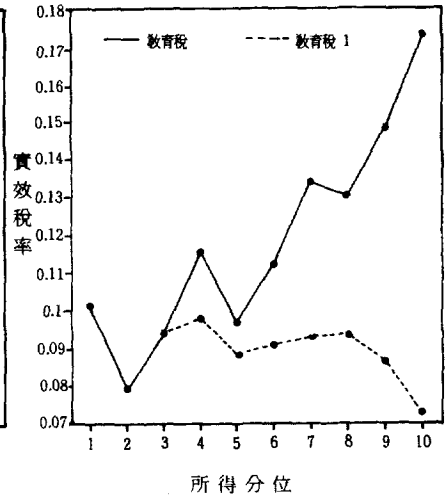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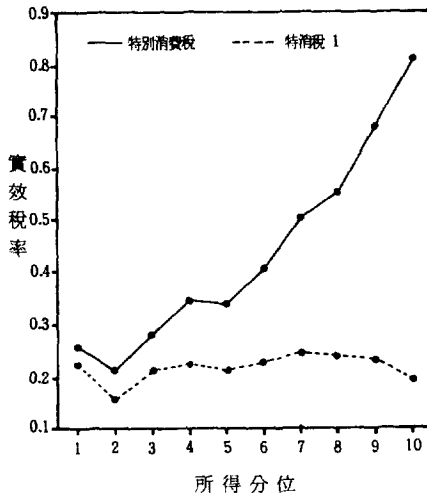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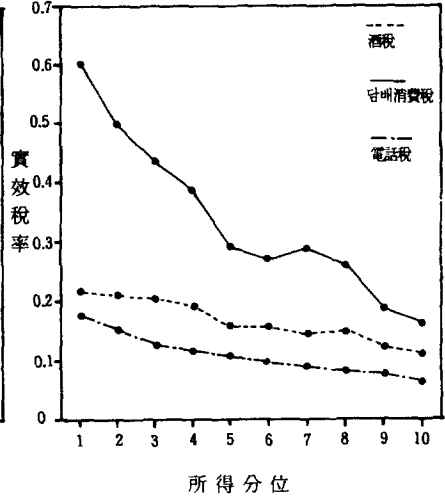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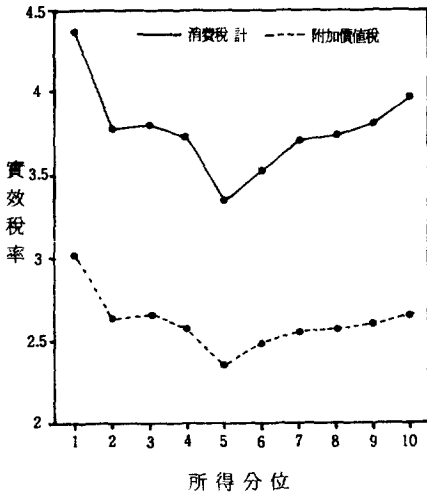
(單位：%)



[圖 2-1]의 계속

可處分所得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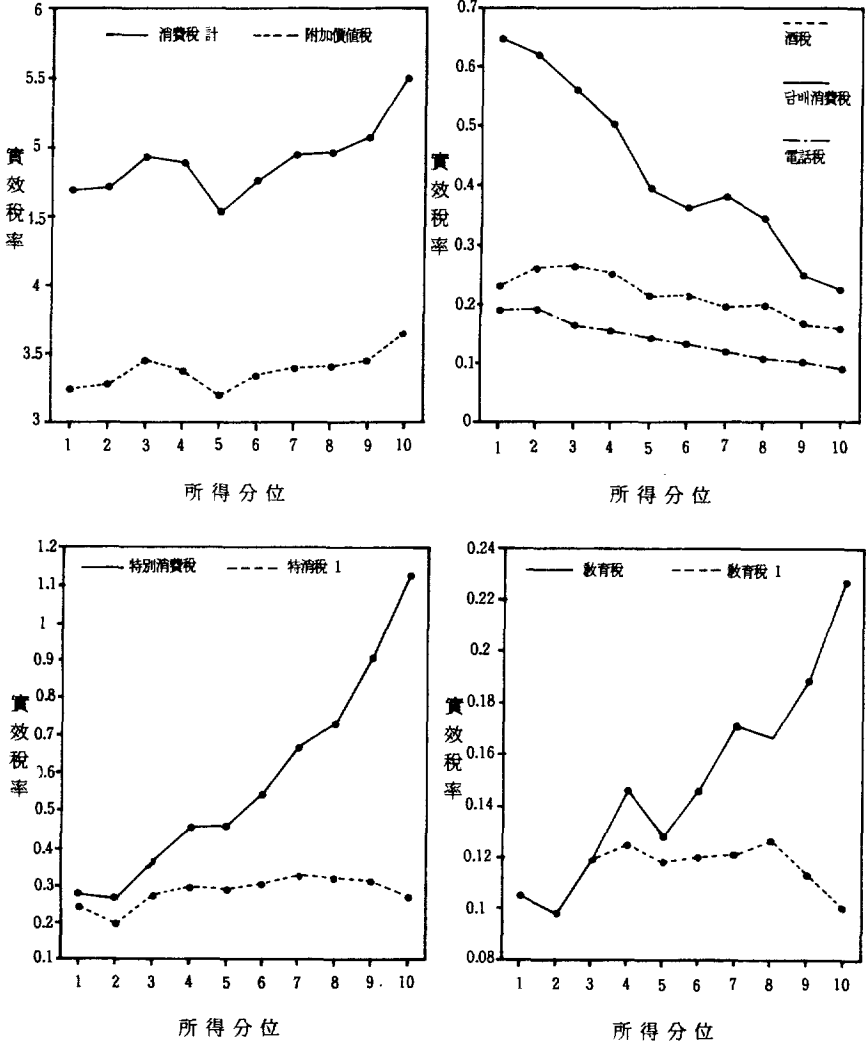
(單位：%)



[圖 2-1]의 계속

消費支出基準

(單位：%)



註：特消稅 1과 教育稅 1은 승용차와 휘발유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것임.

過消費 현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報告所得만을 기준으로 하면 高所得層의 消費稅 負擔이 低所得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逆進的인 세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附加價値稅의 階層別 稅負擔도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 附加價値稅

單一稅率의 附加價値稅의 稅負擔 分布는 그 특성상 平均消費性向의 分布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附加價値稅의 계층별 稅負擔은 1分位에서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며 다른 分位에서는 대체로 완만하게 累進的이거나 比例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階層別 平均消費性向의 움직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平均消費性向이 1分位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比例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附加價値稅의 稅負擔이 미약하나마 累進性을 보이고 있는 것은 前述한 바와 마찬가지로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過消費 현상이 진행되어 高所得層의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高所得層에서 所得을 過少報告하는 경향이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過消費 현상에 따른 稅負擔의 累進性은 특히 所得基準에서보다는 消費支出基準의 경우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特別消費稅

特別消費稅의 階層別 稅負擔은 所得 또는 消費支出基準을 막론하고 매우 累進的인 모습을 보여 주어 과거의 階層別 稅負擔 分布에 관한 연구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乘用車의 보급확대와 이에 따른 油類消費의 급증에 따라 特別消費稅의 負擔 分布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과거의 세부담 분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特別消費稅의 부담 분포는 1分位에서 逆進性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實效稅率이 저소득층의 實效稅率보다 3~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乘用車와, 대부분이 승용차의 燃料油로 소비되고 있는 揮發油에 대한 稅額을 제외하고 家電製品이나 기타의 課稅對象만을 대상으로 한 特別消費稅의 稅負擔을 보면 累進度가 급격히 약화되어 대체로 比例的으로 나타나고 있다([圖 2-1] 참조).

〈表 2-6〉 主要 品目の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都市家口, 1991)

(單位: %)

所得分位	1	2	3	4	5	6	7	8	9	10	平均
總所得基準											
乘用車	0.000	0.000	0.000	0.053	0.025	0.063	0.125	0.112	0.187	0.306	0.131
小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53	0.025	0.063	0.062	0.041	0.090	0.065	0.051
中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63	0.072	0.097	0.135	0.058
大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05	0.022
揮發油	0.033	0.055	0.071	0.067	0.099	0.115	0.133	0.200	0.261	0.313	0.176
칼라TV	0.059	0.010	0.025	0.020	0.018	0.027	0.025	0.033	0.021	0.022	0.024
小型 칼라TV	0.020	0.005	0.010	0.014	0.010	0.015	0.010	0.009	0.010	0.006	0.010
大型 칼라TV	0.039	0.005	0.015	0.006	0.008	0.012	0.015	0.024	0.011	0.016	0.015
冷藏庫	0.025	0.010	0.031	0.028	0.023	0.022	0.029	0.030	0.032	0.018	0.025
小型 冷藏庫	0.016	0.010	0.022	0.010	0.012	0.012	0.012	0.013	0.011	0.006	0.011
大型 冷藏庫	0.009	0.000	0.009	0.017	0.011	0.010	0.017	0.017	0.021	0.012	0.014
洗濯機	0.007	0.005	0.010	0.008	0.007	0.011	0.008	0.011	0.008	0.004	0.008
清掃機, 電子레인지	0.001	0.003	0.002	0.006	0.005	0.006	0.014	0.009	0.013	0.014	0.009
가스레인지	0.007	0.005	0.005	0.004	0.005	0.004	0.004	0.005	0.005	0.005	0.005
VCR, 映寫機 등	0.041	0.040	0.050	0.075	0.073	0.077	0.082	0.063	0.070	0.055	0.064
電蓄	0.003	0.014	0.007	0.022	0.017	0.020	0.020	0.021	0.012	0.018	0.017
커피	0.017	0.012	0.011	0.009	0.009	0.008	0.008	0.007	0.007	0.005	0.008
설탕	0.004	0.003	0.00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1	0.002
清涼飲料	0.017	0.013	0.012	0.011	0.009	0.009	0.008	0.007	0.006	0.004	0.008

〈表 2-6〉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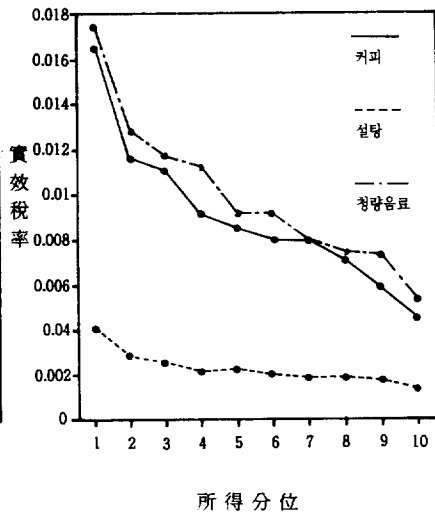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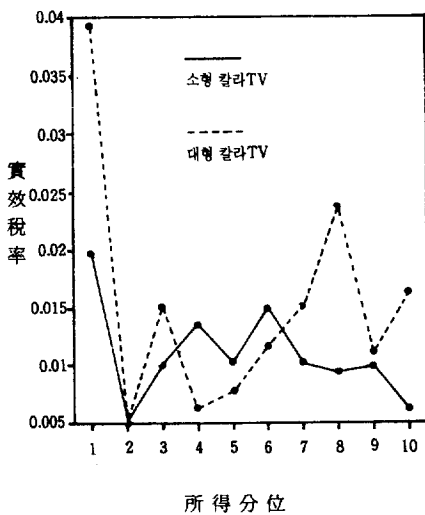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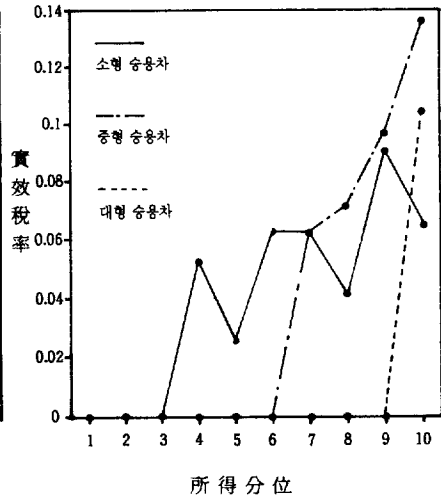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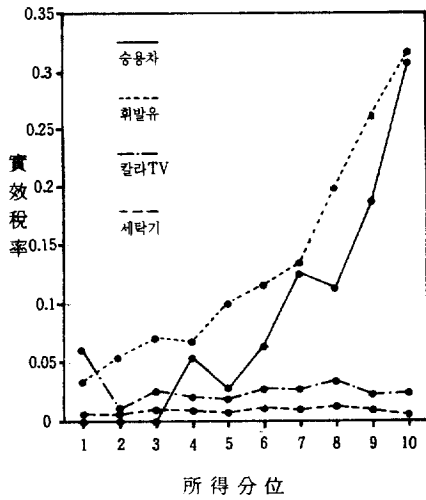
(單位：%)

所得分位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可處分所得基準											
乘用車	0.000	0.000	0.000	0.054	0.026	0.064	0.128	0.116	0.194	0.320	0.135
小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54	0.026	0.064	0.064	0.042	0.094	0.068	0.052
中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65	0.074	0.100	0.142	0.060
大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10	0.023
揮發油	0.033	0.056	0.072	0.068	0.102	0.118	0.136	0.205	0.271	0.327	0.182
칼라TV	0.060	0.010	0.026	0.020	0.018	0.027	0.026	0.034	0.022	0.024	0.025
小型 칼라TV	0.020	0.005	0.010	0.014	0.010	0.015	0.010	0.010	0.010	0.006	0.010
大型 칼라TV	0.040	0.005	0.015	0.006	0.008	0.012	0.016	0.024	0.011	0.017	0.015
冷蔵庫	0.026	0.010	0.032	0.028	0.023	0.023	0.030	0.031	0.033	0.019	0.026
小型 冷蔵庫	0.017	0.010	0.023	0.011	0.012	0.012	0.012	0.013	0.011	0.006	0.011
大型 冷蔵庫	0.009	0.000	0.009	0.018	0.012	0.011	0.018	0.017	0.022	0.013	0.014
洗濯機	0.007	0.005	0.010	0.008	0.007	0.011	0.008	0.012	0.008	0.004	0.008
清掃機, 電子레인지	0.001	0.003	0.002	0.006	0.005	0.006	0.015	0.009	0.013	0.014	0.009
가스레인지	0.007	0.005	0.005	0.004	0.005	0.004	0.004	0.005	0.005	0.005	0.005
VCR, 映寫機 등	0.042	0.041	0.051	0.076	0.074	0.078	0.084	0.065	0.072	0.057	0.066
電蓄	0.003	0.014	0.007	0.023	0.017	0.021	0.020	0.021	0.013	0.019	0.017
커피	0.017	0.012	0.011	0.009	0.009	0.008	0.008	0.008	0.008	0.006	0.008
설탕	0.004	0.003	0.00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1	0.002
清涼飲料	0.018	0.013	0.012	0.011	0.009	0.009	0.008	0.007	0.006	0.005	0.008
消費支出基準											
乘用車	0.000	0.000	0.000	0.069	0.035	0.085	0.167	0.150	0.250	0.425	0.175
小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69	0.035	0.085	0.083	0.054	0.121	0.090	0.067
中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84	0.096	0.129	0.189	0.078
大型 乘用車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46	0.029
揮發油	0.035	0.069	0.092	0.088	0.135	0.156	0.178	0.266	0.349	0.434	0.234
칼라TV	0.063	0.013	0.033	0.026	0.024	0.036	0.034	0.044	0.028	0.031	0.033
小型 칼라TV	0.021	0.006	0.013	0.018	0.014	0.020	0.014	0.012	0.013	0.009	0.013
大型 칼라TV	0.042	0.006	0.020	0.008	0.011	0.016	0.020	0.031	0.015	0.023	0.019
冷蔵庫	0.027	0.012	0.041	0.036	0.031	0.030	0.039	0.040	0.042	0.025	0.033
小型 冷蔵庫	0.018	0.012	0.029	0.014	0.016	0.016	0.016	0.017	0.014	0.008	0.015
大型 冷蔵庫	0.010	0.000	0.012	0.023	0.015	0.014	0.023	0.022	0.028	0.017	0.018
洗濯機	0.007	0.007	0.012	0.011	0.009	0.015	0.011	0.015	0.011	0.006	0.010
清掃機, 電子레인지	0.001	0.004	0.003	0.008	0.007	0.007	0.019	0.012	0.017	0.019	0.012
가스레인지	0.008	0.006	0.006	0.005	0.006	0.006	0.005	0.007	0.006	0.007	0.006
VCR, 映寫機 등	0.044	0.050	0.066	0.098	0.099	0.103	0.110	0.084	0.093	0.076	0.086
電蓄	0.034	0.017	0.009	0.029	0.023	0.027	0.027	0.027	0.016	0.025	0.022
커피	0.018	0.015	0.014	0.012	0.012	0.011	0.011	0.010	0.010	0.007	0.011
설탕	0.004	0.004	0.003	0.003	0.003	0.003	0.002	0.002	0.002	0.002	0.003
清涼飲料	0.019	0.016	0.015	0.015	0.012	0.012	0.011	0.009	0.008	0.006	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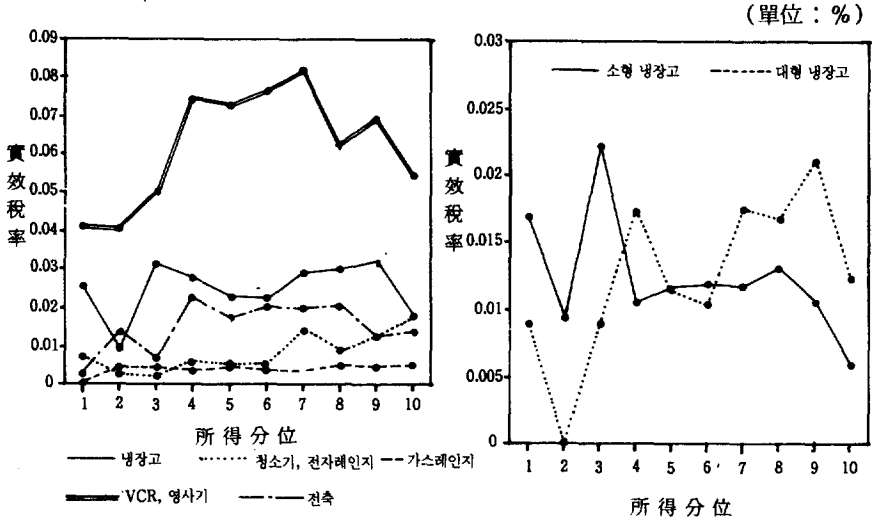
[圖 2-2] 主要 品目別·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의 實效稅率(都市家口)

總所得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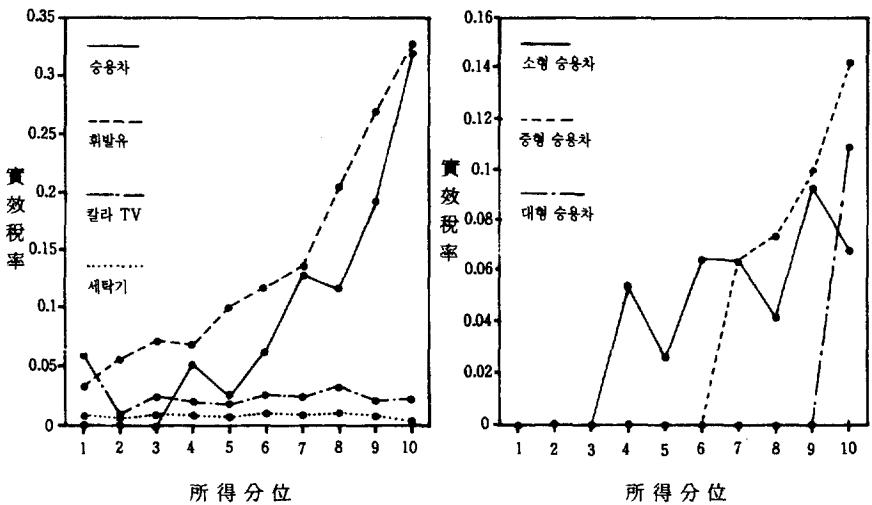
(單位：%)



[圖 2-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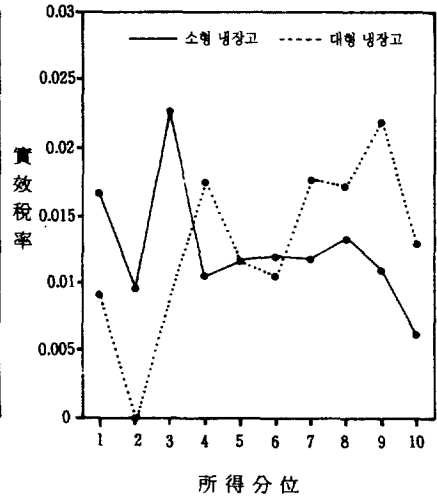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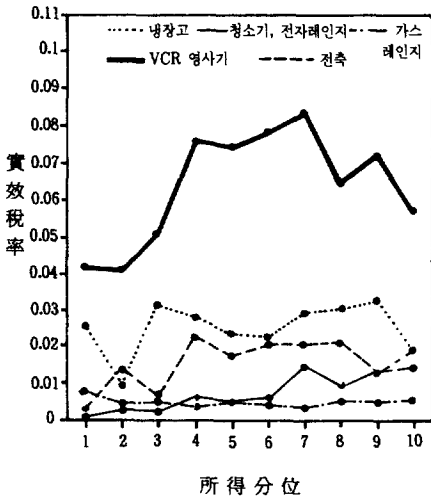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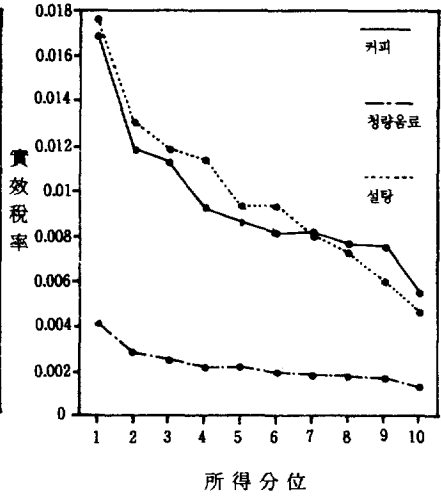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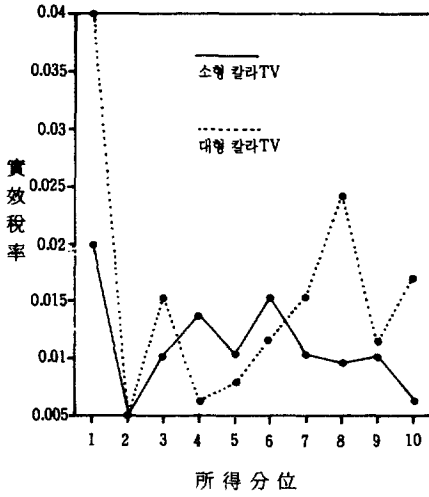


可處分所得基準



[圖 2-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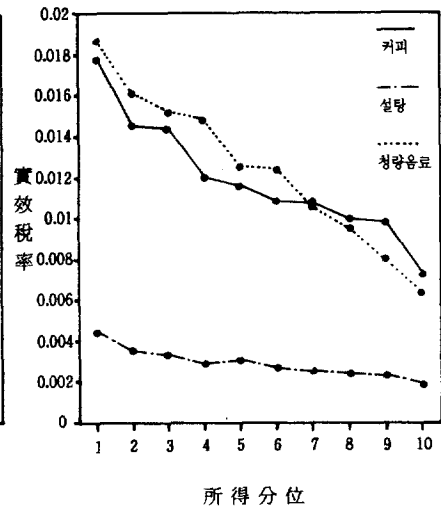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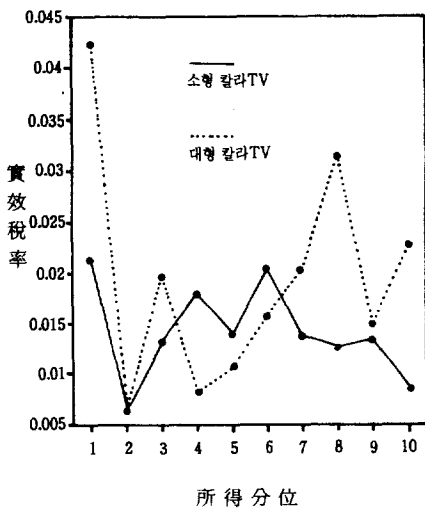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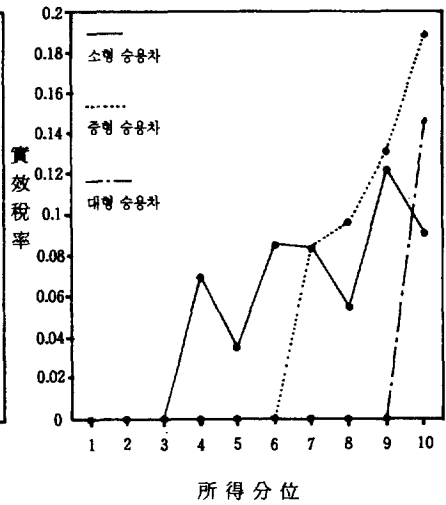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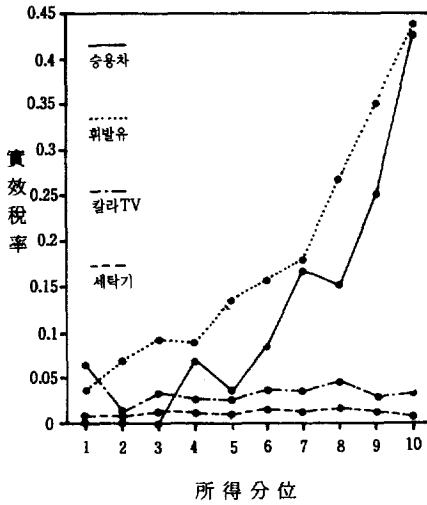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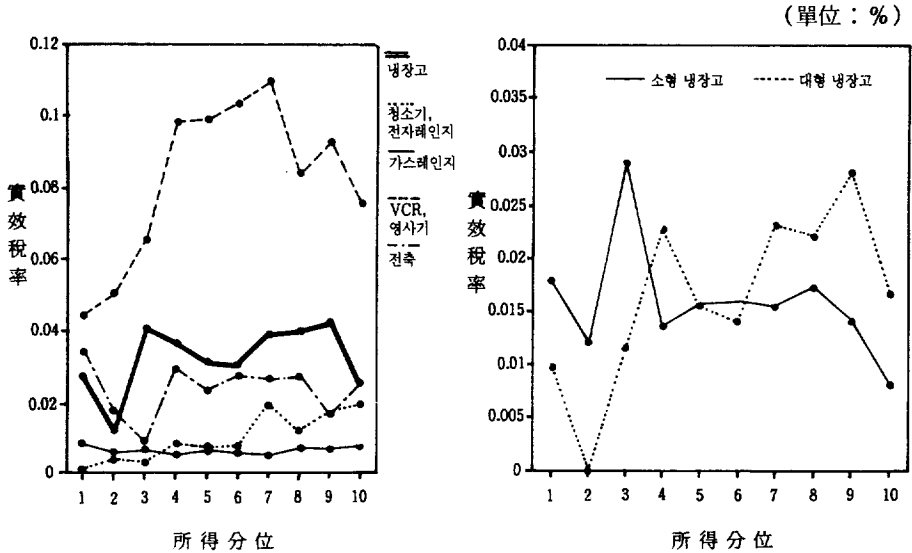
[圖 2-2]의 계속

消費支出基準

(單位：%)



[圖 2-2]의 계속



주요 課稅對象別로는 乘用車와 揮發油, 大型 家電製品의 稅負擔이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普及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乘用車와 揮發油, 大型 冷蔵庫, 전자레인지, VCR, 전축 등에서 累進性이 강하다. 반면에 小型 家電製品에 대한 稅負擔은 오히려 比例的이거나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小型 칼라TV나, 설탕, 커피, 청량음료 등과 같은 품목들은 稅負擔의 逆進性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小型 家電製品이나 嗜好食品 등에 대한 稅負擔이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特別消費稅의 稅負擔이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稅負擔의 累進性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高價의 高級製品에 대한 消費의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稅額의 絶對額도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表 2-6>과 [圖 2-2] 참조).

다. 教育稅

본 연구에서는 教育稅의 범위를 特別消費稅와 酒稅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부분에 국한하였다. 따라서 教育稅의 稅負擔 分布는 이 두 가지 세목의 세부담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特別消費稅가 酒稅에 비해 비중이 훨씬 크므로 教育稅의 負擔 分布는 特別消費稅와 비슷하게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特別消費稅의 負擔 分布가 매우 累進的이기 때문이다. 特別消費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乘用車로부터 징수되는 教育稅의 稅額을 제외하면¹⁵⁾ 教育稅의 稅負擔도 特別消費稅의 경우와 비슷하게 오히려 累進度가 급격히 약화되어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圖 2-1] 참조).

라.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酒稅는 6~7分位에서 약간의 불규칙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지속적인 所得水準의 향상에 따라 중·고급 酒類에 대한 소비가 점차 중·저소득층에도 확산되면서 逆進的인 稅負擔 分布의 모습은 약간 더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所得이나 消費支出 등 基準에 상관없이 1分位の 상대적인 稅負擔이 10分位の 약 2배 정도에 이르는 것이 특징적이다.

電話稅와 담배消費稅도 酒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일관되게 逆進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生活必需品 또는 일반 大衆이 소비하는 嗜好品에 대한 消費稅의 부과는 稅負擔의 逆進性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15) 휘발유에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마. 逆進度 分析

〈表 2-7〉에 의하면, 直接稅는 지니계수를 감소시켜 소득분배를 개선하였으나¹⁶⁾ 消費稅는 지니계수를 소폭 증가시킴으로써 미약하나마 所得分配를 불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KPS指數는 소득과 소비지출에 관계 없이 모두 1보다 큰 값을 보여 消費

〈表 2-7〉 所得分位別 構成比와 逆進度 指數(都市家口, 1991)

(單位: %, $\times 10^{-2}$)

分 位	總 所 得	可 處 分 所 得	消 費 支 出	消 費 稅 計
1	3.6256	3.6845	4.4865	4.2068
2	5.4164	5.4827	5.7702	5.4355
3	6.5372	6.6173	6.6826	6.5940
4	7.5526	7.6297	7.6281	7.4624
5	8.5264	8.5754	8.3318	7.5584
6	9.5853	9.6563	9.4246	8.9726
7	10.7449	10.8015	10.6797	10.5642
8	12.3034	12.3006	12.2746	12.1871
9	14.5849	14.4878	14.5133	14.7528
10	21.1235	20.7640	20.2085	22.2662
計	100.0	100.0	100.0	100.0
지 니 계 수	26.6202	26.1018	28.5376	26.6399 ¹⁾ 26.1100 ²⁾
KPS지수	102.3497 (100.6602)	102.3766 (100.5109)	102.5999 (99.7791)	— —
K U지수	0.0070 (-0.0737)	0.0088 (-0.0679)	0.1158 (-0.0444)	— —
T H지수	-0.0040 (-0.0140)	-0.0026 (-0.0122)	0.0305 (-0.0018)	— —

註: 지니계수와 각 지수의 값은 수치가 매우 작아 100을 곱한 수치이며
() 안은 승용차와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세부담을 제외한 것임.

1) 총소득에서 소비세를 차감한 후의 지니계수임.

2)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소비세를 차감한 후의 지니계수임.

16)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가 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보다 그 값이 작은 것을 말한다.

稅의 부과가 所得分配狀態를 改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KU指數도 陽의 값을 시현하여 KPS指數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TH指數에 의하면 消費支出에서는 陽의 값을 나타내어 分配狀態가 改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所得基準에서는 陰의 값을 시현하여 오히려 所得分配狀態가 惡化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逆進度 指數間에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임으로써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각 指數의 값이 서로 상반된 값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逆進的인 稅負擔과 累進的인 稅負擔을 구분해 주는 수치¹⁷⁾와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消費稅의 부과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며,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特別消費稅의 주요 課稅對象에 대한 KU指數와 TH指數의 추정치는 <表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의 大衆化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보이고 있다. 高級品이면서 상대적으로 高所得層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乘用車와 揮發油, 大型 家電製品, 電子레인지, 전축 등에서는 KU指數와 TH指數가 일제히 陽의 값을 보여 이들 품목이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を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소비가 상당히 大衆化된 小型 家電製品이나 嗜好食品, 清涼飲料 등의 품목에서는 指數가 陰의 값을 나타내어 稅負擔의 衡平性を 악화시켜 稅負擔을 逆進的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 • 지니계수 : 증가-逆進的
감소-累進的

• KU지수, TH지수 : 양수-누진적
음수-역진적

• KPS지수 : >1-累進的
<1-逆進的

〈表 2-8〉 主要 品目別 特別消費稅의 逆進度 指數(都市家口, 1991)

(單位: $\times 10^{-3}$)

	總 所 得		可處分所得		消費支出	
	KU指數	TH指數	KU指數	TH指數	KU指數	TH指數
乘用車	0.3836	0.0484	0.3687	0.0472	0.7124	0.1657
小型 乘用車	0.0829	0.0082	0.0808	0.0077	0.2713	0.0354
中型 乘用車	0.2107	0.0232	0.1960	0.0223	0.3199	0.0880
大型 乘用車	0.0892	0.0169	0.0913	0.0171	0.1214	0.0420
揮發油	0.3822	0.0504	0.3842	0.0494	0.5545	0.0876
칼라TV	0.0011	-0.0007	0.0037	-0.0006	0.0151	0.0035
小型 칼라TV	-0.0096	-0.0013	-0.0089	-0.0013	-0.0040	-0.0011
大型 칼라TV	0.0107	0.0007	0.0126	0.0007	0.0191	0.0045
冷藏庫	0.0057	-0.0005	0.0085	-0.0003	0.0231	0.0026
小型 冷藏庫	-0.0094	-0.0016	-0.0084	-0.0015	-0.0122	-0.0016
大型 冷藏庫	0.0151	0.0011	0.0169	0.0012	0.0353	0.0042
洗濯機	-0.0006	-0.0005	-0.0005	-0.0004	-0.0042	-0.0010
清掃機, 電子레인지	0.0202	0.0025	0.0187	0.0025	0.0317	0.0045
가스레인지	0.0004	0.0000	0.0010	0.0001	0.0040	0.0007
VCR, 映寫機 등	-0.0019	0.0002	0.0055	0.0009	0.0384	0.0037
電蓄	0.0085	0.0010	0.0127	0.0011	0.0404	0.0047
커피	-0.0081	-0.0013	-0.0080	-0.0013	-0.0113	-0.0018
설탕	-0.0020	-0.0003	-0.0019	-0.0003	-0.0025	-0.0004
清涼飲料	-0.0123	-0.0026	-0.0123	-0.0017	-0.0179	-0.0026

2. 實證分析(農村家口)

農家經濟調查의 자료는 非耐久性 消費財에 대한 支出에 대해서만 조사되어 있어 耐久性 消費財에 대한 자세한 支出內譯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農家の 平均消費性向과 階層別 稅負擔 分布는 非耐久性 消費財에 대한 지출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所得 1分位의 平均消費性向은 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分位에서 消費支出의 規模가 所得의 規模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2分位 이상의 分位에서는 平均消費性向이 1보다 작고 또한 급속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農家の 平均消費性向을 都

市家口와 비교해 보면, 1~3分位에서는 農家の 消費性向이 都市家口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分位에서는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의 평균도 68~69% 수준으로 都市家口の 75~78%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 都市家計年報에서는 耐久·非耐久性 消費財 모두에 대하여 支出構造를 조사한 반면, 農家經濟調査에서는 단순히 非耐久性 消費財, 즉 生計費 또는 家計費에 관련된 支出項目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고 상대적으로 所得彈力性이 높은 耐久性 消費財에 대한 支出項目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表 2-9〉 참조).

消費稅 合計의 階層別 稅負擔 分布는 附加價値稅의 分布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消費稅의 合計는 總所得과 可處分所得基準에서는 1~3分位에서 累進的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매우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消費支出基準에서는 3分位の 實效稅率이 약 4.28%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3分位를 제외하면 實效稅率이 3.5~3.8%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稅負擔이 대체로 比例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所得基準의 경우에 消費稅의 稅負擔이 逆進的인 것은, 都市家口에서 대체로 比例的으로 나타났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消費稅 전체의 稅負擔 分布는 附加價値稅의 稅負擔 分布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것은 都市家口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消費稅 중에서 附加價値稅의 相對的·絶對的인 비중이 모두 매우 높기 때문이다(〈表 2-9〉와 [圖 2-3] 참조).

전체적으로는 特別消費稅와 附加價値稅의 움직임의 폭이 매우 크며 그 이외의 稅目들에 대해서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表 2-9〉 主要消費稅の所得階層別 稅負擔(農村家口,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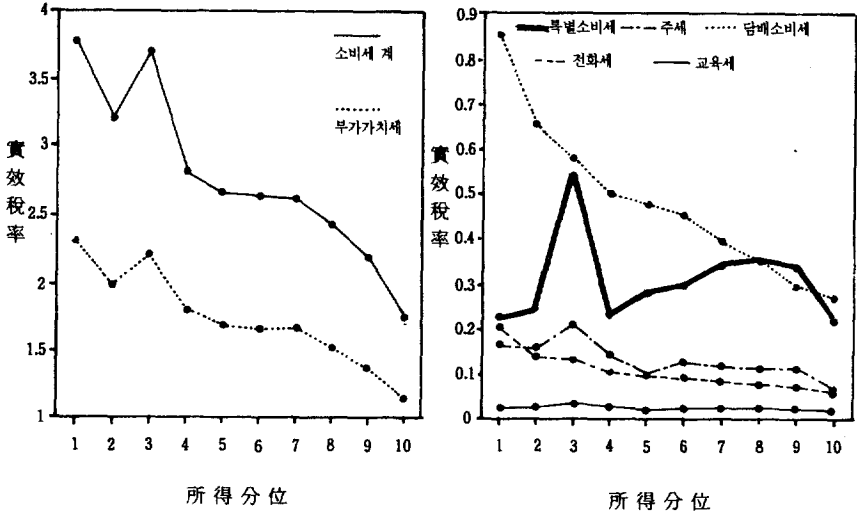
(單位：%)

所得分位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消費性向											
總所得 對比	103.9	85.99	86.14	73.22	74.53	73.85	72.75	68.58	65.22	50.07	68.65
可處分所得 對比	104.8	86.47	86.58	73.49	74.91	74.11	73.14	68.92	65.65	50.35	69.02
總所得基準											
附加價值稅	2.297	1.982	2.195	1.799	1.678	1.644	1.656	1.507	1.343	1.127	1.551
特別消費稅	0.228	0.247	0.539	0.228	0.277	0.296	0.340	0.350	0.294	0.264	0.304
酒 稅	0.165	0.157	0.208	0.139	0.101	0.123	0.112	0.108	0.109	0.063	0.111
電話稅	0.204	0.138	0.131	0.104	0.093	0.090	0.079	0.072	0.069	0.053	0.085
教育稅	0.027	0.025	0.036	0.025	0.018	0.023	0.021	0.022	0.020	0.013	0.021
甘味消費稅	0.851	0.652	0.576	0.498	0.476	0.449	0.393	0.350	0.333	0.213	0.400
小 計	3.772	3.200	3.686	2.794	2.643	2.625	2.600	2.409	2.167	1.732	2.467
可處分所得基準											
附加價值稅	2.315	1.992	2.206	1.806	1.687	1.650	1.664	1.515	1.352	1.133	1.559
特別消費稅	0.230	0.248	0.542	0.229	0.279	0.297	0.341	0.352	0.295	0.266	0.305
酒 稅	0.166	0.158	0.209	0.140	0.101	0.123	0.112	0.108	0.109	0.063	0.112
電話稅	0.205	0.138	0.132	0.105	0.094	0.091	0.080	0.073	0.069	0.053	0.085
教育稅	0.027	0.026	0.036	0.025	0.018	0.023	0.021	0.022	0.020	0.013	0.021
甘味消費稅	0.857	0.656	0.579	0.500	0.478	0.451	0.395	0.351	0.335	0.214	0.398
小 計	3.045	2.784	3.057	2.557	2.529	2.543	2.508	2.465	2.388	2.168	2.480
消費支出基準											
附加價值稅	2.210	2.304	2.548	2.457	2.252	2.227	2.276	2.198	2.059	2.250	2.259
特別消費稅	0.219	0.287	0.626	0.311	0.372	0.400	0.467	0.511	0.450	0.527	0.442
酒 稅	0.159	0.182	0.241	0.190	0.135	0.166	0.154	0.157	0.166	0.125	0.162
電話稅	0.196	0.160	0.152	0.143	0.125	0.122	0.109	0.105	0.105	0.105	0.124
教育稅	0.026	0.030	0.042	0.034	0.024	0.031	0.028	0.032	0.030	0.027	0.030
甘味消費稅	0.818	0.758	0.669	0.680	0.639	0.609	0.540	0.510	0.511	0.425	0.577
小 計	3.629	3.721	4.279	3.816	3.547	3.555	3.574	3.512	3.322	3.460	3.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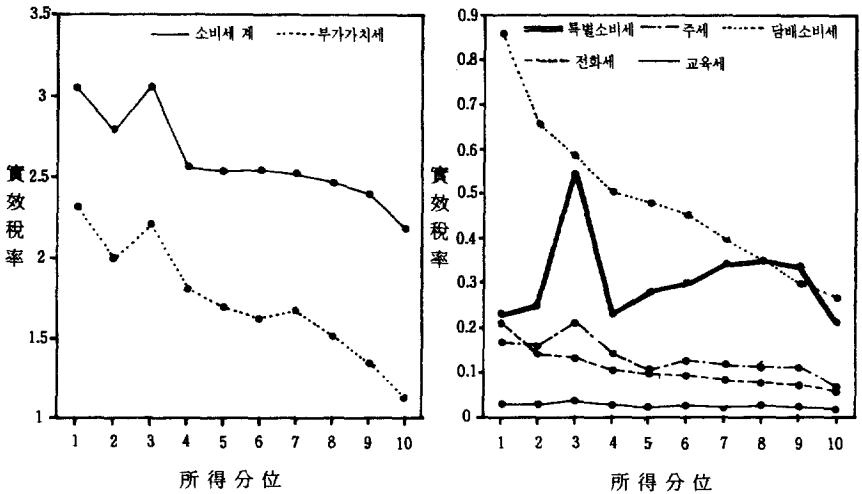
[圖 2-3] 農村家口の 所得分位別 消費稅 實效稅率

總所得基準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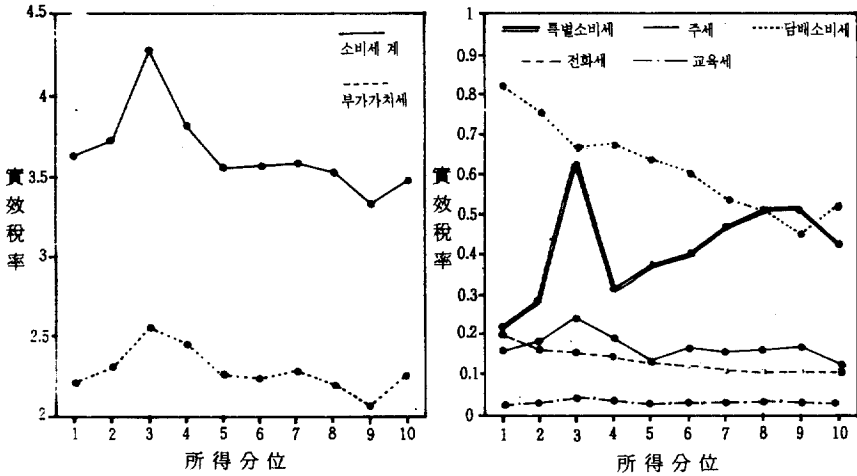


可處分所得基準



[圖 2-3]의 계속

消費支出基準



가. 附加價値稅

農家の 附加價値稅 負擔 分布는 都市家口의 경우와 比較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이다. 總所得과 可處分所得基準에 의하면 2~3分位에서 약간의 累進性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稅負擔의 逆進性이 뚜렷하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前述한 바와 같이 階層別 消費性向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消費支出基準에 의하면 逆進性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데, 이는 消費支出을 基準으로 산출된 實效稅率이 消費支出 자체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消費支出水準이 하락하더라도 實效稅率을 산출하는 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消費支出基準에서는 1~3分位와 10分位에서 累進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4~9分位에서 逆進性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2.26%를 중심으로 다소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特別消費稅

農家の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는 자료의 제약상 설탕과 청량음료,

경유, 휘발유, 가스류 등에 국한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농가의 경우에는 課稅對象이 非耐久性 財貨에 국한됨에 따라 特別消費稅 負擔分析의 근간이 되는 耐久性 消費財에 대한 負擔分析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석상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總所得과 可處分所得基準에 의하면 3分位와 8分位를 두 정점으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3~4分位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미약하나마 累進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消費支出基準에서는 3分位를 정점으로 그 부근에서 다소 逆進的인 稅負擔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所得基準의 경우에서보다 累進的인 모습이 다소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 教育稅

3分位와 10分位를 제외하고는 教育稅의 實效稅率이 平均(所得基準 0.021%, 消費支出基準 0.030%)을 중심으로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比例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分位의 경우에는 實效稅率이 전체 平均實效稅率보다 약간 높게, 10分位에서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教育稅의 本稅인 特別消費稅와 酒稅에 대한 實效稅率이 3分位와 10分位에서 다른 分位보다 각각 높게 그리고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酒稅는 3分位와 6分位에서 약간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所得과 消費支出基準 모두에서 稅負擔이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電話稅와 담배消費稅는 稅負擔의 逆進性이 보다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都市家口에 대한 결과와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消費支出基準에서보다는 總所得 또는 可處分所得基準에서 所得

階層別 稅負擔의 逆進性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課稅對象에 대한 지출이 所得에 대하여 매우 비탄력적인 것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表 2-10〉 所得分位別 構成比와 逆進度 指數(農村家口, 1991)

(單位: %, $\times 10^{-2}$)

分 位	總 所 得	可 處 分 所 得	消 費 支 出	消 費 稅 計
1	3.2517	3.2435	4.9232	4.9721
2	4.8379	4.8367	6.0597	6.2763
3	6.1855	6.1869	7.7610	9.2418
4	7.2369	7.2486	7.7181	8.1964
5	8.3350	8.3357	9.0478	8.9321
6	9.4462	9.4618	10.1604	10.0536
7	10.7140	10.7134	11.3538	11.2936
8	12.3043	12.3076	12.2907	12.0152
9	14.4871	14.4689	13.7627	12.7252
10	23.2015	23.1969	16.9225	16.2937
計	100.0	100.0	100.0	100.0
지니計數	29.5216	29.5164	27.6813	29.8433 ¹⁾ 29.8419 ²⁾
KPS指數	99.8883	99.7874	97.7601	—
KU指數	-0.2175	-0.2182	-0.2074	—
TH指數	-0.0514	-0.0520	-0.0386	—

註: 지니계수와 각 지수의 값은 매우 작아 100을 곱한 수치임.

1) 총소득에서 소비세를 차감한 후의 지니계수임

2)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소비세를 차감한 후의 지니계수임.

마. 逆進度 分析

農家の 消費稅 負擔은 매우 미미하지만 所得分配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都市家口의 경우와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

니계수의 값은 消費稅 부과 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KPS指數는 1보다 작은 값을, KU指數와 TH指數는 陰의 값을 시현하여 農家에서는 消費稅 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農家의 경우에는, 特別消費稅의 주요 課稅對象이면서 매우 所得彈力的인 品目으로 消費稅 負擔의 衡平性 提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乘用車와 大型 家電製品 등의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이 調査對象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表 2-10>에서와 같이 非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稅 負擔이 逆進的으로 나타난 것은 일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80년대 말부터 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農村에서도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乘用車와 大型 家電製品 등에 대한 수요증대로 연결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農家의 경우에서도 消費稅 負擔의 逆進性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表 2-10> 참조).

3. 關聯 研究와의 比較

가. 附加價值稅

기존의 연구 중에서 李啓植·裴竣皓(1984년 대상)가 消費支出을 基準으로 분석한 階層別 稅負擔이 대체로 比例的으로 나타났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Heller(1976년 대상), 韓昇洙(1978년 대상), 吳然天(1978년 대상), 徐遵鎬(1982년 대상), 李啓植·裴竣皓(1984년 대상, 總所得, 可處分所得基準), 羅城麟(1987년 대상)의 연구 모두에서 일관되게 附加價值稅가 逆進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附加價值稅가 逆進的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지지하고 있다(<表 2-11> 참조).

본 연구에서는 農家의 경우에 稅負擔이 상당히 逆進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都市家口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 所得과 消費支出基準을 막론

〈表 2-11〉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 分析에 관한 既存의 研究 結果

(單位：%)

	所得分位										平均	
	1	2	3	4	5	6	7	8	9	10		
車輦權 1965年												
物品稅	0.108	0.023	0.028	0.051	0.064	0.098	0.105	0.106	0.164	0.262		
酒稅	0.083	—	0.043	0.054	0.067	0.058	0.072	0.061	0.101	0.044		
煙草專賣益金	2.460	3.967	2.487	2.186	2.147	1.909	1.989	2.052	1.538	1.353		
小計	2.651	3.990	2.558	2.291	2.278	2.065	2.166	2.219	1.803	1.659		
Heller 1976年												
附加價值稅	5.55	5.19	4.19	5.00	4.67	4.84	4.79	4.04	4.11	3.19		
特別消費稅	1.02	1.19	0.86	0.98	1.03	1.05	1.01	0.89	0.86	1.67		
酒稅	0.84	0.93	0.90	0.86	0.80	0.90	0.61	0.83	0.70	0.67		
專賣益金	0.00	1.67	1.59	2.41	2.09	1.91	1.60	1.69	1.35	0.90		
小計	7.41	8.98	7.54	9.25	8.59	8.70	8.01	7.45	7.02	7.15		
韓昇洙 1970年 (非農家)												
營業稅	1.85	1.71	1.69	1.67	1.66	1.65	1.65	1.65	1.67	1.77	1.45	
物品稅	1.21	1.27	1.29	1.31	1.35	1.37	1.41	1.47	1.56	1.79	1.25	
石油類稅	1.04	1.07	1.09	1.10	1.12	1.13	1.16	1.19	1.24	1.34	0.99	
電氣가스稅	0.43	0.39	0.38	0.37	0.37	0.36	0.36	0.36	0.36	0.36	0.33	
織物類稅	0.46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6	0.59	0.48	
通行稅	0.61	0.67	0.69	0.71	0.73	0.74	0.76	0.78	0.82	0.89	0.63	
酒稅	1.44	1.23	1.18	1.13	1.08	1.05	1.00	0.95	0.88	0.77	1.01	
入場稅	0.23	0.25	0.25	0.26	0.26	0.27	0.27	0.28	0.29	0.31	0.22	
小計	7.27	7.07	7.06	7.05	7.08	7.09	6.87	7.22	7.38	7.82	6.36	
韓昇洙 1978年 (非農家)												
附加價值稅	9.38	7.50	6.70	6.40	5.99	5.69	5.38	5.06	4.67	3.82	4.88	
特別消費稅	3.12	2.81	2.57	2.48	2.36	2.26	2.16	2.06	1.92	1.62	1.90	
酒稅	2.34	1.83	1.60	1.52	1.41	1.32	1.23	1.14	1.02	0.78	1.12	
電話稅	0.25	0.21	0.19	0.18	0.17	0.16	0.15	0.14	0.13	0.11	0.13	
專賣益金	5.33	3.45	2.73	2.49	2.16	1.93	1.71	1.49	1.23	0.75	1.62	
小計	20.42	15.80	13.79	13.07	12.09	11.36	10.63	9.89	8.97	7.08	9.65	
財務部 1976年												
特別消費稅	0.19	0.21	0.30	0.35	0.33	0.31	0.45	0.25	0.41	0.70	0.43	
酒稅	0.26	0.27	0.26	0.25	0.26	0.24	0.24	0.26	0.25	0.22	0.25	
財務部 1978年												
特別消費稅	0.82	0.48	0.42	0.58	0.78	0.58	0.77	0.60	0.87	0.93	0.75	
酒稅	0.39	0.32	0.37	0.37	0.36	0.34	0.35	0.31	0.32	0.32	0.33	
財務部 1980年												
特別消費稅	0.62	0.50	0.48	0.47	0.41	0.50	0.48	0.41	0.45	0.45	0.46	
酒稅	0.61	0.41	0.46	0.42	0.42	0.46	0.45	0.44	0.45	0.37	0.42	

〈表 2-11〉의 계속

研究者	所得分位										平均
	1	2	3	4	5	6	7	8	9	10	
吳然天 1978年											
附加價值稅	5.36	3.10	3.07	3.05	3.05	2.99	2.91	2.86	2.77	2.60	2.87
特別消費稅	2.15	1.88	1.90	1.91	1.88	1.85	1.85	1.82	1.85	1.74	1.84
徐遵鎬 1982年											
附加價值稅	5.74	4.40	4.30	3.95	3.82	3.71	3.75	3.60	3.58	2.63	3.72
李啓植·裴竣皓 1984											
— 總所得基準											
附加價值稅	4.31	2.46	2.30	2.27	2.16	2.10	2.05	2.02	1.97	1.88	2.10
特別消費稅	0.61	0.36	0.36	0.42	0.34	0.36	0.39	0.37	0.38	0.42	0.39
酒 稅	0.25	0.13	0.12	0.11	0.12	0.10	0.10	0.09	0.08	0.07	0.10
電話稅	0.25	0.11	0.13	0.14	0.15	0.15	0.15	0.15	0.14	0.11	0.14
專賣益金	1.31	0.85	0.70	0.62	0.51	0.46	0.39	0.33	0.26	0.15	0.39
防衛稅	0.40	0.21	0.22	0.24	0.23	0.23	0.24	0.23	0.23	0.21	0.23
教育稅	0.21	0.14	0.11	0.10	0.09	0.08	0.07	0.06	0.05	0.03	0.07
小 計	7.34	4.27	3.95	3.89	3.59	3.47	3.37	3.25	3.10	2.85	3.41
— 可處分所得基準											
附加價值稅	4.70	2.59	2.39	2.35	2.40	2.19	2.13	2.10	2.05	1.96	2.19
特別消費稅	0.67	0.38	0.37	0.44	0.35	0.37	0.40	0.39	0.40	0.43	0.41
酒 稅	0.27	0.14	0.13	0.12	0.12	0.11	0.10	0.09	0.09	0.07	0.10
電話稅	0.27	0.12	0.14	0.14	0.15	0.15	0.16	0.16	0.15	0.12	0.14
專賣益金	1.43	0.90	0.72	0.64	0.53	0.47	0.40	0.35	0.27	0.15	0.41
防衛稅	0.43	0.22	0.23	0.25	0.23	0.24	0.25	0.24	0.24	0.22	0.24
教育稅	0.23	0.15	0.12	0.11	0.09	0.08	0.07	0.06	0.05	0.03	0.07
小 計	8.00	4.48	4.10	4.03	3.72	3.60	3.51	3.38	3.23	2.97	3.56
— 消費支出基準											
附加價值稅	2.47	2.51	2.55	2.63	2.64	2.63	2.60	2.64	2.67	2.76	2.64
特別消費稅	0.35	0.37	0.40	0.49	0.42	0.45	0.49	0.49	0.52	0.61	0.49
酒 稅	0.14	0.13	0.14	0.13	0.14	0.13	0.13	0.11	0.11	0.10	0.12
電話稅	0.14	0.11	0.15	0.16	0.18	0.19	0.19	0.20	0.19	0.16	0.17
專賣益金	0.75	0.87	0.77	0.72	0.63	0.57	0.49	0.44	0.35	0.21	0.49
防衛稅	0.23	0.21	0.25	0.28	0.27	0.28	0.30	0.30	0.31	0.31	0.29
教育稅	0.12	0.14	0.13	0.12	0.12	0.10	0.08	0.08	0.06	0.04	0.08
小 計	4.20	4.33	4.38	4.52	4.38	4.34	4.27	4.25	4.23	4.18	4.28
羅城麟 1987年											
附加價值稅											
實質所得基準	9.34	7.08	6.27	6.02	5.87	5.02	4.28	3.37	2.51	1.90	3.57
서베이所得基準	15.58	8.03	7.29	6.71	6.92	6.43	6.42	5.93	5.65	5.07	6.36

하고 1分位에서 稅負擔이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稅負擔이 比例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所得水準이 증가할수록 限界消費性向이 遞減한다는 假定下에서 附加價值稅가 逆進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이다. 그러나 특히 高所得層의 所得이 過少하게 報告된다면 高所得層의 消費性向이 실제보다 작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최근 都市家口の 消費行態가 크게 변화하여 高所得層의 消費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그들의 消費性向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特別消費稅

特別消費稅에 대한 階層別 稅負擔은 연구자에 따라 상당히 相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韓昇洙(1978년 대상), 財務部(1980년 대상), 吳然天(1978년 대상), 李啓植·裴竣皓(1984년 대상, 消費支出基準)의 연구에서는 特別消費稅가 逆進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Heller(1976년 대상)에서는 比例的인 것으로, 財務部(1976, 1978년 대상), 李啓植·裴竣皓(1984년 대상, 總所得, 可處分所得基準)에서는 累進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特別消費稅의 稅負擔이 매우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奢侈性 消費財에 과세함으로써 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하여 所得分配를 개선하려는 特別消費稅의 기능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층 강화되었다는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中·小型 家電製品이나 嗜好食品 등 低所得層에 이르기까지 消費가 大衆的으로 확산되어 있는 品目에도 特別消費稅가 지속적으로 課稅되고 있으며 이것이 稅負擔의 逆進性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特別消費稅의 稅負擔이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特別消費稅의 모든 體系가

所得再分配에 特化하여 奢侈性 消費財에 대한 課稅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中·高所得層을 중심으로 過消費 風潮의 확산에 따른 高價의 奢侈品에 대한 消費가 擴散되었던 것과,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乘用車와 燃料油인 揮發油에 대한 세부담이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등 消費者들의 消費行態가 고도화되면서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한 稅負擔의 累進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것은 <表 2-5>와 <表 2-6>에서 보듯이 乘用車와 揮發油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稅負擔 分布를 보면 累進도가 급격히 弱化되고 있다는 것에서 입증되고 있다([圖 2-1] 참조).

特別消費稅의 累進성과 관련하여 所得再分配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課稅對象을 포함한 階層別 實效稅率이 累進的이라는 사실에만 국한하여 모든 課稅對象에 대하여 特別消費稅의 課稅를 強化함으로써 所得再分配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稅負擔의 逆進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大衆消費品目까지도 課稅對象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의 강화는 오히려 低所得層의 稅負擔을 가중시켜 稅負擔을 逆進的인 방향으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⁸⁾.

다. 教育稅

教育稅에 대한 연구로는 李啓植·裴峻皓(1984년 대상)가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教育稅(防衛稅 포함)의 부담이 總所得, 可處分所得基準에서는 逆進的으로, 消費支出基準에서는 대체로 比例的인 것으로

18) 예를 들면 소형 칼라TV와 소형 냉장고에 대한 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연구로 郭泰元(1987)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都市家口의 경우에, 所得基準이나 消費支出基準에 관계 없이 稅負擔이 매우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있고, 乘用車 부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累進性이 상당히 약화되어 대체로 완만하게 累進的이거나 比例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나 農家의 경우에도 李啓植·裴坡皓의 연구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總所得, 可處分所得基準에서는 農家の 稅負擔이 미약하나마 累進的이며, 消費支出基準에서는 比例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酒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酒類와 담배, 電話 등은 모두 生活必需品化하거나 소비가 大衆化된 嗜好品으로 소득에 대하여 非彈力的으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品目에 대해서는 事前에 稅負擔이 逆進的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상은 實證研究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모두 農家와 都市家口를 불문하고 酒稅와 電話稅, 담배消費稅(또는 專賣益金)의 稅負擔이 逆進的이라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稅目的 부과는 所得再分配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主要 外國의 階層別 消費稅 負擔 分布

本節에서는 美國, 英國,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OECD국가 중에서 다섯 국가의 消費稅의 階層別 稅負擔 分布를 살펴본다. 위의 5개국에서는 美國을 제외하고는 모두 附加價値稅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個別消費稅(excise tax)를 시행중이고, 美國에서는 세율 0~7.5%의 州販賣稅(state sales tax)와 聯邦消費稅

(Federal Excise Tax)를 시행하고 있다.

美國의 階層別 消費稅 負擔에 관한 연구로는 Pechman and Okner(1974)와 Pechman(1985), Fullerton and Rogers(1993)가 있는데 本節에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Fullerton and Rogers의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Fullerton and Rogers의 연구에서는 所得階層을 12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階層을 10段階로 구분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1~2階層이 最下位 10%, 11~12階層이 最上位 10%를 나타내므로 本節에서는 각각 두 階層을 합하여 1分位와 10分位로 환산하였다.

EC 각국에 대한 消費稅 負擔에 관한 연구는 OECD(1981, 1988)가 있는데, 本節에서는 최근의 연구인 1988년의 자료를 소개한다.

附加價值稅를 시행하고 있는 4개국에서는 附加價值稅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10%보다 대체로 더 높으며, 따라서 附加價值稅의 實效稅率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附加價值稅의 實效稅率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英國의 消費稅 負擔構造를 보면 附加價值稅보다 個別消費稅의 稅負擔 比重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EC 국가에서 附加價值稅의 비중이 個別消費稅의 비중보다 더 높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가. 美 國

美國은 17개 주요 消費財에 대한 州販賣稅와 聯邦消費稅의 合에 대하여 全家口를 대상으로 生涯에 걸친 所得을 추정하고 그 所得을 기준으로 階層別 稅負擔을 分析하였다. 消費稅의 負擔 分布는 9~10分位에서 약간 累進的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最低所得層인 所得 1分位の 實效稅率은

〈表 2-12〉 所得階層別 消費稅 負擔 分布의 國際比較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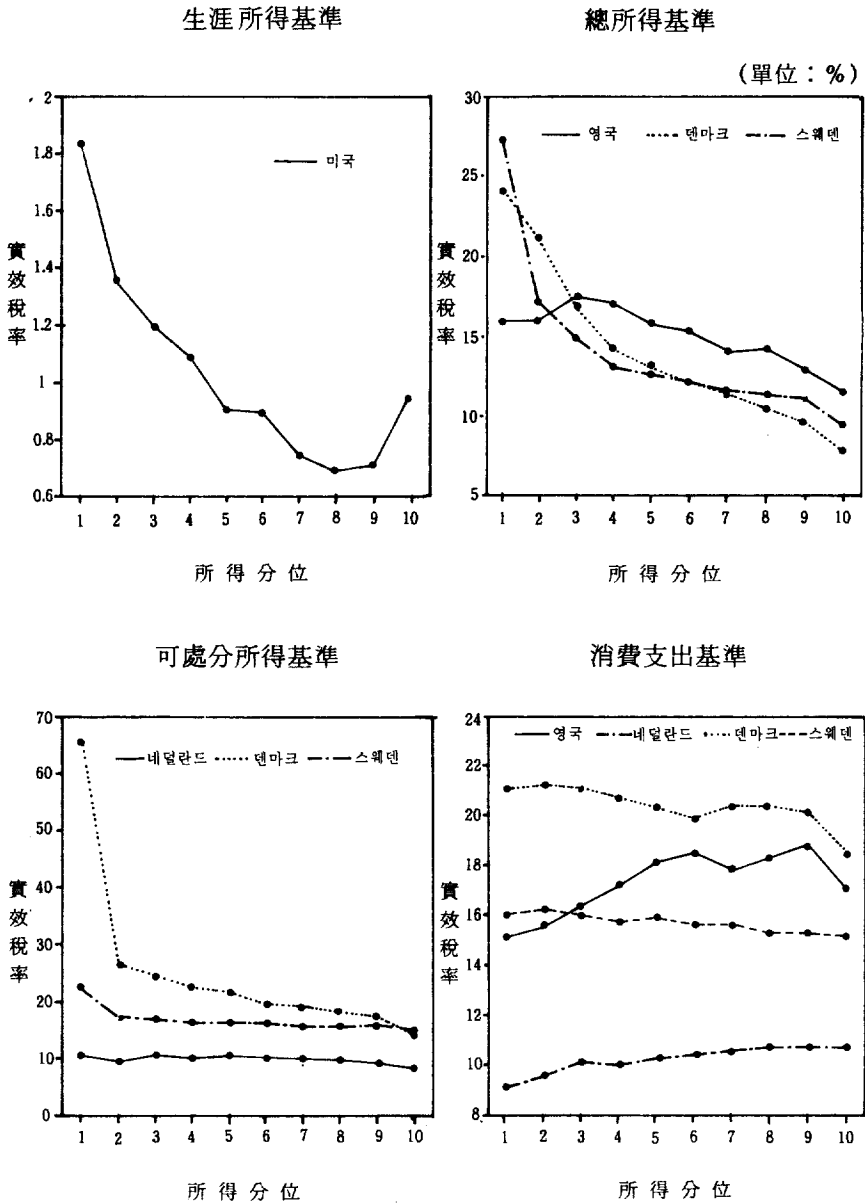
國 家	基準斗 稅目	所 得 分 位(人口基準)										平均
		1	2	3	4	5	6	7	8	9	10	
美 國 ¹⁾ (1984)	州 販 賣 稅 斗 聯 邦 消 費 稅	1.83	1.35	1.19	1.09	0.90	0.89	0.74	0.68	0.70	0.94	0.94
英 國 (1985)	總 所 得 基 準 附 加 價 值 稅 個 別 消 費 稅	6.9	6.9	7.5	7.6	7.2	7.0	6.6	7.0	6.4	5.9	6.9
	小 計	8.9	9.0	10.0	9.4	8.6	8.2	7.4	7.2	6.4	5.4	8.1
	消 費 支 出 基 準 附 加 價 值 稅	15.9	15.9	17.4	17.0	15.8	15.2	14.0	14.2	12.9	11.3	15.0
	小 計	6.3	6.0	6.5	7.1	7.8	8.0	8.2	8.8	9.3	9.5	7.8
네덜란드 (1983)	總 所 得 基 準 附 加 價 值 稅 個 別 消 費 稅	8.6	7.2	8.2	7.7	8.3	8.1	7.7	7.6	7.4	6.6	7.6
	小 計	2.1	2.2	2.4	2.4	2.3	2.3	2.3	2.3	1.9	1.7	2.1
	消 費 支 出 基 準 附 加 價 值 稅	10.7	9.5	10.6	10.0	10.6	10.4	10.0	9.9	9.4	8.4	9.6
	小 計	7.4	7.2	7.8	7.6	8.1	8.1	8.2	8.3	8.5	8.5	8.1
덴마크 (1981)	總 所 得 基 準 附 加 價 值 稅 個 別 消 費 稅	17.1	14.1	11.4	9.3	8.6	8.0	7.5	6.9	6.5	5.4	7.6
	小 計	7.1	6.9	5.4	4.8	4.3	4.0	3.8	3.4	3.0	2.3	3.6
	消 費 支 出 基 準 附 加 價 值 稅	24.1	21.0	16.8	14.1	12.9	12.0	11.3	10.4	9.6	7.7	11.2
	小 計	45.7	17.6	16.1	14.9	14.2	13.1	12.9	12.3	11.8	9.7	13.1
스웨덴 (1985)	總 所 得 基 準 附 加 價 值 稅 個 別 消 費 稅	19.6	12.1	10.2	8.9	8.5	8.2	7.8	7.5	7.4	6.5	8.6
	小 計	7.6	5.0	4.6	4.1	4.0	3.8	3.7	3.6	3.7	2.8	3.9
	消 費 支 出 基 準 附 加 價 值 稅	27.3	17.1	14.8	13.0	12.5	12.1	11.5	11.2	11.1	9.3	12.5
	小 計	15.7	12.6	11.8	11.2	11.2	11.2	10.8	10.7	10.7	10.4	11.4
스웨덴 (1985)	總 所 得 基 準 附 加 價 值 稅 個 別 消 費 稅	6.7	5.0	5.2	5.0	5.2	5.1	5.1	5.2	5.4	4.6	5.2
	小 計	22.3	17.5	16.9	16.3	16.4	16.3	15.9	15.8	16.1	15.0	16.5
	消 費 支 出 基 準 附 加 價 值 稅	11.1	11.0	11.0	10.9	10.9	10.5	10.6	10.5	10.6	10.7	10.7
	小 計	4.9	5.2	5.1	4.9	5.0	5.1	5.0	4.9	4.8	4.5	4.9
		16.0	16.2	16.0	15.7	15.9	15.6	15.6	15.3	15.2	15.6	

註: 1) 원래는 12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었으나 10분위 구분에 맞춰 재구성한 것으로 생애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資料: D. Fullerton and Diane L. Rogers,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OECD, *Taxing Consumption*, 1988.

[圖 2-4] 主要 外國의 消費稅 負擔 分布(消費稅 計)



1.83%로 最高所得層인 10分位の 0.94%의 약 2배 정도이며, 가장 實效稅率이 낮은 8分位에 대해서는 약 2.7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分位の 實效稅率이 낮게 나타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최고소득층의 實效稅率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나. 英 國

英國에서는 附加價值稅보다는 個別消費稅에 대한 稅負擔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個別消費稅가 부과되는 財貨나 用役에 대한 消費構造가 階層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最高所得層을 제외하고는 附加價值稅와 個別消費稅 모두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附加價值稅는 總所得基準의 경우에 1~4分位에서 累進的이고 5~10分位에서는 대체로 逆進的인 반면에, 消費支出基準에서는 2分位를 제외하고는 累進性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個別消費稅는 總所得基準의 경우에 1~3分位에서 累進的이고 4分位 이상의 分位에서는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消費支出基準에서는 總所得基準보다 다소 累進的인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1~6分位에서 累進的이며 7分位 이상에서는 逆進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總消費稅의 경우에는 總所得基準에서는 1~4分位에서 累進的이고 5~10分位에서는 逆進的이며, 消費支出基準에서는 대체로 累進的으로 나타났다.

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基準에 따라 稅負擔 分布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可處分所得基準에서는 實效稅率이 다소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比例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消費支出基準에

서는 상대적으로 累進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附加價值稅는 可處分所得基準의 경우에 1~9分位에서 8% 수준을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0分位에서는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消費支出基準에서는 累進性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個別消費稅는 可處分所得基準의 경우, 1~4分位에서 累進的이고 5~8分位에서는 比例的이며 9~10分位에서는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消費支出基準에서는 1~8分位에서 대체로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9~10分位에서는 比例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附加價值稅와 個別消費稅를 합산한 總消費稅는 可處分所得基準의 경우에 1~8分位에서 比例的이거나 또는 매우 완만하게 逆進的이고 9~10分位에서는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消費支出基準에서는 그 경향이 반전되어 累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可處分所得基準과 消費支出基準에서 상당히 다른 稅負擔 分布의 결과를 보이는 것은 階層別로 消費性向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네덜란드는 英國과 함께 덴마크나 스웨덴보다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덜 逆進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덴마크

덴마크의 消費稅 負擔은 대체로 逆進性이 두드러진다. 附加價值稅는 消費支出基準에서 5分位와 8, 9分位를 제외하고는 所得基準과 消費支出基準 모두에서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可處分所得基準의 경우에는 1分位の 實效稅率이 45.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個別消費稅의 경우에도 總所得과 可處分所得 등 所得基準에서는 稅負擔의 逆進性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消費支出基準에서는 所得基準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分位에서는 累進的이며 4~5分位에서는 逆進的, 6~8分位

에서는 累進的, 9~10分位에서는 다시 逆進的으로 나타나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總消費稅의 경우에도 個別消費稅의 경우와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所得基準에서는 逆進的으로, 消費支出基準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比例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消費稅의 實效稅率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消費支出基準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消費支出를 증가시킴에 따라 消費稅 負擔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 스웨덴

總所得基準에 의하면 附加價値稅와 個別消費稅, 그리고 그 合計 모두 稅負擔이 일관되게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可處分所得基準에 따르면 個別消費稅는 일관되게 逆進的인 반면 附加價値稅와 總消費稅의 경우에는 1~3分位에서 逆進的이고 4~10分位에서는 比例的 또는 매우 완만하게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消費支出基準에 의하면 附加價値稅의 경우, 5~6分位에서 逆進的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比例的이며, 個別消費稅는 4.9%를 중심으로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消費稅의 합계는 매우 완만하게 逆進的인 모습을 띠면서 전체적으로는 比例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總所得과 可處分所得基準에서 1分位の 總消費稅의 實效稅率이 20%를 초과하고 있어 低所得層의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V. 稅負擔 分析의 問題點 및 向後 補完點

1. 所得의 定義 및 消費支出과 稅負擔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所得分配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階層間的 所得이 보다 均等하게 分配되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보다 均等한 所得分配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개개인의 人的 特性을 무시한 채 모든 소득을 완전히 均등하게 分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령에 따라 또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所得의 隔差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만큼의 소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所得은 일정기간 내의 消費支出 및 資產의 純增加의 습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개념적으로는 명확하나 실제로 소득을 추정할 때에는 그 구분이 애매해지거나 未實現 資本利得과 같이 貨幣單位로의 測定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득의 범위를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다. 所得의 推定에 있어서 구분이 애매하거나 화폐단위로의 측정이 어려운 부분을 소득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제외시킴에 따라 稅負擔 分析의 결과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그 정도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資本利得과 배당되지 않은 法人所得을 個人的 所得으로부터 제외시킨다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므로 高所得層의 實效

稅率(effective tax rate)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¹⁹⁾. 반대로 移轉所得과 類似所得(income-in-kind)을 소득에 포함시키면 상대적으로 低所得層의 所得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低所得層의 實效稅率은 감소하게 된다²⁰⁾.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稅負擔이 보다 逆進的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分析期間이 短期일 경우에는 稅負擔 分析에 있어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短期에 걸친 소득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恒常所得(permanent income)을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稅負擔 分布에 대한 연구는 보통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이라는 기간이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을 상쇄할 정도의 長期은 아니다. 즉, 장기적인 家口의 定常資金狀態(normal financial status)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1년간의 소득을 사용한다면 정확하지 못한 지표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恒常所得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일시적인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所得이 일시적으로 低下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低所得層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稅負擔 分析을 하게 되면 稅負擔 分布 分析의 정확도가 의문시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Pechman and Okner(1974)와 Pechman(1985)은 일시적인 失業이나 橫財, 疾病, 주기적인 또는 기타의 영향에 의한 所得의 不規則한 變動(fluctuation of business losses

19) 배당되지 않은 법인의 소득도 종국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법인을 자연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며 또한 법인의 모든 소득은 결국 자연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할 때 법인의 소득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조세를 자연인만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얼핏 보아 모두 법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법인의 모든 소득이 자연인에게 분배되므로 법인세도 결국 자연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吳然天(1982), p.60과 崔洸(1987), p.29 참조).

20) 吳然天(1982), p.60 참조

because of cyclical or other influences) 및 隱退한 勞動者(retired workers)의 所得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1년간의 소득은 生涯(life-time)를 통해 얻는 소득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分析期間을 1년보다 더 長期的으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所得稅의 규모는 소득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지만, 消費는 장기적인 所得의 흐름에 더 많이 영향을 받으므로 恒常所得이 변하지 않는 한, 消費支出規模의 변화폭은 所得規模의 변화폭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消費稅의 負擔規模는 所得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변화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短期에 있어서 低所得層의 消費稅 負擔이 실제보다 逆進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1년보다는 더 長期에 걸친 所得을 기준으로 階層別 消費稅의 負擔을 분석하면 短期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 즉 短期에서 低所得層의 間接稅 負擔이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어지는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²¹⁾.

이러한 문제는 특히 所得 1分位에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分位 階層은 恒常所得이 낮은 계층뿐만 아니라 恒常所得은 높으나 일시적인 所得의 低下를 경험하고 있는 계층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後者の 消費水準이 前者의 消費水準보다 높으므로 관찰된 소득은 비슷하더라도 後者가 더 많은 소비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間接稅 負擔 分布가 더욱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²²⁾.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表 2-5>와 <表 2-9>에서 보듯이 都市家口와 農村家口에 대한 稅負擔 分析의 결과, 1分位の 消費稅 負擔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分析期間을 보다 長期로 잡아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효과를 최소화하면 소득1분위 계층의 稅負擔이 과다하게 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21) Pechman and Okner(1974), pp. 52~55와 Pechman(1985), p.18 참조

22) Pechman and Okner(1974), Pechman(1985), Davies, St-Hilaire and Whalley(1984)와 李啓植·裴峻皓(1986) 참조.

분석기간을 1년으로 하는 데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내구성 소비재의 소비에 있다.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에는 購入時期와 消費時期間に 時差가 발생하여 소비세의 부담시기와 소비기간, 즉 소비재의 물리적인 수명간에 차이가 난다. 내구성 소비재는 구입한 시점뿐만 아니라 장기에 걸쳐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형식적으로 소비세는 구입시에 일괄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稅負擔이 사용기간에 걸쳐 배분되어져야 한다²³⁾.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사용기간에 걸친 소비세 배분에 있어서의 자의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標本이 無作爲로 추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크게 완화 또는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分析期間 내에 구입한 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稅 負擔額을 耐久年限에 따라 배분하는 것과, 耐久年限이 경과하지 않은 耐久消費財를 分析期間 이전에 구입하여 형식적으로 消費稅를 부담하지 않는 家口에 上記의 消費稅 負擔額을 배분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보다 長期에 걸친 분석의 장점을 인지하면서도 자료상의 제약이나 또는 바람직한 代案提示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分析期間을 1년으로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개발을 위한 根據資料를 마련해 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分析對象期間을 1년으로 하였다.

2. 稅負擔 分析의 基準

階層別 또는 地域別 稅負擔 分布 分析을 위해서는 1인당, 1가구

23) Pechman(1985), p. 18과 Pechman and Okner(1974), pp. 52~54 참조.

당, 또는 所得分位別 稅負擔 등의 절대액도 중요하지만 所得分配의 累進度(또는 逆進度)를 분석할 때에는 상대적인 稅負擔의 크기도 중요하다. 消費稅負擔 分布 分析, 즉 消費稅負擔의 상대적인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첫째는 直接稅 賦課 前의 總所得(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것, 둘째는 直接稅 課稅 後의 可處分所得(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總消費支出額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²⁴⁾.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분배를 놓고도 逆進度 指數 또는 累進度 指數는 대체로 서로 다른 수치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階層別 消費稅 負擔 分布 分析을 위해 累進度(또는 逆進度) 指數를 구해 보면 總所得 基準보다는 可處分所得 基準을 따를 때에 일반적으로 더 累進的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直接稅는 대개 累進課稅되므로 직접세의 과세에 따른 總所得의 減少比率은 低所得層에서보다는 高所得層에서 더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階層別 可處分所得의 분포가 總所得의 분포보다 더 累進的으로 되기 때문이다.
- ② 전체 소비세 중에서 單一稅率이 적용되는 一般消費稅의 비중이 크고 差等稅率이 적용되는 個別消費稅의 비중이 낮다면 消費稅의 負擔額은 消費支出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해도 큰 오류는 없다. 만약 單一稅率構造를 가진 소비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 소비지출 기준을 따라 累進度(또는 逆進度) 指數를 구해 보면 계층별로 比例的인 稅負擔의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비록 다른 기준, 즉 소득기준을 따를 때에는 累進的인 또는 逆進的인 稅負擔의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

24) 李啓植·裴垞皓(1986) 참조.

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③ 소득이 증가할수록 平均消費性向이 감소한다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총소득 또는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상대적인 크기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비세의 상대적인 부담비중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앞의 ②와 같이 비례적인 稅負擔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총소득 기준 또는 가처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지출 기준에서는 서로 다른 累進度(또는 逆進度) 指數의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각 기준을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總所得 또는 可處分所得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에 비록 소득이 같다고 해서 厚生水準(welfare level)도 반드시 동일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소득은 동일하더라도 비교대상 가구의 부양가족수가 동일하지 않다면 각각의 厚生水準은 서로 달라지게 된다²⁵⁾. Wertz는 이에 대하여 소득기준을 사용할 때에는 분석대상의 人的特性(demographic characteristics)에 따라 分析單位를 차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둘째,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一稅率構造를 가진 消費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消費支出基準을 따르면 稅負擔 分布가 비례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계층별로 平均消費性向의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계층별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세 부담액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 계층별 稅負擔이 비례적이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기준에서는 總消費支出額 對比 稅負擔 分布만을 측정하므로 比例的인 稅負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비현실적인 결론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 기준이 반드시 단점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25) 吳然天(1982), p.41과 Wulf(1975), p.99 참조.

26) Wertz(1975), pp. 119~122 참조.

예를 들어 일시적인 失業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에 기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항상소득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해당 소비자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 기준을 채택하여 稅負擔 分析을 하면 매우 逆進的인 稅負擔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때 과연 소득은 계층별 消費稅負擔 分析의 기준으로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所得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따른 상기와 같은 결론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은 소득에 비하여 그 변동의 폭이 작으므로 일시적인 소득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지출 기준이 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一般消費稅인 附加價値稅가 總間接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特別消費稅 등 個別消費稅의 비중이 낮고 또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소비가 대중화된 것이 많으므로 소비지출 기준을 따르게 되면 ②에서 본 바와 같이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가 소득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비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세 가지 기준은 서로 장·단점이 엇갈려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좋은 기준인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확일적으로 어느 한 가지 기준만을 고집하게 되면 다른 기준에서의 장점을 간과함에 따라 장점을 死藏시켜 버리게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각각 그 장점을 살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분석함이 바람직하겠다²⁷⁾.

3. 各種 消費稅의 轉嫁 및 稅額의 割當方式에 대한 假定

本節에서는 消費稅의 轉嫁에 대한 理論이나 假定 및 稅額을 할당

27) 본 연구에서는 李啓植·裴堉皓(1986)에서와 같이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可處分所得을 정의함에 있어 직접세 이외에도 準租稅의 성격을 지닌 醫療保險料와 退職寄與金 등도 제외하기로 한다.

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관련 연구에서 연구방법에 대한 假定을 선정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基礎資料를 제공한다.

名目稅率과 實效稅率은 각종의 租稅減免制度和 中間投入財에 부과되는 조세의 有無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령 免稅品의 경우에는 名目稅率은 零이더라도 實效稅率은 零이 아닌 경우가 있다²⁸⁾. 왜냐하면 最終生産物은 면세라고 하더라도 最終生産物을 생산하기 위한 中間投入要素 중에서 課稅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稅負擔이 최종소비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가 轉嫁되기 때문이다²⁹⁾. 이 외에도 直接消費와 間接消費의 추계문제 등과 같은 문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韓昇洙(1982)와 Heller(1976, 1978)의 研究에서는 소비를 直接消費와 間接消費로 나누어 直接消費에 대한 消費稅는 消費者에게 完全轉嫁된다고 가정하였고 間接消費에 대한 消費稅는 해당 품목의 直接消費에 대한 비율만큼 間接消費에 대한 消費稅額을 계층별로 할당하여 消費稅 負擔額을 추정하였다.

Musgrave and Musgrave(1989)는 다음 세 가지로 租稅歸着을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絶對的 租稅歸着(absolute tax incidence)으로 政府支出이나 여타 稅目에는 변화가 없을 경우, 둘째는 差別的 租稅歸着(differential tax incidence)으로 總稅收와 總政府支出規模의 변화 없이 複數의 세목을 복합적으로 조정하였을 경우, 셋째는 均衡豫算歸着(balanced-budget incidence)으로 세수와 지출수준을 동시에 변경시켰을 경우에 稅負擔 또는 所得再分配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³⁰⁾.

稅負擔을 政府的 公共서비스 제공에 대한 代價로 인식한다면 衡平性에 입각한 地域別 稅負擔 分析에 있어서 租稅의 負擔側面뿐만 아니라 地域別 公共서비스의 提供側面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28) 吳然天(1982), pp.66~67 참조.

29) 이러한 것을 前轉(forward incidence)이라고 한다.

30) Musgrave and Musgrave 5th ed.(1989), pp. 238~239 참조.

Pechman and Okner(1974)는 租稅의 轉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생산물이나 생산요소의 절대가격보다는 조세부과에 따른 상대가격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조세의 轉嫁에 대하여 個人所得稅는 轉嫁가 안 되며 一般消費稅는 總消費支出額에 비례하고³¹⁾ 法人稅는 法人의 收益率(rate of return)을 감소시키고, 土地에 대한 財產稅는 토지의 공급이 가변적이지 않는 한 土地所有者에게 귀속되며 建物에 대한 財產稅는 資源配分에 영향을 미쳐 法人稅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³²⁾.

稅負擔 分析의 결과는 消費稅가 어떻게 轉嫁되는가에 관한 가정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하에서도 가정에 따라 逆進的 또는 累進的인 상반된 稅負擔 分析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³³⁾.

吳然天(1982)은 계층을 소득 10分位 및 가구구성원수별로 7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消費稅는 모두 消費者에게 轉嫁된다고 가정하였다. 조세의 轉嫁에 대해서는 소비를 直接消費와 間接消費로 나누거나 과세되는 품목에 대한 지출총액에 따라 소비세액을 할당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세목별 실효세율에 해당 소비지출액을 곱하여

31) Pechman and Okner(1974), p.31 참조.

32) Pechman and Okner(1974), pp. 27~39 참조. Pechman and Okner는 법인세의 부과에 따라 법인의 수익률이 하락하므로, 세후 수익률이 높았던 非法人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이동은 양부문의 수익률이 다시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법인세의 부과는 경제전반에 걸쳐 수익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Pechman and Okner(1974), p. 31 참조).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재정수입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재정지출 측면도 고려한다면 수익률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부문에서 비법인부문으로의 자원이동은 비록 비법인부문의 수익률을 감소시키지만 법인부문의 세전 수익률은 오히려 증가시키므로 위와 같은 논의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

33) Pechman and Okner, pp.57~62 참조. 특히 法人稅와 財產稅는 轉嫁에 대한 假定에 따라 稅負擔의 累進度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消費稅負擔額을 소득분위별로 산출하였다³⁴⁾. 그는 부분균형분석에 입각하여 차별적 조세귀착 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이전의 각종 소비세를 대체하면서 197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의 階層別 稅負擔을 종전의 소비세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많은 경우에 있어 소비세는 소비자에게 完全轉嫁된다고 가정하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가정은 供給이 完全彈力的이거나 또는 需要가 完全非彈力的일 때에만 타당하므로 비현실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Prest(1968)는 지적하고 있다³⁵⁾.

34) 吳然天(1982), pp. 78~79 참조.

35) 吳然天(1982), p. 62 참조.

Ⅵ. 우리나라 消費稅의 構造

消費稅는 財貨나 用役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대개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크게 一般消費稅와 個別消費稅로 구분할 수 있다. 一般消費稅는 원칙적으로 모든 財貨나 用役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소비세로서 單一稅率(10%)의 附加價值稅가 시행되고 있다³⁶⁾. 單一稅率의 一般消費稅는 課稅 後에도 財貨나 用役의 稅前 相對價格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인위적인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資源配分의 歪曲問題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실의 競爭市場(competitive market)에서 財貨나 用役의 生産이나 消費에 外部效果(externalities)가 발생한다면 市場失敗(market failure)에 의하여 競爭市場에서의 資源配分은 더 이상 효율적이 아니게 된다³⁷⁾. 따라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율로 課稅하거나 補助金 지급 등의 정책을 사용하여 상대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個別消費稅는 보통 稅收確保의 機能 이외에도 일반소비세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崔洸(1987)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도입이유는, 일반소비세의 세율체계가 단일세율이 될

3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무연탄,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 신문, 잡지, 통신·방송, 인지, 우표, 복권, 공중전화, 전매품 및 제조담배, 금융·보험용역, 토지, 변호사 등의 용역,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도서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 종교·자선단체 등의 재화 또는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이 있다.

37) 경쟁시장의 균형에서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 초래될 수 있는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하고 財貨 또는 用役의 생산이나 소비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외부효과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資源配分の 歪曲을 是正하며 稅負擔의 逆進性을 緩和하고, 또한 ‘受益者負擔의 原則’에 입각하여 특정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수혜자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消費 또는 生産抑制을 유도하면서 國家財政收入을 確保하는 데 있다.

1. 附加價値稅

附加價値稅는 1976년 12월 22일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다섯 차례의 법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附加價値稅는 일반소비세로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財貨 또는 用役과 輸入하는 財貨를 課稅對象으로 하며, 基本稅率은 과세대상인 財貨나 用役의 供給價格의 10%이고, 이에 추가하여 輸出이나 設備投資의 경우에 적용하는 零稅率制度和 金融·保險業이나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人的 用役에 대하여 적용되는 免稅制度를 두고 있다. 단계별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는 一般納稅者 이외에도 課稅特例制度를 두어 記帳能力이 부족하여 기본세율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세업자들을 課稅特例者로 분류하여 外形(賣出額)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³⁸⁾.

1991년도의 附加價値稅 徵收實績을 보면 8조 2,526억원으로 내국세의 34.3% 및 간접세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38)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업자들은 과세특례자로 분류되어 외형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위탁매매, 주선, 중개, 도급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상한선이 900만원이며 세율은 3.5%를 적용받는다.

10조 763억원에 내국세의 33.5%, 간접세의 67.2%를 점유하고 있다(〈表 2-4〉와 〈表 2-13〉 참조).

〈表 2-13〉 附加價値稅의 稅收實績

(單位: 億圓, %)

	國內分			輸入分	占有比		合計
	納付	還給	實稅收		國內分	輸入分	
1987	33,113	25,679	7,434	29,071	20.4	79.6	36,505
1988	39,194	30,448	8,746	33,306	20.8	79.2	42,052
1989	46,479	29,058	17,421	35,181	33.1	66.9	52,602
1990	59,388	32,926	26,462	43,182	38.0	62.0	69,644
1991	72,542	42,041	30,501	52,025	37.0	63.0	82,526
1992	86,750	39,832	46,917	53,846	46.6	53.4	100,763

資料: 財務部, 「國稅行政概要」, 1992. 10.

財務部, 租稅政策課.

2. 特別消費稅

特別消費稅는 1976년 12월 22일 특별소비세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특별소비세의 도입 취지는 財政收入의 確保라는 일반적인 機能 이외에도 單一稅率의 一般消費稅를 적용함에 따른 課稅의 逆進性을 補完함과 동시에 고가의 사치품이면서도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품목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함으로써 所得再分配 및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財貨나 用役에 대한 消費抑制 등 일반 소비과세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몇 가지 개별품목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되고 있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과

거에는 일부 계층, 즉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특별소비세 도입의 본래 목적 중의 하나인 一般消費稅인 附加價値稅의 逆進性을 補完하는 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대부분은

〈表 2-14〉 特別消費稅의 主要品目別 課稅現況(1991年)

(單位：%, 百萬元)

品名	稅率	課稅額	品名	稅率	課稅額
第1種		24,251	기호음료	10	11,436
보석	60	178	자양강장품	10	27,994
귀금속	20	500	기타		578
가구	10	602	第4種		957,438
골프용품	60	1,199	휘발유	100	779,895
특수화장품	10	17,761	(유연)	(130)	
기타		4,011	(무연)	(109)	
第2種		1,055,121	경유	10(9)	155,680
공기조절기	25	125,597	L P G	10(8)	16,986
냉장고	20,15	94,050	기타		4,877
전기세탁기	20	13,802	과세장소외		46,738
칼라 TV	20,15	83,489	유홍장소계		
승용차	10,15,25	504,297	과세장소		18,849
피아노	20,10	19,772	골프장	3,000원	12,228
기타		214,114	터키탕	100	384
第3種		152,504	기타	10	6,237
커피, 코코아	20	35,554	과세유홍장소		27,889
사탕	10	28,193			
청량음료	10	48,749	합계		2,236,052

資料：國稅廳，「國稅行政概要」，1992. 10

여전히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이지만 더러는 중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의한 구매력 상승에 따라 소비의 저변이 저소득층에 까지 확대된 품목들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소비품목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 과세하다 보면 特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 효과가 매우 미약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所得分配를 惡化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들에 관한 稅制整備方案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이것으로써 논의를 마치기로 하겠다.

〈表 2-14〉는 特別消費稅의 주요 품목별 세율과 1991년도의 과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품목별 특별소비세의 과세현황 중 특징적인 사실은 稅收入의 대부분이 石油類와 乘用車, 家電製品과 같은 소수의 課稅對象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3. 酒 稅

酒稅는 1949년 10월 21일 주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1990년 12월 31일의 법개정에 따라 새로운 주세법이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주류별 주세율 및 주세부과 현황은 〈表 6-3〉과 같다. 품목별로는 麥酒로부터의 酒稅收入이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품목의 稅收入으로는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燒酒와 위스키 등의 순으로 세수비중이 높으며 이들 세 가지 酒類의 稅收比重은 전체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表 2-15〉 年度別·酒類別 酒稅賦課 現況

(單位：%, 百萬원)

		稅 率	1987	1989	1991
탁주	주	5(10)	11,583	11,483	9,783 [0.8]
약주	주	30(60)	315	314	357[0.03]
맥주	주	150	391,101	581,241	799,175[68.5]
청주	주	70(120)	20,433	26,823	37,280 [3.2]
과실주	주	30(25)	3,967	4,881	4,776 [0.4]
명약주	주	70(100)	3,281	4,689	1,956 [0.2]
기타양조주	주	-(110)	-	-	5
증류식소주	주	50(35)	-	-	538[0.05]
희석식소주	주	35	95,726	111,243	128,136[11.0]
고량주	주	80(110)	2,970	4,687	2,625 [0.2]
주정		57,000원/kl (49,857원/kl)	7,108	6,894	7,623 [0.7]
위스키	키	150(200)	46,075	69,978	68,432 [5.9]
브랜디	디	150	514	1,057	716[0.06]
기타증류주	주	-(80)	-	-	-
합성청주	주	-(65)	-	-	-
인삼주	주	-(50)	482	601	283[0.02]
기타재제주	주	-(100)	13,809	21,059	15,448 [1.3]
일반증류주	주	80	-	-	9,259 [0.8]
리큐어	어	50	-	-	2,672 [0.2]
기타주류		50~80	-	-	220[0.02]
수시분			129	444	-99
소계			597,493	845,349	1,089,185[93.4]
수입분			21,170	55,323	77,075 [6.6]
합계			618,663	900,672	1,166,260 [100]

註：1. () 안은 종전세율이고 [] 안은 酒類別 구성비임.

2. 주세부과액이 1991년에 전년 대비 14.2% 증가된 주된 요인은 주세 세수의 68.5%를 점유하고 있는 맥주의 출고량과 주세액이 각각 21.1%, 22.0% 증가한 것임.

3. 1991년 7월 1일 이후 출고분은 개정된 주류 구분에 의함.

資料：國稅廳, 「國稅行政概要」, 1992. 10.

4. 담배消費稅

담배에는 從量稅(unit tax)의 담배消費稅가 부과되고 있다. 從量稅는 가격의 高低를 불문하고 물품의 數量이나 重量을 課稅標準으로 삼는 것으로서 물품의 價格을 課稅標準으로 삼는 從價稅(ad valorem tax)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현행 담배소비세의 稅率(稅額)은 醜련의 경우 국산 또는 수입을 불문하고 모두 20개비 1갑당 그 가격에 관계 없이 360원³⁹⁾의 담배消費稅가 부과되고 있으며 附加價値稅나 關稅 등 다른 消費稅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담배消費稅에 대해서는 財政收入 確保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민보건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수입담배에 대하여서는 從量稅를 기준으로 국산과 동일하게 20개비당 360원의 소비세만이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나 여타의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美國이나 日本 등 담배輸出國 內에서의 판매가격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담배消費稅의 체계, 즉 從量稅 체계

〈表 2-16〉 담배消費稅의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稅	率
醜련	20개비당 360원(또는 40원)	
과 이 프 담 배	50 g 당	700원
엽 醜련	50 g 당	2,000원
각 醜련	50 g 당	700원
쌌 는 담 배	50 g 당	800원
냄 새 맡 는 담 배	50 g 당	500원

資料：稅經社, 『租稅大典』, 5 地方稅, 1990. 8.

39)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의 醜련에 대해서는 20개비당 40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稅額의 調整이나 從價稅로의 轉換이 요망된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수입담배뿐만 아니라 국산담배에도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논외로 하겠다.

5. 電話 稅

電話稅는 1973년 3월 14일 電話稅法이 제정된 이래 1981년과 1988년 두 차례의 法改正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電話稅의 세율은 單一稅率로 電話使用料의 10%가 부과되고 있으며, 附加價值稅의 免稅條項 등에 따라 電話使用料에는 電話稅 이외의 다른 세목들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1992년의 電話稅의 稅收規模는 3천 604억 원으로서 전반적인 稅收入 規模는 그렇게 크지 않아 國稅 전체(總稅收入 基準)의 약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전화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용료가 비교적 높은 카폰(car phone)이나 휴대폰(cellular phone) 등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로부터의 세수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근거리 시외통화료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체 稅收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6. 教育 稅

教育稅는 1981년 12월에 教育稅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모두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육세법의 개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0년 12월에 개정되어 防衛稅가 폐지된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防衛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면서 세율도 대폭 인상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教育稅의 稅 수입 규모도 1991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는 약 1조 8,2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教育稅의 도입 시행 목적은 教育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教育財政의 확충에 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하는 데 있다⁴⁰⁾.

教育稅는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독립된 品目別 課稅對象이 있는 것이 아니라 附加稅(surcharge 또는 sur-tax)의 일종으로 다른 관련 稅目的 稅額이 課稅標準이 되고 있다. 즉, 內國稅인 特別消費稅와 酒稅, 地方稅인 登錄稅와 馬券稅, 均等割住民稅, 財產稅, 綜合土地稅, 自動車稅 등에 대한 稅額의 일정 비율만큼이 教育稅로 부과되고 있다.

40) 教育稅法 제1조 참조.

VII. 改善方向

本章에서는 IV 장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消費稅 體系의 改善方向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1990년대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1991년 농가를 대상으로 한 本 研究에서는 稅負擔의 逆進性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1년 都市家口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逆進性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農家의 경우에는 耐久性 消費財에 대한 支出도 고려하여야만 消費稅의 負擔 分布가 逆進的인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本章에서는 都市家口의 稅負擔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 附加價值稅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는 單一稅率의 一般消費稅로서 국내에서 消費되는 財貨와 用役의 거의 대부분을 課稅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稅負擔의 逆進性 또는 累進性은 階層別 所得 對比 支出總額, 즉 消費性向에 의존한다. 附加價值稅가 逆進的이라고 할 때에는 所得水準이 증가함에 따라 消費性向이 遞減한다는 가정하에서만 타당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附加價值稅가 所得再分配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階層別 消費性向의 격차에 의존한다. 따라서 附加價值稅의 逆進度에 따른 稅制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階層別 消費性向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즉 階層別 稅負擔이 消費性向의 分布에 비해 보다 逆進的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附加價值稅의 稅制 자체가 역진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累進性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消費性向이 체감하고 階層別 稅負擔 分布

가 消費性向의 分布와 일치한다면 附加價値稅의 逆進性은 稅制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消費支出 構造에 있는 것이므로 현행 소비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비세 체계를 개선한다면, 附加價値稅는 一般消費稅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個別消費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제Ⅳ장에서의 결론에 의하면 階層別 消費性向과 附加價値稅의 負擔 分布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현행 稅制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다만 課稅特例者와 免稅範圍의 문제 등 附加價値稅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에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또는 900만원 미만인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外形에 대하여 2% 또는 3.5%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課稅特例者들이 稅負擔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매출을 은폐 또는 위장하고 있어, 실제로는 消費者들이 擔稅하고 세액의 일부가 脫稅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의 稅負擔과 형식적인 稅負擔, 즉 擔稅와 納稅間에 격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課稅特例者 등에 대한 과세의 강화가 필요하다⁴¹⁾.

2. 特別消費稅

特別消費稅의 稅負擔이 累進的이므로 본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所得再分配의 기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乘用車와 燃料油인 揮發油 등이 逆進度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승용차와 휘발유의 경우에는 稅負擔의 逆進性 改善이라는 것 외에도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교통체증에 의한 물류비용 증대 등의 外部不經濟의 문제와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지속

41) 柳時權(1993) 참조.

적인 課稅가 필요하다.

반면에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 중에는 세탁기, 소형 칼라TV, 소형 냉장고 등의 小型 家電製品이나 嗜好食品, 清涼飲料 등 稅負擔의 逆進性이 매우 큰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所得分配의 改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⁴²⁾. 특히 세탁기의 경우에는 大型 製品이 비과세됨에 따라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에서 더욱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에 大型 製品에 대한 稅負擔 分布를 보면 稅負擔의 累進度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稅負擔의 逆進性 改善이라는 측면에서 小型 家電製品이나 嗜好食品, 清涼飲料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非課稅하고 대형 제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하면서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新商品 등에 대해서는 새로이 課稅對象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3. 酒稅, 電話稅, 教育稅

酒稅와 電話稅는 전형적으로 逆進性이 높은 稅目이지만 상대적인 비중이 작아 전체적인 稅負擔 分布의 逆進性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이다.

현행 酒稅 체계는 稅負擔의 衡平性에 초점을 맞추어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고급주 또는 고가의 주류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저급주 또는 저가의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酒類의 消費는 消費者에게 효용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알콜 중독, 음주 운전 등의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므로 稅負擔의 逆進性 問題 이외에도 外部不經濟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의 酒稅制度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稅負擔의 衡平性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外部不經濟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

42) 成明宰(1993 a) 참조.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一例로 현행과 같이 주류의 고급도와 계층별 소비실태를 반영하여 저급주에 低率課稅하는 것에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外部不經濟를 많이 초래하는 高알콜 酒類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⁴³⁾.

電話稅는 附加價値稅의 체계와 상당히 유사하여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다른 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通信은 經濟·社會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경쟁력 측면과 국민들의 후생 측면에서 현행 수준보다 증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며 사용량에 따라 증과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화량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폭증하여 교통체증과 유사한 外部不經濟의 문제를 초래한다면 사용료를 累進的으로 적용하거나 전화세율을 累進的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特別消費稅額과 酒稅額에 부가하여 과세되고 있는 教育稅는 特別消費稅와 酒稅에 대한 개선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教育稅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은 과연 特別消費稅額과 酒稅額을 目的稅인 教育稅의 課稅對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4. 담배消費稅

담배의 消費는 所得에 매우 非彈力的으로 변화하며 따라서 담배消費稅의 稅負擔은 매우 逆進的이다. 또한 담배消費稅의 체계가 從量稅로 되어 있어 消費者의 擔稅力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稅負擔의 逆進性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逆進的인 稅負擔을 개선하고 적

43) 成明宰(1993 b) 참조.

정한 수준의 財政收入을 위해서는 현행의 從量稅 體系에서 從價稅 體系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담배의 消費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폐해를 낳으므로 소비의 억제가 요청되며 지속적으로 重課稅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담배에 대해서는 附加價値稅와 關稅를 비과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附加價値稅는 물론이고 關稅까지도 비과세되고 있어 다른 財貨나 用役과 비교하여 衡平性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담배에 대해서도 附加價値稅를 부과하고 輸入담배에 대해서는 關稅를 부과해야 한다⁴⁴⁾.

44) 金珍洙(1993) 참조.

VIII. 結 論

앞에서 보았듯이 상대적인 稅負擔은 所得水準뿐만 아니라 所得源의 種類 및 消費形態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住宅이나 土地 등, 資産의 所有與否와 資金借入 與否 등, 所得과 같은 流量(flow)變數 이외의 貯量(stock)變數들도 租稅負擔에 큰 영향을 미친다⁴⁵⁾. 따라서 소득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기타의 요인들에 차이가 있으면 실질적인 稅負擔은 서로 달라지게 된다.

都市家口の 稅負擔은 1~5分位에서 逆進的(所得基準) 또는 比例的(消費支出基準)이고 6~10分位에서는 완만하게 累進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農家の 경우에는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消費稅가 상당히 逆進的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198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過消費 現象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特別消費稅와 教育稅의 稅負擔은 累進的(都市家口)이며 기타의 세목들에서는 대체로 比例的이거나 逆進的이다. 따라서 稅負擔의 逆進性 緩和에 特別消費稅와 教育稅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출액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乘用車와 揮發油, 大型 家電製品 등의 소수 품목을 제외한 다수의 小型 家電製品이나 嗜好食品, 清涼飲料 등의 경우에는 稅負擔의 逆進性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품목들을 현행 세율로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乘用車와 揮發油, 大型 家電製品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稅負

45) Pechman and Okner(1974), p.66 참조.

擔의 衡平性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흔히 稅負擔의 衡平性을 논의할 때에는 1년이라는 短期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短期에서는 상대적인 稅負擔이 逆進的이더라도 生涯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모든 개인이나 가구의 세부담이 比例的이거나 또는 短期에서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면, 短期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稅負擔의 衡平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短期에서의 衡平性 문제뿐만 아니라 年齡別 所得이나 富의 격차를 감안하여 生涯 전반에 걸친 稅負擔의 衡平性을 고려하여 稅制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消費稅의 경우에는 相續이나 贈與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주체가 생애에 걸친 所得이나 富를 過不足이 없이 소진하고 모든 消費稅는 단일세율로 과세된다고 하면 생애에 걸친 階層別 稅負擔은 比例的이게 되므로 短期에서 稅負擔이 逆進的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에서의 逆進性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富의 세습 등이 문제가 되어 생애에 걸친 所得과 富의 합이 消費支出의 總額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消費稅가 모두 단일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생애에 걸친 세부담이 逆進的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消費稅의 體系만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消費稅의 逆進性을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相續이나 贈與에 대한 課稅를 강화하여야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를 위한 노력이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租稅를 도구로 사용하여 所得再分配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租稅가 만능이라는 견해는 곤란하다⁴⁶⁾. 所得再分配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租稅側面에서 稅負擔의 衡平性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함께 歲出側面에서의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6) Pechman and Okner(1974), pp. 55~57 참조.

〈附 錄〉

1. 稅目別 消費稅額의 算出根據

本節에서는 第3章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都市家計年報와 農家經濟調查資料에 대한 品目別·稅目別 支出額으로부터 稅目別 消費稅의 負擔額을 산출하는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附加價値稅, 電話稅, 담배消費稅

單一稅率을 지닌 附加價値稅 또는 電話稅와 같은 消費稅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또는 電話料金 告知書의 告知額)이 해당 세목의 課稅標準과 課稅標準에 單一稅率을 곱하여 산출된 稅額의 합과 일치하므로 판매가격(또는 電話料金 告知額)에 대비한 세액의 비율을 품목별 지출액에 곱하여 줌으로써 支出額으로부터 稅額을 逆算할 수 있다.

附加價値稅(稅率 10%)의 課稅標準은 각 生産 流通段階別 附加價値의 總合 또는 최종 생산물의 가격에서 附加價値稅額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세액은 항목별 總支出額의 11분의 1이 된다. 家口가 실제로 부담하는 附加價値稅의 稅額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支出總額으로부터 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에 대한 지출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附加價値稅의 免稅對象이 되는 가공하지 않은 食料品과 新聞, 雜誌, 通信, 教育用役과 相關 教材, 大衆 交通手段(시내버스, 기차 등), 金融·保險用役, 醫療保健用役, 煉炭, 無煙炭, 수돗물, 圖書館·科學館·博物館 등에 대한 入場, 國家·地方自治團體가 제공하는 用役 등을 支出總額으로부터 차감하거나 또는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지출액을 합산한 것의 11분의 1

을 稅負擔額으로 한다. 물론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者 중에서는 일반세율 10%가 적용되지 않는 課稅特例者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비율이 정확히 11분의 1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課稅特例者의 매출비중과 세액의 납부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電話稅와 담배消費稅에 대해서는 第3章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電話稅는 附加價値稅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10%로 단일하고 여타의 消費稅 또는 附加稅(surcharge)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電話稅額은 附加價値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電話使用에 대한 支出總額의 11분의 1로 한다. 담배消費稅는 前述한 바와 같이 從量稅이므로 세액이 판매가격과 무관한바, 가격별로 상이한 담배소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담배消費稅의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담배 판매가격에 대비한 평균세율 56.5%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담배消費稅額을 逆算하였다.

나. 酒 稅

都市家計年報에서는 주류에 대한 지출항목이 淸酒와 藥酒, 濁酒, 燒酒, 麥酒, 위스키, 果實酒, 기타 酒類와 飲酒代 등 아홉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매우 상세한 반면에 農家經濟調查資料에서는 탁주와 소주, 기타 주류의 세 가지만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조사의 세분화가 덜 이루어져 있다.

酒類에 대한 支出項目別로 酒稅額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稅包含 出庫價格⁴⁷⁾에 적정 유통마진을 합산한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자료의 여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판매점별로 상이한 소

47) 酒稅와 教育稅, 附加價値稅를 포함한다. 단, 소주와 약주, 탁주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비자 판매가격을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로 통합하는가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적정 流通마진率(유통단계의 부가가치세 포함)을 40%로 假定하여 販賣價格에 대비한 酒稅負擔額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인 1991년에는 7월 1일을 중심으로 주세법이 개정되어 동일한 주류라 하더라도 상·하반기별로 酒稅率이 상이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하반기별로 각각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비한 세액의 비율을 산출하고 그 평균을 사용하여 酒稅負擔額을 산출하였다.

기타 주류로 구분된 항목에 대한 酒稅負擔率은 해당 酒類의 稅前 出庫價格의 합에 대비한 酒稅額의 비율, 즉 평균세율을 추정한 후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教育稅와 附加價値稅를 합산한 후 유통마진을 더하여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구하였다. 특히 農家의 경우, 기타 주류에 대한 평균 酒稅負擔率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양주에 대한 소비가 매우 적으므로 이들 주류는 제외시켰으며 또한 맥주에 대한 소비도 그 비중이 비교적 작으므로 總麥酒에 대한 지출액의 10% 정도만이 농촌에서 소비된 것으로 假定하였다. 물론 농촌에서의 맥주소비의 비중에 따라 기타 주류에 대한 酒稅負擔率이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 변화폭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都市家計年報의 調查項目 중에는 飲酒代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家庭이 아닌 遊興業所 또는 一般 大衆飲食店에서 酒類의 消費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前者의 경우는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에 포함되어 판매가격에 特別消費稅의 세액도 포함되는 반면에 後者는 特別消費稅가 非課稅된다. 그러므로 特別消費稅가 부과되는 장소에서는 주류 판매가격에 特別消費稅額도 포함되기 때문에 販賣價

格⁴⁸⁾에 대비한 酒稅額의 比率은 前者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飲酒代에 대한 販賣價格(또는 支出額) 對比 酒稅의 負擔比率은 階層別로 양자의 소비비중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所得 1~5分位에서의 음주대는 全額이

〈附表 1〉 酒類別 販賣價格 對比 酒稅 負擔率

(單位：%)

			負 擔 率
都市家計年報資料 利 用 時	청	주	28.059
	약	주	19.668
	탁	주	4.498
	소	주	16.835
	맥	주	33.018
	위 스 키	키	34.546
	과 실	주	13.690
	기 타	주 류	27.430
	음 주 대		6.763 ¹⁾ 7.028 ²⁾
農家經濟調查資料 利 用 時	탁	주	4.498
	소	주	16.835
	기 타	주 류	28.406 ³⁾

註：1) 所得 6~10分位에 대한 稅負擔率임.

2) 所得 1~5分位에 대한 稅負擔率임.

3) 위스키와 브랜디, 탁주, 소주를 제외한 주류의 가중평균 酒稅 負擔率임.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아닌 일반 대중음식점 등에서 지출되며, 所得 6~10分位에서는 양자에 대하여 각각 절반 정도씩 지출한 것

48) 家庭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되는 주류는 판매이윤이 세후 출고가격의 4배 정도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면 최종 판매가격(소비자 입장에서는 支出總額임)은 판매이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해당 장소의 경우에 한함)의 합이 된다.

으로 假定하였다.

酒類別 販賣價格에 對比한 酒類別 酒稅 負擔率은 <附表 1>과 같다.

다. 特別消費稅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에 포함되는 품목에 대한 支出額 對比 特別消費稅의 負擔率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또는 유통마진율)과 세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별 特別消費稅의 稅率과 유통마진율은 <附表 2>와 <附表 3>과 같다.

特別消費稅의 稅額產出도 酒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정된 판매

<附表 2> 主要 品目別 特別消費稅의 稅率

(單位: %)

稅 率	課 稅 對 象
10	설탕, 식용색소, 향료, 콜라, 사이다, 과세유홍장소, 고급가구, 가스레인지, 특수화장품, 소형 승용차, 피아노 등
15	냉장고(300리터 이하), 청소기, 전자레인지, 칼라TV(20인치 이하), 전축, 중형 승용차
20	커피, 코코아, 냉장고(300리터 초과), 세탁기와 건조기(6kg 이상), 칼라TV(20인치 초과), 피아노(그랜드형) 등
25	카메라, VCR, 영사기, 대형 승용차 등
8	LPG
9	경유
109	휘발유

<附表 3>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의 主要 品目別 유통마진율

(單位: %)

	輕 油	揮發油	乘用車	家電製品	高級家具	其 他
유통마진율	15.1 ¹⁾	36.5 ¹⁾	0 ¹⁾	20.0 ²⁾	30.0 ²⁾	25.0 ²⁾

註: 1) 판매가격 대비 유통마진의 비중임.

2) 이들 품목들에 대한 유통마진율은 稅後 출고가격 對比 유통마진율이며 임의적인 假定임.

〈附表 4〉 主要 品目別 販賣價格 對比 特別消費稅 負擔率

(單位 : %)

負擔率	該 當 品 目	備 考
5.849	LPG	
6.189	장농, 장식장, 침대, 응접세트	소비자 가격 400만원 이상시 적용(과세최저한 : 제조장 반출 가격 200만원)
6.436	설탕, 식용색소, 향료, 콜라, 사이다, 피아노, 특수화장품	피아노 : 400만원 미만시 적용 특수화장품 : 지출액의 25%만 적용
6.519	경유	
6.704	가스레인지	
8.045	소형 승용차, 오토바이	300만원 이상~850만원 이하
9.509	냉장고(300리터 이하), 칼라TV(20인치 이하), 청소기 ¹⁾ , 전자레인지 ¹⁾ , 전축	냉장고 : 55만원 미만시 적용 칼라TV : 50만원 미만시 적용
11.411	중형 승용차	850만원 초과~1,800만원 미만
11.544	커피, 피아노(그랜드형)	피아노 : 400만원 이상시 적용
12.025	냉장고(300리터 초과) 세탁기(6kg 이하) 칼라TV(20인치 초과)	냉장고 : 55만원 이상시 적용 칼라TV : 50만원 이상시 적용 세탁기 : 40만원 이하시 적용
14.294	카메라, VTR, 영사기	카메라 : 25만원 이상시 적용
17.153	대형 승용차	1,800만원 이상시 적용
42.959	휘발유 ²⁾	

註 : 1) 조사항목의 연간 지출액이 10만원 이하이면 0의 세부담을, 1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이면 지출액의 80%를, 90만원 초과시에는 72만원 + 90만원 초과분의 10%를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액으로 가정함.

2) 조사항목의 연간 지출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지출액의 50%, 150만원 이하이면 50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40%, 15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 + 150만원 초과분의 30%를 휘발유에 대한 지출액으로 가정함.

가격에 對比한 特別消費稅額의 비중을 구하여 그 비율을 支出總額에 곱하여 주는 방법으로 稅負擔額을 逆算하였다. 다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과 非課稅對象이 혼재되거나 동일한 품목이더라도 용량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료의 제약상 이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의 지출액을 일정한 가정에 의하여 課稅對象에 지출된 금액을 산출하거나 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항목별로 稅負擔率을 산정하였다(〈附表 4〉 참조).

라. 教育稅

教育稅는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부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國稅 중에서 特別消費稅와 酒稅, 그리고 地方稅 중에서는 登錄稅, 馬券稅, 均等割住民稅, 財產稅, 綜合土地稅, 自動車稅에 대하여 稅額의 일정 비율만큼을 부과하는 附加稅(surcharge)의 하나이다. 세율은 0.5~30% 수준이며 防衛稅가 폐지되면서 교육세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稅負擔 分布 分析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附表 5〉 教育稅의 課稅標準과 稅率

(單位: %)

課 稅 標 準	稅 率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특별소비세액	30
주 세 액	10(주세의 세율이 8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서는 30%)
등록세액	20(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는 25%)
마 권 세 액	20
균 등 할 주 민 세 액	10
재 산 세 액	20
중 합 토 지 세 액	20
자 동 차 세 액	30

註: 과세표준은 비과세대상의 세액을 제외한 것임.

〈附表 6〉 主要 品目別 販賣價格 對比 教育稅 負擔率

(單位：%)

負擔率	該 當 品 目	備 考
13.690	과실주	
18.566	장농, 장식장, 침대, 응접세트	소비자 가격 400만원 이상 시 적용(과세최저한: 제조장 만출가격 200만원)
1.931	설탕, 식용색소, 향료, 콜라, 사이다, 피아노, 특수화장품	피아노: 400만원 미만시 적용 특수화장품: 지출액의 25% 만 적용
2.011	가스레인지	
2.414	소형 승용차, 오토바이	300만원 이상~850만원 이하 시 적용
2.853	냉장고(300리터 이하), 칼라TV(20인치 이하), 청소기 ¹⁾ , 전자레인지 ¹⁾ , 전축	냉장고: 55만원 미만시 적용 칼라TV: 50만원 미만시 적용
3.423	중형 승용차	850만원 초과~1,800만원 미 만시 적용
3.463	커피, 피아노(그랜드 형)	피아노: 400만원 이상시 적용
3.608	냉장고(300리터 초과) 세탁기(6kg 이하) 칼라TV(20인치 초과)	냉장고: 55만원 이상시 적용 칼라TV: 50만원 이상시 적용 세탁기: 40만원 이하시 적용
4.288	카메라, VCR, 영사기	카메라: 25만원 이상시 적용
5.146	대형 승용차	1,800만원 이상시 적용
5.624	기타 주류	농가에만 적용
5.850	청주	
8.229	기타 주류	도시가구에만 적용
9.905	맥주	
10.364	위스키	

註:1) 조사항목의 연간 지출액이 10만원 이하이면 0의 세부담율, 10만원 초
과 90만원 이하이면 지출액의 80%를, 90만원 초과시에는 72만원+
90만원 초과분의 10%를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액으로 가정함.

본 연구에서는 教育稅의 중요성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1991년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教育稅의 稅負擔을 분석한 연구와는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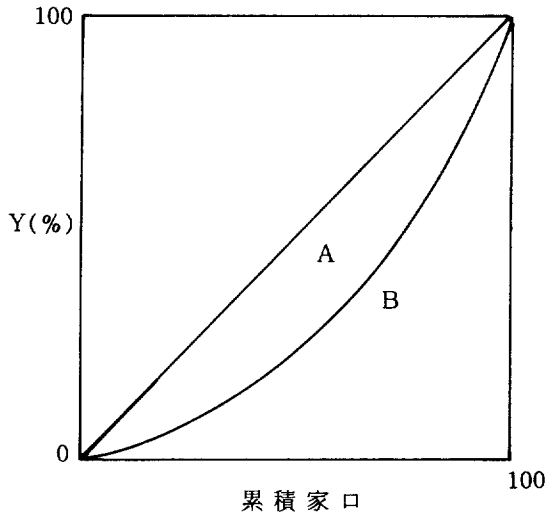
본 연구의 초점이 소비세에 맞춰져 있으므로 教育稅에 대한 稅負擔 분석은 消費稅, 즉 特別消費稅와 酒稅의 課稅對象 중에서 교육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대한 教育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教育稅의 負擔額에 대한 산출은 特別消費稅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2. 逆進度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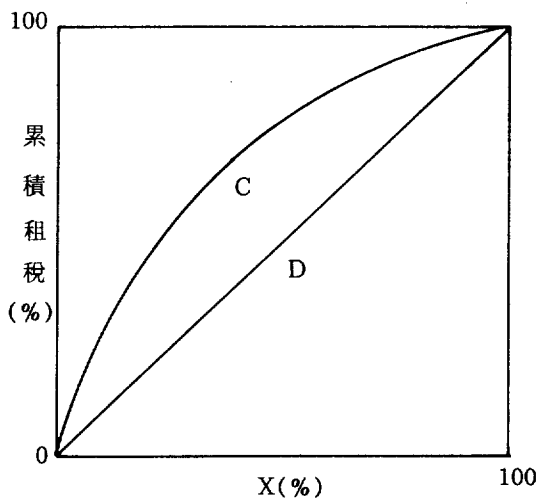
가. 지니係數

「로렌즈 曲線」(Lorenz Curve)은 家口를 所得順으로 나열한 후 累積家口의 數(또는 비율)에 대한 所得의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것으로 [附圖 1]에서 A와 B 사이의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나타낸다. 지니係數는 로렌즈 곡선을 이용하여 所得分配의 不平等度를 나타내는 指數의 하나로 수식으로는 $A/(A+B)$ 로 정의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所得分配가 평등하면 로렌즈 곡선은 45° 선에 가까워지며 반대로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지면 45° 선에서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所得分配가 평등해지면 지니계수의 값은 작아지며, 불평등해지면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일례로 소득이 완전 평등하면 지니계수의 값은 0이며 반대로 모든 소득이 한 개인이나 가구에 집중되면 1이 된다. [附圖 1]에서 Y는 累積 總所得, 累積 可處分所得, 累積 消費支出을 나타낸다.

[附圖 1] 로렌즈 曲線



[附圖 2] 相對的 租稅集中曲線



나. KPS指數

[附圖 2]의 곡선은 家口를 所得(또는 消費支出)의 크기 순서에 따라 再配列한 후 累積所得(또는 累積消費支出)의 比率에 대한 累積稅額의 比率을 나타낸 것으로 위로 볼록하면 稅負擔이 累進的이며 반대로 아래로 볼록하면 稅負擔이 逆進的인 것을 나타낸다. 「케탄-포다-스」(Khetan-Poddar-Suits)은 이로부터 逆進度 指數인 KPS 指數를 도출하였는데 KPS指數는 $(C+D)/D$ 로 정의된다. C는 곡선이 위로 볼록하면 陽의 값을 가지며 아래로 볼록하면 陰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세가 累進的이면 KPS指數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며 逆進的이면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 [附圖 2]에서 X는 累積 總所得, 累積 可處分所得, 累積 消費支出을 나타낸다.

다. 쿠즈네츠 指數

쿠즈네츠 指數(이하 K指數)는

$$K = \frac{n}{2(n-1)} \sum_{i=1}^n \left| s_i - \frac{1}{n} \right|$$

으로 정의된다. 모든 家口 또는 個人의 소득이 $1/n$ 의 비율만큼씩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s_i = 1/n, i=1, 2, \dots, n$ 이 되어 K는 0이 된다. 반면에 모든 소득이 한 個人이나 家口에 집중되어 있어 所得分配가 가장 不平等하게 된다면

$$\sum_{i=1}^n \left| s_i - \frac{1}{n} \right| = 1 - \frac{1}{n} + (n-1) \times \frac{1}{n} = \frac{2(n-1)}{n}$$

이 되어 K는 1이 된다. 따라서 K의 값이 1에 가까우면 所得分配는 不平等해지며, 반대로 0에 가까워지면 所得分配가 보다 平等해진다. K指數에서는 \sum 기호 이후의 값이 標本의 數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K指數의 값을 0과 1 사이에서 일반화하기 위해 $n/2(n-1)$

을 곱하여 준 것이다.

라. 타일의 엔트로피 指數

타일의 엔트로피 指數(또는 T指數)는

$$\begin{aligned}
 T &= \frac{1}{\ln(n)} \sum_{i=1}^n s_i \ln(n \times s_i) \\
 &= \frac{1}{\ln(n)} \left[\sum_{i=1}^n s_i \ln(n) - \sum_{i=1}^n s_i \ln \frac{1}{s_i} \right]
 \end{aligned}$$

단, $s_i \neq 0$

으로 정의된다. 모든 家口 또는 個人이 동일한 소득을 가졌다면 $1/s_i = n$ 이 되어 T指數는 0이 되는 반면에 모든 소득이 한 개인이나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면 기호 이후의 값이 $\ln(n)$ 이 되어 T指數는 1이 된다. 따라서 T指數는 K指數와 마찬가지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所得分配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所得分配를 나타내게 된다.

第 3 部

消費稅 高稅率品目の 問題點 및 稅務行政에 미치는 影響

I. 序 論

우리나라는 寶石類와 毛皮類 등과 같이 高價의 사치품이면서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품목들에 대하여 消費抑制 및 一般消費課稅의 逆進性을 보완하려는 목적¹⁾에서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는 高率의 소비세 적용이 탈세를 통한 막대한 전매차익의 유인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품목들이 공식적인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어 다량의 密輸入과 陰性的인 市場의 擴大, 脫稅의 성행 등 국민경제의 資源配分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들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실효성 측면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일례로 거의 전량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寶石類의 경우에는 현재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어 일정률의 關稅²⁾만 지불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정식 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諸稅負擔이 지나치게 높아 국내외 시장에서의 커다란 價格隔差³⁾를 야기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다량의 密輸入 및 脫稅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貴金屬 寶石加工產業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석류나 모피류 이외에도 酒類의 경우를 보면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酒類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酒種間에 酒稅率 隔差가 상당

1) 崔洸(1987 b) 참조.

2) 일례로 공업용을 제외한 일반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세율은 5%이다.

3) 가격격차는 관세(5%)와 특별소비세(60%), 교육세(특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10%)의 총명목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소비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히 크고 酒稅體系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며, 둘째는 주류의 유통 판매과정에서 빚어지는 陰性的인 市場의 발생과 不公正去來 행위, 脫稅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로 구분된다. 前者는 현행의 주세체계가 해로운 음료에 대한 消費抑制와 財政收入의 確保, 高級酒에 대한 重課稅를 통한 稅負擔의 逆進性 緩和 등의 기능을 수행⁴⁾하는 데는 미흡하므로 酒稅의 體系를 변화된 社會·經濟의 현실에 맞게 再編해야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後者는 유통 판매과정에서 규정된 시장의 범위 밖으로 판매영역을 불법적으로 확대하거나, 市場支配力을 강화하기 위한 出庫制限 등과 같은 불법적인 不公正去來 행위, 거래의 위장을 통한 脫稅, 地下經濟의 형성과 확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상적인 행위와 관련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위주이다. 이 외에도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세무행정과 행정을 담당할 책임자들의 恣意的인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不文化된 규정의 明文化 문제 등도 행정상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모두 資源配分の 歪曲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로서 특정한 부당이익이나 비형평적인 세부담, 하부의 流通構造의 상부 流通構造에 대한 隸屬化 등과 같은 酒類市場構造의 기형적인 발달, 地下經濟의 擴大, 脫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인 前者보다는 後者의 문제에 特化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일부의 품목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통관행상 각종의 不法·脫法的인 행위가 만연하는 것, 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행정규제는 國民經濟의 資源配分の 歪曲이라는 문제 이외에도 租稅收入의 減少와 稅務行政의 非效率化, 稅負擔의 衡平性 惡化, 技術開發의 遲延, 관련 산업의 競爭力 弱化 및 産業의 衰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4) 成明宰(1993 b) 참조.

제들은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資源配分 및 租稅行政 전반의 效率化, 正常化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上記와 같은 문제들의 심각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먼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또한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높은 名目稅率(nominal tax rate)을 고집함에 따라 實效性을 상실하기보다는 과감하게 稅率引下 또는 기타의 改善方案을 강구하여 조세수입의 정상화를 꾀하는 동시에 資源配分의 效率性 提高 방안과 관련산업의 육성방안도 모색해 본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정상적인 유통의 확대를 통한 稅收增大 및 稅務行政의 正常化, 음성적인 流通構造의 陽性化, 관련산업의 競爭力 強化 및 產業內의 衡平性 增進, 왜곡된 資源配分의 正常化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현행의 消費稅 體系下에서 諸稅를 망라하여 높은 名目消費稅率을 가진 高價의 消費財와 그리고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消費財, 즉 문제가 되고 있는 寶石類와 貴金屬類, 毛皮類, 酒類 등을 중심으로 품목별로 關稅,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등, 관련 소비세의 總租稅負擔率 및 構造, 副作用, 外國의 事例, 市場의 與件, 行政的인 規制, 不公正去來 행위, 陰性的인 市場, 脫稅 등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품목별 財貨 자체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해 본다. 제1절에서는 陰性的인 市場의 生成原因 및 同 市場의 非正常的인 발달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2절에서는 관련 소비세의 課稅現況을 살펴본다. 제3절~제5절에서는 주요 해당품목의 특성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본다. 제Ⅲ장에서는 高消費稅率이 적용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문제를 낳고 있는 上記의 품목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

안을 모색해 보고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寶石類와 貴金屬類, 제2절에서는 毛皮類, 제3절에서는 酒類에 대한 改善方案과 期待效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계속 지향해야 할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II. 高消費稅率 適用에 따른 高價 消費財 關聯 現況 및 問題點

消費稅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다. 一般消費稅는 원칙적으로 모든 財貨와 用役을 課稅對象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품목에 대하여 면세 또는 영세율 등으로 비과세하고 있으며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일반소비세는 품목에 따라 相異한 세율로 차등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세율로 무차별하게 과세할 수도 있다. 만약 外部效果(externalities)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일세율의 일반소비세가 복수세율의 소비세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왜냐하면 單一稅率의 一般消費稅體系下에서는 일반소비세의 부과가 財貨나 用役의 相對價格을 변화시키지 않아 資源配分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이다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소비세의 일종으로 단일세율구조를 가진 부가가치세(세율 10%)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에서 外部效果〔外部經濟(external economy) 또는 外部不經濟(external diseconomy)〕가 존재한다면 競爭市場의 均衡에서는 社會的 費用(social cost)과 社會的 便益(social benefit)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5)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소비세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소득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일반소비세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소득이 노동공급시간 또는 여가의 선택에 따라 변화한다면 일반소비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전후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없으나 여가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반소비세의 과세는 필연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와 여가간의 상대가격을 왜곡시켜 재화(또는 용역)와 여가간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과 한계변화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 서로 불일치하게 된다.

다. 이러한 경우에는 自律競爭體制보다는 특정한 복합세율구조를 가진 소비세 또는 보조금 등의 수단이 더 우월하다. 왜냐하면 상대가 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社會的 費用과 社會的 便益을 일치시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個別消費稅는 일반소비세와는 달리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稅收確保 및 所得再分配나 消費抑制, 資源配分의 效率性 提高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特別消費稅와 酒稅, 電話稅, 印紙稅, 證券去來稅, 담배消費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個別消費稅의 도입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다. 崔洸(1987 a)은 개별소비세의 도입목적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단일세율의 일반소비세가 부과될 때에 초래될 수 있는 社會的 厚生損失이나 資源配分의 歪曲을 최소화하고 둘째, 일반소비세의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하며 셋째, 外部效果를 초래하는 재화나 용역에 차등과세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한다. 넷째, ‘受益者負擔 原則’에 따라 특정 공공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섯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재화나 용역의 消費抑制 또는 이를 생산하는 產業의 成長을 억제하고 여섯째, 國家財政收入의 確保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으나 대부분 大同小異하다.

그러나 個別消費稅의 세율체계가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음성적인 지하경제의 확대 등 脫稅 또는 節稅의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면 현행의 개별소비세의 세율체계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지나친 高率의 課稅로 인하여 과생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地下經濟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해당 개별 품목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陰性的인 市場의 生成原因 및 社會·經濟에 미치는 影響

本節에서는 음성적인 시장, 즉 地下經濟에 대한 정의 및 생성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지하경제가 경제 일반에 끼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지하경제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정의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이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廣義의 定義 : 총체적 경제활동의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경제활동⁶⁾
- ② 狹義의 定義 : 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일체의 소득 및 경제활동

그러면 지하경제의 생성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시장에서의 커다란 價格隔差도 지하경제 형성의 한 원인이 된다. 즉, 커다란 가격차이는 전매차익 및 탈세를 목적으로 밀수입·밀거래를 유발시킨다. 둘째, 過重한 稅負擔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시장에서의 세전 가격격차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세부담이 높으면 국내의 시장에서의 稅後 價格隔差는 매우 커지게 되어 地下經濟를 조장하게 된다. 즉, 각종 租稅의 稅負擔(또는 稅率)이 지나치게 높으면 稅前所得(또는 이익)에 비해 稅後所得(또는 이익)이 매우 크게 감소하므로 脫稅를 통한 막대한 불법적인 전매차익을 위한 소득탈루의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脫稅나 節稅를 위해 소득을 過少報告 또는 不報告하게 됨에 따라 과중한 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 매입 등의 課稅資料를 숨겨 음성적인 시장이 형성된다. 셋째, 政府의 規制 및 統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

6) 이와 같이 지하경제를 정의하면 마약밀매, 매춘, 강도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의 물물교환과 같은 합법적인 경제활동도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인이 된다. 예를 들면 마약밀매나 도박, 절도, 강탈, 매춘, 무기밀매 등은 법으로 그 활동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활동은 자연히 地下經濟를 형성하게 된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에서 각종 노동법에 규정된 제도에 따라 지하경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最低賃金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낮은 임금으로의 취업이 금지되고 또는 법으로 금지된 미성년자의 취업이나 외국인에 대한 노동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수준 이하로의 취업이나 불법적인 취업 등의 형태로 노동시장이 暗市場化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격통제나 배급, 수입쿼터,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통제, 가격상한제 등에 따른 지상경제에서의 공급부족, 이자율 또는 신용통제 등에 따른 사채시장의 형성, 외환통제에 따른 外換暗市場의 발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각종의 福祉惠澤을 누리기 위해 虛偽報告하거나 또는 資料를 偽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섯째, 物價上昇도 한 원인이 된다. 물가상승이 매우 심하여 自國通貨의 실질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정부가 외환을 통제하게 되면 外換暗市場이 발생한다. 또한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累進稅制下에서 빚어지는 실질세부담의 급속한 증가, 즉 「인플레이션稅」(inflation tax)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경제가 발달한다. 이것은 둘째의 원인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여섯째, 각종 認許可制度에 따라 합법적인 생산이 특정인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 지하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소유권 보장에 따른 불법복사물의 범람이나 특허된 기술에 대한 무단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官僚의 腐敗에 따른 뇌물수수, 그리고 여덟째로는 無知에 의한 지하경제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지하경제의 생성에 관한 일반적인 원인 이외에 우리나라 특유의 원인으로는 정부시책의 朝令暮改와 군사적인 불안에 따른 해외로의 자금도피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사채 및 고리대금융, 다음 節에서 살펴볼 귀금속의 밀수입 및 밀거래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

규모의 地下經濟資金이 출처를 감추고 지하경제에서의 지속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非實名 預金口座에 예치되고 있다.

그러면 지하경제가 경제에 끼치는 부작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지하경제의 존재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켜 納稅者의 自發的인 協助을 沮害한다. 둘째, 稅負擔의 公平性 문제와 所得分配의 歪曲을 초래한다. 稅收의 확보를 위해 세원포착이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해 稅負擔이 增大됨에 따라 稅負擔의 衡平性 문제를 초래하고 所得分配을 惡化시켜 부정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보다 잘 살게 되어 일반인의 勤勞意慾을 沮害한다. 또한 탈세를 조장하여 조세의 所得再分配 機能을 약화시키고 衡平性의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지하경제의 성장은 자원을 지상경제에서 지하경제로 이전시킴에 따라 地上經濟의 過重한 租稅負擔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節稅 및 脫稅를 조장하여 課稅對象을 減少시키므로 財政收入의 減少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세율의 인상을 유도하여 지하경제의 규모를 팽창시켜 지하경제로의 추가적인 자원이동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넷째, 資源의 非效率的인 配分과 生産性的의 低下를 가져 온다. 지하경제의 성장은 公共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지나치게 증대시켜 그 부문에 대한 정부의 초과지출을 유발하며 이에 대한 세금부담을 증대시킨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지상경제로부터 생산성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지하경제로의 자원이동은 국민경제 전체의 生産性的을 下落시킨다. 물론 지하경제에서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문에 자원이 배분되기 쉬우므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며 공경제의 비정상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다섯째, 社會的 非理를 조장한다. 지하경제로부터

의 소득은 대부분 비실명의 금융저축이나 골동품, 부동산 등의 형태로 보유되어 정상적인 소득의 운용을 저해한다. 지상경제의 소득의 일부분도 잠재적인 지하경제로의 자금편입을 위해 이러한 형태로 자산이 보유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섯째, 統計의 正確性 低下와 經濟政策의 攪亂을 가져 온다. 지하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상경제에서의 경제활동에 기초한 통계는 지상, 지하경제를 종합한 전체 국민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무시한 채,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서만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때에 따라서는 현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상경제에서는 통계수치상 失業率이 높지만 지하경제에서 대규모의 실업인력이 취업하여 실질적으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지상경제를 기초로 한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地上經濟에서의 雇用增大를 위하여 정부가 膨脹政策을 실시하더라도 지상경제의 失業率 저하에는 효과가 별로 없으며 오히려 과도한 膨脹政策에 따른 物價上昇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곱째, 지하경제로의 資金流入은 지상경제에서의 자금공급을 감소시켜 利子率 上昇의 한 원인이 된다. 또한 지하경제의 과도한 자금수요는 지상경제에서의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 즉 자금부족을 초래한다. 여덟째, 사채시장의 성장이나 지하경제에서의 자금운용은 中央銀行의 通貨管理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사채시장의 발달이 반드시 유해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상경제의 초과자금수요를 사채시장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자금압박을 해소시켜 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⁷⁾.

2. 消費稅 高稅率 品目の 課稅 現況

현행의 소비세제하에서 매우 높은 소비세율이 적용되거나 기타의

7) 崔洸(1987a)과 金寬洙(1992) 참조.

원인으로 인하여 稅務行政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품목들로는 寶石類와 貴金屬類, 毛皮類, 酒類 등을 들 수 있다. <表 3-1>에서는 特別消費稅의 주요 품목별 課稅 現況을 보여 주며 <表 3-2>에서는 주요 해당품목에 대하여 최근 수년간의 輸入實績을, 그리고 <表 3-3>에서는 최근 수년간의 연도별·주류별 주세부과 현황을 보여 준다.

<表 3-1> 主要 品目別 特別消費稅 課稅現況(1991年)

(單位 : %, 百萬원)

	稅 率	課稅額		稅 率	課稅額
第 1 種		24,251	嗜好飲料	10	11,436
寶 石	60	178	滋養強壯品	10	27,994
貴金屬	20	500	其 他		578
家 具	10	602	第 4 種		957,438
골프用品	60	1,199	揮發油	100	779,895
特殊化粧品	10	17,761	(有鉛)	(130)	
其 他		4,011	(無鉛)	(109)	
第 2 種		1,055,121	輕 油	10(9)	155,680
空氣調節器	25	125,597	LPG	10(8)	16,986
冷藏庫	20,15	94,050	其 他		4,877
電氣洗濯機	20	13,802	課稅場所와 遊興場所 計		46,738
칼라 TV	20,15	83,489	課稅場所		18,849
乘用車	10,15,25	504,297	-골프장	3,000원	12,228
피아노	20,10	19,772	-터키탕	100	384
其 他		214,114	-其 他	10	6,237
第 3 種		152,504	課稅遊興場所		27,889
커피, 코코아	20	35,554			
설탕	10	28,193			
清涼飲料	10	48,749	合 計		2,236,052

資料 : 國稅廳, 「國稅行政概要」, 1992. 10.

〈表 3-2〉 寶石類, 貴金屬類, 毛皮類의 輸入實績

(單位: 千달러)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眞 珠	20	59	43	449	83	249	1,451	2,902
다이아몬드 ¹⁾				4,262	5,708	8,797	10,035	9,520
貴石·半貴石	6,184	10,496	10,415	7,218	9,838	27,423	15,975	12,281
金	16,226	65,260	91,210	98,240	115,981	258,432	273,684	362,500
身邊裝飾用品 과 그 部分品	336	482	1,559	1,433	2,062	4,500	7,478	6,862
貴金屬 製品	633	1,528	834	2,499	3,764	5,028	7,682	6,350
毛 皮 ²⁾	36,957	31,151	39,624	33,659	64,468	85,406	129,838	126,738
毛皮製品 ²⁾	988	1,402	1,239	1,639	6,515	8,554	9,342	4,677

註: 품목분류는 1987년까지는 CCCN 방식을, 1988년부터는 HS 기준을 따른 것임.

1) 1987년까지 다이아몬드는 귀석·반귀석에 포함되어 분류되었음.

2) 토끼털은 제외함.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 年度.

〈表 3-3〉 年度別·酒類別 酒稅賦課 現況

(單位：%, 百萬元)

	稅 率	1987	1989	1991
濁 酒	5(10)	11,583	11,483	9,783 [0.8]
藥 酒	30(60)	315	314	357 [0.03]
麥 酒	150	391,101	581,241	799,175 [68.5]
清 酒	70(120)	20,433	26,823	37,280 [3.2]
果實酒	30(25)	3,967	4,881	4,776 [0.4]
銘藥酒	70(100)	3,281	4,689	1,956 [0.2]
其他 釀造酒	-(110)	-	-	5
蒸溜式燒酒	50(35)	-	-	538 [0.05]
稀釋式燒酒	35	95,726	111,243	128,136 [11.0]
高粱酒	80(110)	2,970	4,687	2,625 [0.2]
酒 精	57,000원/kℓ (49,875원/kℓ)	7,108	6,894	7,623 [0.7]
위스키	150(200)	46,075	69,978	68,432 [5.9]
브랜디	150	514	1,057	716 [0.06]
其他蒸溜酒	-(80)	-	-	-
合成清酒	-(65)	-	-	-
人蔘酒	-(50)	482	601	283 [0.02]
其他再製酒	-(100)	13,809	21,059	15,448 [1.3]
一般蒸溜酒	80	-	-	9,259 [0.8]
리큐어	50	-	-	2,672 [0.2]
其他酒類	50~80	-	-	220 [0.02]
隨時分		129	444	-99
小計(國內分)		597,493	845,394	1,089,185 [93.4]
輸入分		21,170	55,323	77,075 [6.6]
合 計		618,663	900,717	1,166,260 [100]

- 註：1. () 안은 종전세율이며, [] 안은 주류별 구성비임.
 2. 주세부과액이 1991년에 前年 對比 14.2% 증가한 주된 요인은 酒稅 稅收의 68.5%를 점유하고 있는 맥주의 출고량과 주세액이 각각 21.1%, 22.0% 증가한 것에 기인함.
 3. 1991년 7월 1일 이후 출고분은 개정된 주류 구분에 의함.
 資料：國稅廳, 「國稅行政概要」, 1992. 10.

3. 寶石類(貴金屬類 包含)

가. 總名目消費稅負擔率 및 問題點의 要約

寶石과 寶石製品에 대한 物品稅 또는 特別消費稅의 稅率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10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1988년에는 기본세율은 100%로 변함이 없었으나 彈力稅率이 70%로 적용되었고, 198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6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그 동안 名目稅率은 상당히 하향조정되었으나 그 절대수준은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表 3-4〉 참조).

金, 銀 등 貴金屬類의 경우에는 소비세율이 20~30% 수준으로서 寶石類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198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表 3-5〉 참조). 1986년까지는 寶石類와 貴金屬類의 課稅對象은 공히 그 가격수준에 상관없이 무차별하게 과세되었으나 1987년부터는 課稅最低限 制度를 도입하여 1987~88년 기간에는 15만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課稅最低限 5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은 비과세되고 있다.

〈表 3-4〉 寶石 및 寶石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變遷

(單位: %, 萬원)

	1970~1974	1975~1976	1977~1987	1988	1989~現在
稅 率	100(80)	200(160)	100	70*	60
課稅最低限	-	-	15(1987~)	15	50

註: 1. 特別消費稅가 導入되기 前인 1977년 이전에는 物品稅의 稅率임.

2. *은 彈力稅率임.

3. () 안은 진주·별갑에 대한 稅率임.

資料: 財務部 消費稅制課.

〈表 3-5〉 貴金屬 및 貴金屬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變遷

(單位：%, 萬원)

	1977.7.1~1986	1987	1988	1989~현재
稅 率	30	30	21*	20
課稅最低限	-	15	15	50

註：1. 特別消費稅가 導入되기 前인 1977년 이전에는 物品稅의 稅率임.

2. *은 彈力稅率임.

資料：財務部 消費稅制課.

현재 寶石類와 貴金屬類에 대한 각종 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에 대해서는 關稅(CIF 가격의 5%⁸⁾)와 特別消費稅[(CIF + 관세) 가격의 60%], 教育稅(특별소비세액의 30%), 附加價値稅[(CIF 관세 + 특별소비세) 가격의 10%]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總租稅負擔率은 103.7%⁹⁾에 이른다. 金과 銀을 포함한 貴金屬에는 관세(4%), 특별소비세(20%), 교육세(특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총조세부담률은 수입품의 경우에는 43.52%(課稅最低限 이하는 14.4%), 국내 생산품의 경우에는 38.6%(課稅最低限 이하는 10%)에 이르고 있다. 매우 높은 소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寶石類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消費稅率은 寶石類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貴金屬類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보석류와 유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8) 원석이나 선별하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1%이다.
- 9) 1990년 12월 31일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에는 총조세부담률이 106.2%였으며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특별소비세액의 30%만큼 부과되던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되었고 수입가격의 2.5%만큼 부과되던 방위세는 폐지되었다. 다이아몬드의 수입가격을 100이라고 하면 관세와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5, 63, 18, 9, 16.8로 총간접세액은 103.7이다. 단,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國內의 높은 消費稅率은 國內外 市場에서의 커다란 價格隔
 差를 유발하여 密輸의 유인을 증대시키며, 이에 따른 다량의 밀수는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실제의 시장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으로 추정됨¹⁰⁾
 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시장을 통해 거래되어 과세되고 있는 규모
 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둘째, 이에 따라 각종 소비세의 명목세율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석류에 대한 조세수입 실적은 매우 저조하
 여 實效負擔率이 극히 낮으며 이에 따라 稅負擔의 衡平性 問題와 所
 得再分配 問題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문제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脫稅者들의 추가적인 財政
 負擔이 없는 상태에서 公共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財政支出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므로 기존 납세자들의 세부담단 가중
 시키고 있으며 또한 관세 및 내국세 행정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넷째, 장기적인 과급효
 과로서 關聯 產業의 衰退를 들 수 있다. 寶石類는 대부분이 음성적
 으로 유입·거래됨에 따라 밀거래되는 제품의 실질 諸稅負擔은 脫稅
 에 의해 거의 零에 가까운 반면, 이리공단에 조성되어 있는 貴金屬
 寶石加工業體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정상
 적인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되므로 諸稅負擔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밀거래되는 제품에 비해 價格競爭力을 완전히 상실하여
 國內에서의 市場基盤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國內의 보석가공산업
 은 유통구조 및 자원배분의 왜곡에 의하여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판
 로 확보, 즉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國內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
 이 되고 있다. 보석류 등에 대한 소비세 부담이 거의 없는 외국(〈表
 3-6〉 참조), 즉 태국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거의
 없어 양성화된 유통구조를 바탕으로 國內의 시장기반이 튼튼하게 성

10) 시장규모의 추정에 대해서는 本節의 나項 참조.

장하여 高附加價值産業인 보석가공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表 3-6〉 主要國別 寶石(貴金屬 包含) 關聯 稅率

(單位：%)

韓國	日本	臺灣 ¹⁾	獨逸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美 國 ²⁾
95.8	3	5	14	17.5	22	38	8 以下(州販賣稅)
	(VAT)	(VAT)	(VAT)	(VAT)	(VAT)	(VAT)	10(聯邦消費稅)

註：1) 관세와 소비세의 합계의 경우 세율은 寶石 12.5%, 貴金屬은 7.5% 임.

2) 聯邦消費稅는 10,0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함.

資料：財務部 消費稅制課, 商工部 生活用品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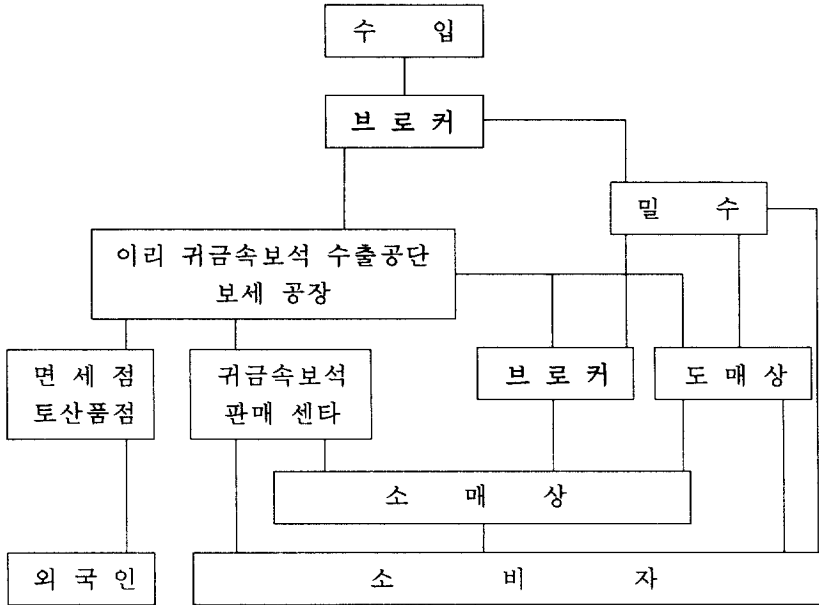
나. 貴金屬 寶石의 流通市場

[圖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貴金屬 寶石의 공급은 輸入과 密輸에 의존하며, 「브로커」(broker)를 통해 직접 또는 도·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연결되기도 하며, 혹은 裡里에 구성되어 있는 貴金屬·寶石 加工團地를 거쳐 거기에서 생산된 일부의 제품이 도·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세계 다이아몬드 小賣市場의 規模는 1988년 현재 약 4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그 중 日本과 美國이 각각 30%와 29%를 차지하여 1, 2위를 하고 있다(〈表 3-7〉 참조). 세계 다이아몬드 原石市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드 비어」(De Beers)社의 중앙판매기구(Central Selling Organization)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小賣市場의 規模는 美國과 日本¹¹⁾,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제4위이며 캐나다, 대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 다른 資料源에 따르면 日本과 美國 사이에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어 일본이 1위 미국이 2위라고도 한다(『보석과 여성』, 1992. 1 참조).

[圖 3-1] 貴金屬·寶石 流通構造



資料：圓光大學校 附設 産業經營研究所, 『裡里 寶石都市 育成에 관한 研究』, 1990.9.

〈表 3-8〉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다이아몬드 原石價/小賣價의 비율이 세계 평균은 18%이며 美國과 日本, 유럽에서의 비율도 14~20% 수준임에 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50% 정도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 요인으로는 供給側面과 동남아시아 국가 내의 市場狀況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供給側面에서는 세계 다이아몬드 原石의 대부분을 供給하고 있는 「드 비어」社가 회원들(sight holders)에게만 原石을 공급하므로, 상당수의 국가가 비회원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여타의 회원들로부터 二次적으로 原石을 구입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의 原石價格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가 내의 市場狀況으로는 해당 국가들의 都賣市場의 發達이 매우 微弱하고 다수의 영세한 小賣業者들간의

過當競爭으로 인하여 소매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3-7>과 <表 3-8>에서 동일 年度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다이아몬드 小賣市場의 규모는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한 가정이 相異하여 資料에 따라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表 3-7> 世界 다이아몬드 小賣市場 規模(推定)

(單位：億달러,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美 國	65 (30)	77 (34)	88 (37)	97 (35)	113 (33)	116 (29)
유 럽	31 (14)	30 (13)	31 (13)	45 (16)	59 (18)	71 (18)
東 南 아 시 아	n.a	n.a	20 (9)	22 (8)	27 (7)	32 (8)
日 本	43 (20)	45 (19)	45 (19)	71 (26)	90 (27)	118 (30)
其 他	77 (36)	77 (34)	51 (22)	41 (15)	51 (15)	57 (15)
合 計	216 (100)	229 (100)	235 (100)	276 (100)	340 (100)	394 (100)

註：() 안은 구성비임

原資料：Diamond Promotion Service, *Jewellery News Asia*, October 1990.

資料：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産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表 3-8〉 東南아시아의 다이아몬드 市場規模(1988年 現在)

	數量(천개)	平均單價 (달러)	小賣價 (百萬달러)	原石價 (百萬달러)	原石價/小賣價 (%)
韓 國	334	1,239	416	216	51
臺 灣	280	1,193	334	174	51
泰 國	289	543	157	97	60
홍 룡	179	905	162	90	54
필 리 핀	343	280	96	40	40
말레이시아	167	385	157	29	43
인도네시아	467	338	157	82	51
싱 가 포 르	81	691	56	31	54
東南아시아	2,138	674	1,442	759	51

原資料：C.S.O., De Beers社

資料：圓光大學校 附設 産業經營研究所, 『裡里 寶石都市 育成에 관한 研究』, 1990. 9.

국내에서 추정한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소매시장의 규모는 대략 수천억원에서 1조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崔洸(1987 b)에 따르면 貴金屬寶石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5,000억원에 이르며 그 중에서 결혼예물로 거래되는 규모는 약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表 3-9〉 참조). 吳敬勝(1992)이 1986년 商工部 内部資料를 인용한 추정치에서는 다이아몬드의 시장규모가 약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崔洸의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崔洸과 商工部の 市場規模 추정치는 1980년대 중반의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므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귀금속·보석의 유통량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시장규모의 현재가치는 거의 1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귀금속보석 소매상들이 주장하는 시장규모 추정액 1조 2천억원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表 3-9〉 貴金屬寶石의 年間 結婚禮物 去來 推定額(1987年)

(單位：%, 件)

生活水準		比率	結婚數	禮物交換金額 (천원)	總金額 (백만원)
生活級	等級				
上流級	上	1	4,000	10,000	40,000
	中	2	8,000	7,000	56,000
	下	2	8,000	5,000	40,000
中流級	上	10	40,000	2,000	80,000
	中	20	80,000	1,000	80,000
	下	20	80,000	500	40,000
下流級	上	10	40,000	100	4,000
	中	15	60,000	70	4,200
	下	15	60,000	50	3,000
極貧救護對象者			5	20,000	0
總計			100	400,000	347,200

註：1. 全國 結婚數：年間 40만쌍(韓國人口保健研究院)

2. 貴金屬寶石의 年間結婚禮物 去來額의 總去來額 對比：70%

3. 貴金屬寶石의 年間 總去來額：약 5,000億원

原資料：裡里 貴金屬 加工工團.

資料：崔洸,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研究叢書』
42, 韓國經濟研究院, 1987. 4

다. 貴金屬·寶石의 流通實態와 課稅現況

다이아몬드의 정식 輸入規模는 최근에 年間 약 1,000만달러, 즉 약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表 3-2〉, 〈表 3-10〉 참조). 이것은 실제로 추정되는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서 이는 정식 수입규모를 초과하는 국내시장에서의 부족분이 密輸로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는 다이아몬드와 귀석 등은 그 자체가 高價이면서 동시에 總租稅負擔率이 103.7%나 되어 국내외의

〈表 3-10〉 다이아몬드의 輸入 現況

(單位：千달러, %)

		美 國	벨기에	日 本	印 度	獨 逸	其 他	合 計
1991	工業用裸石	2,018	35	1,047			183	3,283
	裝飾用裸石	394	1,746		1,634	483	1,242	5,499
	裝飾用原石		931				322	1,253
	構 成 比	24	27	10	16	5	18	100
1992 (1~6)	工業用裸石	1,044	20	418			66	1,548
	裝飾用裸石	109	639		732	73	1,031	2,584
	裝飾用原石		439					439
	構 成 比	25	24	9	16	2	24	100

註：수출국가 중 기탁국가로는 영국, 홍콩, 태국 등임
 資料：關稅廳,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소매가격의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脫稅를 통한 국내시장에서의 막대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량이 密輸入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특히 부피가 매우 작고 휴대가 간편하여 밀수입의 적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밀수입이 더욱 용이하다. 공업용 인조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다이아몬드는 수입이 완전자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세부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表 3-10〉에서, 수입된 다이아몬드의 용도를 보면 工業用이 약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裝飾用으로 쓰이고 있다. 1991년을 기준으로 보면 裝飾用 다이아몬드의 수입액은 韓貨로 환산하여 약 50~60억원 정도이므로 特別消費稅의 세율 60%를 적용하면 30~40억원 정도의 稅收入이 기대되나 실제의 세수입은 寶石類 전체로도 3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비과세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즉 대부분이 課稅最低限 이하의 물품 또는 輸出을 위한 원자재로 수입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에 대한

세율이 60%인 특별소비세의 징수실적은 고작 1억 8천만원(1991년) 정도이다¹²⁾. 이것을 課稅最低限 50만원 이상의 다이아몬드에 관세를 포함한 정상적인 수입규모로 환산해 보면 약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¹³⁾. 국내의 전체 다이아몬드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서 다이아몬드 유통량의 대부분이 脫稅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表 3-11〉 寶石, 貴金屬의 特別消費稅 課稅實績

(單位: 億원)

	1988	1989	1990	1991
寶石	1.8	2	4	3
貴金屬	43	7	6	5

註: 1989년 1월 1일부터 課稅最低限이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됨.

資料: 財務部 消費稅制課.

다이아몬드의 품질은 4C, 즉 重量(carat), 鍊磨(cut), 色相(color), 透明度(clarity)로 결정된다. 0.3「캐럿」(carat)에 색상이 G, 투명도가 VVSI인 다이아몬드의 국제소매가격은 73만 4천원인 반면에 국내소매가격은 86만원으로 가격차이가 12만 6천원이다¹⁴⁾. 이론상 제세와 유통이윤을 포함한 국내소매가격은 최소한 수입가격의 2배 이상¹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소매가격차이가 이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는 첫째, 밀수된 다이아몬드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실질적인 諸稅負擔이 零에 가깝기 때

12) 寶石類 전체로도 약 3억원에 불과하다.

13)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별소비세 課稅最低限은 50만원으로서 50만원 이하의 다이아몬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課稅最低限 이하의 다이아몬드까지 포함한 실제의 다이아몬드 총수입액은 3억원보다는 크다.

14) 關稅廳,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참조.

15) 왜냐하면 총조세부담률이 103.7%이기 때문이다.

문이며 둘째, 국내로 반입된 다이아몬드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품질을 높게 감정함으로써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補填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⁶⁾. 밀수된 다이아몬드 중에서 적발 압수되어 1992년 11월 13일에 공매된 다이아몬드의 품질을 비교하면 대부분이 중간(0.3「캐럿」) 이하의 중량으로서 색상도 H를 중간으로 볼 때 대부분이 그 이하인 中品 또는 下品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表 3-12〉 참조).

〈表 3-12〉 公賣된 다이아몬드(裸石 및 0.3「캐럿」以上 製品 包含)의 品質(1992年)

(單位：個)

重量/色相	E	F	G	H	I	J	K	L	M	계
3.8「캐럿」								1		1
2.02「캐럿」以下		1			1		2			4
1.2「캐럿」以下	1	6	8	12	5	3	2	1	1	39
0.5~0.7「캐럿」		3	5	7	11	11	3	1		41
0.3~0.5「캐럿」		21	17	17	53	22	4	3		137
0.1~0.3「캐럿」										1,157
0.1「캐럿」以下										37,860

註：색상은 E에 가까울수록 高品質이고 M에 가까울수록 低品質임.
 資料：關稅廳,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1986~91년 사이에 金의 生産과 需要(內需)는 각각 약 4.5배와 2.5배로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상당히 늘어 1991년에는 국내 金 生産량의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수출되었다. 내수규모에 對比한 국내의 金 生産은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국내생산의 비중은 상당히 높지만 생산된 金의 상당량이 수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반대로 상당량의 金이 수입되고 있다(〈表 3-13〉 참조).

16) 關稅廳,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참조.

〈表 3-13〉 國內 金 需給 現況

(單位 : kg)

	需 要				供 給			
	內需	輸出	在庫	計	生産	輸入	移越	計
1986	9,015	1,414	150	10,578	4,648	5,859	35	10,578
1987	11,451	3,395	467	15,313	7,600	7,563	150	15,313
1988	12,126	6,551	308	18,985	11,121	7,397	467	18,985
1989	16,857	11,282	196	28,335	14,270	13,757	308	28,335
1990	26,849	14,374	140	41,363	20,760	20,407	196	41,363
1991	26,385	16,866	126	43,377	20,809	22,428	140	43,377

資料 : 動力資源部.

이와 같이 生産量이 內需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金 수출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요인으로는 첫째, 貴金屬 寶石商들이 課稅의 根據資料가 남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金에 대한 매입을 꺼리고 脫稅 또는 節稅를 위하여 無資料去來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金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두번째의 요인으로는 밀수입된 金의 가격이 매우 낮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金이 諸稅負擔 後에 국내에서 價格競爭力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의 根據는 정상적으로 輸入되는 金의 제세포함 판매(도매)가격은 이론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 14.4%¹⁷⁾와 이윤 0.5%를 합하여 1g 당 10,400원 (1992년 기준) 정도에 형성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表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도매시장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수준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諸稅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密輸入된 金이 무자료 거래방식 등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

17) 과세최저한인 50만원 이하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세비용부담률이다.

로 시사해 주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¹⁸⁾.

이상과 같이 密輸入된 金이 유통되면 다이아몬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수입된 金の 유통은 사라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市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金도 일부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밀수입된 金の 불법적인 유통을 은폐하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金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3-14〉 金の 月別 國內外 價格比較(1992年)

(單位：千圓)

	1	2	3	4	5	6	7	8	9	10	11	평균
國際價格	10.0	9.6	9.6	9.4	9.5	9.7	9.9	9.6	9.8	9.5	9.4	9.6
都賣價格	10.7	10.6	10.4	10.2	9.9	9.9	10.0	9.8	10.1	9.8	9.5	10.1
公賣價格	10.0	10.1	9.8	9.1	9.7	10.4	10.7	10.6	10.6	9.8	9.5	10.0

註：수입된 金の 정상적인 국내 판매시세는 1g당 10,400원(1992년)이 되어야 함.

資料：關稅廳,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라. 稅務行政에 미치는 副作用

불법적인 유통에 의한 脫稅는 국가재정수입에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密輸入의 단속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가 증대되어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밀거래됨에 따라 세수입이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前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陰性的인 市場規模의 推定額이 5,000억~1조 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중 課稅最低限 50만원 이상의 보석 유통량(액)을 최소한으로 가정하여 전체의 40% 정도만을 차지한다고

18) 關稅廳,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참조.

하더라도 현행 60%의 特別消費稅 稅率하에서는 약 1,200억~3,000 억원 정도의 特別消費稅 收入과 2,000억~5,000억원 정도의 相關 總消費稅收가 징수되어야 하지만 세수입 실적이 거의 全無한 것은 거의 全量이 탈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여기에 附加價值稅 課稅特例者들의 所得稅 脫漏額까지 포함시킨다면 總脫漏稅額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물론 정상적인 제세부담에 따른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므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규모는 上記의 추정치보다 약간 작을 것이지만 脫稅의 規模는 여전히 최소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表 3-15〉 密輸規模(1991年)

(單位：百萬원, %)

	金 額	構 成 比
金 塊	5,295	7.3
寶 石 類	2,275	3.1
裝 身 用 品 類	539	0.7
機 械 器 具 類	8,571	11.9
家 電 製 品 類	7,748	10.7
時 計 類	589	0.8
農 產 物	6,048	8.4
其 他	41,460	57.1
合 計	72,525	100.0

註：구성비는 해당금액/전체금액.

原資料：警察廳 內部資料, 1992. 8.

資料：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產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둘째, 제도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세무행정 에 미치는 악영향이 극심하다. 警察廳의 자료에 따르면 199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密輸

總額 725억원 중에서 貴金屬·寶石(금괴·보석류 등)과 관련된 규모는 약 76억원으로 전체의 10.4%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寶石類의 경우 부피가 작고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전정보 없이는 밀수의 적발이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의 貴金屬·寶石의 密輸比重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貴金屬·寶石市場의 規模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볼 때 적발된 密輸總額의 금액 비중은 시장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表 3-15〉 참조).

적발된 밀수의 내역을 유입국가별로 살펴보면 金은 홍콩과 일본, 다이아몬드는 일본과 대만으로부터의 밀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金錢的인 賣買差益의 利點뿐만 아니라 地理的으로 가깝다는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3-16〉 密輸檢舉 實績

(單位：百萬원, %)

密輸入國		홍콩	日本	臺灣	美國	其他	計
品目							
金	1991	919	2,314	25	405	1,632	5,295
	1992(1~10)	5,397	2,471	227	0	2,624	10,719
	計	6,316	4,785	252	405	4,256	16,014
	構成比	39	30	2	3	26	100
다이아몬드	1991	18	0	0	3	727	748
	1992(1~10)	3	131	295	2	97	528
	計	21	131	295	5	824	1,276
	構成比	2	10	23	0	65	100

資料：關稅廳, 「金·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密輸入이 적발되어 公賣되는 寶石類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이아몬드가 금액(전체의 35%) 및 수량에서 모두 압도적이다. 그 다음

으로는 금액면에서 사파이어와 루비, 진주의 순이며 수량으로는 진주와 루비, 사파이어의 순으로 시중에서 인기있는 보석과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金の 경우에는 최근 위탁공매되는 규모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密輸摘發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表 3-17〉 및 〈表 3-18〉 참조).

〈表 3-17〉 寶石類 公賣現況(1992年 11月 13日)

(單位：個, 百萬元, %)

	다이아몬드 및 同製品	루 비	사파이어	眞 珠	에머랄드	翡 翠	其 他	計
數 量	39,250	2,630	1,189	30,518	538	1,060	10,635	85,820
金 額	495	212	213	206	107	33	135	1,401
(構成比)	(35)	(15)	(15)	(15)	(8)	(2)	(10)	(100)

資料：關稅廳,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表 3-18〉 金の 報勳福社公團 委託販賣現況

(單位：g)

	引受量	販賣量	販賣金額 (백만원)	價格(원)/g
1989	241,210.60	182,398.80	1,705	9,348
1990	462,828.99	377,601.49	3,731	9,881
1991	282,923.63	263,381.66	2,576	9,780
1992(1~11)	553,336.83	559,480.39	5,449	9,739
合 計	1,540,300.05	1,382,862.34	13,461	9,743

資料：關稅廳,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마. 國內 貴金屬·寶石産業의 現況

本節에서는 높은 消費稅率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諸稅負擔을 지면서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한 國內의 貴金屬·寶石加工産業이 價格競爭力을 상실하여 쇠퇴위기에 있는 原因과 現況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貴金屬·寶石의 수출은 6,500만달러(1988년)로 전세계의 總貴金屬·寶石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비중 1.96%(1990년)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다(〈表 3-19〉 참조). 물론 수출에 대한 단순비교만으로 우리나라의 貴金屬·寶石加工産業이 쇠퇴한 原因을 현실성을 무시한 제도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나 貴金屬·寶石加工産業이 附加價值가 높고 熟練勞動集約的이며 無公害 脫에너지産業으로서 기술수준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消費稅率의 적용이 결과적으로 貴金屬·寶石加工産業의 價格競爭力의 상실을 초래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큰 異見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소비세율이 貴金屬·寶石加工産業의 쇠퇴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데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하에 있는 대만에서는 귀금속·보석가공산업이 튼튼한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수출산업으로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만에서는 여기에 매우

〈表 3-19〉 韓國의 寶石, 貴金屬 輸出比重

(單位: 百萬달러)

	世 界(A)	韓 國(B)	比重(B/A)(%)
全體 輸出(1990)	3,310,500	65,016	1.96
貴金屬, 寶石 輸出 (1988)	30,519	65	0.21

資料: 商工部 生活用品課.

낮은 消費稅率¹⁹⁾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산업의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대만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상당히 크다.

裡里工業團地 內에 조성되어 있는 貴金屬·寶石團地에는 89개의 귀금속·보석가공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투자규모는 2,680만달러로 업체당 평균투자규모는 약 30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裡里工業團地 內의 여타 지역, 즉 自由地域과 一般工業團地에는 각각 26개와 4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투자규모는 각각 4,902만달러와 2억 4,368만달러로 업체당 평균투자규모도 약 190만달러와 540만달러에 달해 귀금속·보석가공산업의 업체당 평균투자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물론 業種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또한 귀금속·보석가공산업은 他產業에 비해 고도의 숙련노동이 필요한 반면에 자본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귀금속·보석가공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 분명하다(〈表 3-20〉 참조).

〈表 3-20〉 裡里 貴金屬團地의 投資現況(1991年)

(單位：千달러)

韓 國		日 本		美 國		計		
單 獨	合 作	單 獨	合 作	單 獨	合 作	單 獨	合 作	總 計
24,808	595	107	155	641	491	25,556	1,246	26,802
(79)	(6)	(1)	(1)	(3)	(5)	(83)	(6)	(89)

註：1. () 안은 기업체 수.

2. 裡里工業團地 內의 自由地域은 총 26개 업체에 총투자규모가 4,902만 달러이고 一般工業團地은 총 45개 업체에 총투자규모가 2억 4,368만 달러임.

資料：商工部, 「裡里工業團地現況」, 1991. 12. 31.

19) 부가가치세 5%가 적용된다. 관세를 포함하더라도 寶石은 12.5%, 貴金屬은 7.5% 정도에 불과하다.

裡里工業團地 内の 貴金屬團地에 입주해 있는 89개(1991년 현재) 가공업체들의 수출은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절대액은 6,200만달러(1991년)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991년의 업체당 수출액도 약 75만달러(가동중인 83개 업체 기준)에 불과하다. 輸入規模는 대체로 수출의 크기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雇傭은 1981년과 1987년을 두 정점으로 다소간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貴金屬·寶石加工產業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表 3-21〉 참조).

〈表 3-21〉 裡里 貴金屬團地 入住業體 現況

(單位：個, 千달러, 名)

	企 業 體 數				輸出	輸入	雇傭
	入住	稼動	建設中	休業			
1976	43	24	21	0	727	598	610
1977	44	38	6	0	4,398	3,036	588
1978	49	44	4	1	14,605	3,502	1,199
1979	54	47	4	3	16,330	9,421	1,438
1980	53	48	0	5	19,531	10,368	1,790
1981	52	50	1	1	27,784	11,474	3,741
1982	59	50	1	8	19,294	6,261	2,387
1983	55	51	1	3	18,805	5,270	2,279
1984	55	52	3	0	21,084	7,098	2,446
1985	57	56	1	0	23,721	10,380	2,742
1986	62	60	2	0	39,229	16,014	3,335
1987	67	64	3	0	55,051	16,397	3,755
1988	76	73	3	0	58,796	15,080	3,441
1989	78	76	2	0	51,708	15,473	3,033
1990	81	78	3	0	61,634	26,678	2,488
1991	89	83	3	3	62,107	25,773	2,085

資料：商工部, 「裡里工業團地現況」, 1991. 12. 31.

輸出品을 종류별로 보면 金과 半貴石, 合成石 등의 寶石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白金의 경우에는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表 3-22〉 참조). 다이아몬드의 수출은 1980년대 중반에 급증 추세를 보였으나 1987년에 급격한 수출의 감소를 시현한 이래 90~100만달러 수준을 전후하여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表 3-23〉 참조). 金の 輸出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表 3-24〉 참조).

〈表 3-22〉 裡里 貴金屬·寶石加工團地의 主要 品目別·年度別 輸出實績
(單位：千달러)

	貴金屬類				寶石類			計
	金	銀	白金	其他	貴石	半貴石	合成石	
1980	629	49	7,273	439	420	3,223	7,052	19,531
1981	677	1,593	3,253	1,213	2,264	4,831	13,953	27,784
1982	1,664	1,348	1,664	402	282	2,014	11,920	19,294
1983	1,647	1,572	1,509	1,032	946	2,298	9,878	18,882
1984	1,630	1,458	979	922	793	3,114	12,151	21,047
1985	2,204	1,298	540	980	1,996	4,982	11,729	23,727
1986	6,332	1,495	612	3,767	3,316	8,529	16,261	40,312
1987	11,586	4,416	574	6,795	847	12,217	18,616	55,051
1988	12,936	5,080	797	11,482	221	13,930	14,356	58,796
1989	14,525	6,049	592	7,662	682	12,179	10,016	51,708
1990	19,900	5,495	1,052	6,614	7,117	11,880	9,577	61,635
1991	22,062	8,198	1,122	5,297	3,989	9,574	11,864	62,106
1992	12,648	3,766	378	2,564	977	4,044	5,179	29,556
(1~6)								

原資料：裡里 貴金屬 寶石 加工業協同組合.

資料：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産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表 3-23〉 年度別 다이아몬드 輸出推移(通關基準)

(單位: 萬달리,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金額	17	51	62	111	166	58	92	93	90	112
對前年 增加率	-90.6	196.2	21.3	78.9	49.0	-64.9	58.8	1.3	-3.4	21.6

原資料: 韓國貿易協會, 1992.

資料: 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產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表 3-24〉 年度別 金 輸出推移(通關基準)

(單位: 10萬달리,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金額	34	81	30	1	120	342	644	932	1,785	1,977
增加率	-39.7	139.4	-63.5	-94.1	120	184.2	88.1	44.8	91.5	10.8

原資料: 韓國貿易協會, 1992.

資料: 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產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최근 貴金屬·寶石加工業者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수출경쟁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들로는 天然 및 合成寶石, 그리고 身邊裝飾用品 등 대부분의 경우에서 태국과 홍콩, 대만 등을 꼽고 있다(〈表 3-25〉~〈表 3-27〉 참조). 이들 국가에서는 대체로 寶石類에 낮은 消費稅率이 적용되고 있으며 內需市場基盤이 단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도의 숙련된 노동을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高附加價値를 창출하는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제도 및 유통관행 등을 개선하여 貴金屬·寶石加工產業을 輸出產業으로서 육성할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輸出競爭相對國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3-25〉 生産業體가 指目하는 天然寶石業界의 主要 輸出競爭國

(單位：個, %)

	泰 國	홍 콩	臺 灣	日 本	其 他	計
業體數	24	10	9	3	8	54
構成比	(44.4)	(18.5)	(16.7)	(5.6)	(14.8)	(100)

原資料：韓國貿易協會, 『전북지역의 보석귀금속 수출산업의 현황과 육성 방안』, 설문조사자료, 1990. 9.

資料：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産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表 3-26〉 生産業體가 指目하는 合成寶石業界의 主要 輸出競爭國

(單位：個, %)

	泰 國	홍 콩	臺 灣	日 本	其 他	計
業體數	16	8	5	2	11	42
構成比	(38.1)	(19.0)	(11.9)	(4.8)	(26.2)	(100)

原資料：韓國貿易協會, 『전북지역의 보석귀금속 수출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설문조사자료, 1990. 9.

資料：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産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表 3-27〉 生産業體가 指目하는 身邊裝飾用品의 主要 輸出競爭國

(單位：個, %)

	泰 國	홍 콩	臺 灣	日 本	其 他	計
業體數	19	15	14	8	8	64
構成比	(29.7)	(23.4)	(21.9)	(21.5)	(12.5)	(100)

原資料：韓國貿易協會, 『전북지역의 보석귀금속 수출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설문조사자료, 1990. 9.

資料：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産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바. 主要 外國의 貴金屬·寶石加工産業의 現況²⁰⁾

金の 主要 加工國家로는 이탈리아가 연간 생산량 430톤(1991년)으로 세계 최대를 자랑하며 그 뒤를 이어 日本과 印度, 美國 등이 모두 100톤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들로서 金 加工産業이 매우 활발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金 加工量이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면서 연간 약 73톤(1991년)을 생산하여 아시아에서 日本, 대만, 홍콩, 泰國 등의 뒤를 이어 세계 11위 수준에 있다(〈表 3-28〉 참조).

〈表 3-28〉 主要 國家別 金 加工生産

(單位: 톤)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이탈리아	216.6	246.9	232.8	273.7	359.2	395.9	430.2
日本	131.1	342.5	175.3	173.6	199.3	204.8	264.9
印度	174.3	146.8	159.9	187.9	222.3	241.6	238.7
美國	182.0	246.9	259.5	228.9	230.2	215.9	202.1
臺灣	31.6	24.8	49.8	87.9	107.2	97.6	119.4
사우디아라비아·예멘	51.6	47.5	49.0	62.0	70.0	70.0	112.5
터키	76.2	96.7	96.0	82.8	107.9	133.2	104.5
홍콩	20.0	21.0	28.0	75.0	65.9	52.0	81.6
獨逸	57.7	54.8	57.2	65.3	69.8	77.5	80.4
泰國	14.0	11.0	20.5	41.0	95.0	85.5	77.1
韓國	10.5	17.0	44.2	78.8	84.1	67.2	72.6
全世界*	1,542.9	1,758.5	1,661.2	1,922.8	2,310.7	2,439.6	2,543.2

註: *는 舊蘇聯과 中國은 제외함.

資料: Gold Fields Mineral Services, *Gold*, 1992.

20) 本節은 吳敬勝(1992)과 Gold Fields Mineral Services의 *Gold誌*(1992)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벨기에는 加工産業보다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貴石의 去來中心地로서 수년전부터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하여 총수출입 규모가 연간 약 150억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²¹⁾.

〈表 3-29〉 벨기에의 다이아몬드 輸出入 現況

(單位：百萬달러)

	輸 出		輸 入	
	1990	1991	1990	1991
裸 石	3,574	3,696	2,915	2,966
原 石	4,071	3,984	4,750	4,491
工 業 用	111	93	115	112
合 計	7,756	7,773	7,780	7,569

原資料：『귀금속과 보석』, 1992. 4.

資料：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産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表 3-30〉 홍콩의 寶石輸出 및 再加工輸出 現況

(單位：萬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輸 出	6,564	79,858	84,320	88,217	75,538
再 加 工 輸 出	948	13,807	17,974	23,474	28,743

原資料：Jewellery Review, 1992. 1.

資料：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産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홍콩은 1989년 이탈리아와 스위스에 이어 세계 제3위의 보석제품 수출국으로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92년 현재에는 스위스를 제치고 제2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홍콩은 자체의 고급인력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지의 高價品 需要를 충족하고 있으며

21) 吳敬勝(1992) pp. 68~70 참조.

동시에 인접한 中國의 經濟特區에서 中國의 低賃金 勞動力을 이용하여 低價品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등록상표제를 도입하여 品質金商標(Quality Gold Mark) 체제를 실시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 획득 및 판매실적 증대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품질향상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홍콩 생산성협회로부터 기술협력과 교육을 받고 있다²²⁾.

前述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日本, 美國, 獨逸, 캐나다 등과 함께 주요 金 輸入國 중의 하나이며 세계 최대의 金 加工國으로서 年間 金製品 생산량이 약 430톤에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의 貴金屬產業은 기원전부터 내려온 산업으로서 축적된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 능력, 보수와 혁신의 조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알레소와 비젠사, 바렌사, 밀라노 등이 주요 4대 金加工製品 생산지역으로 유명하다. 이탈리아의 加工產業은 주로 生産單價를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어 왔으나 물가상승과 EC 통합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낮은 생산단가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EC 域內的 低賃金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 현지생산, 그리고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²³⁾.

泰國은 寶石 및 寶石製品의 수출이 매우 활발하다. 1990년 태국의 總裸石 輸出實績은 5억 3,881만달러이고 품목별로는 루비가 2억 4,210만달러, 사파이어가 1억 9,107만달러로서 약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파즈의 수출도 활기를 보이면서 급증세를 보여 2,998만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²⁴⁾.

스리랑카는 고급 다이아몬드 원석의 생산지로서 매우 유명한데 가공기술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原石 자체를 輸出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⁵⁾.

22) 吳敬勝(1992) pp. 73~75 참조.

23) 吳敬勝(1992) pp. 75~77 참조.

24) 吳敬勝(1992) pp. 78~79 참조.

25) 吳敬勝(1992) pp. 78~79 참조.

이스라엘의 寶石加工業은 매우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서 1986년의 경우 總輸出 61억달러 가운데 貴金屬·寶石 관련 제품의 수출이 16억 6,000만달러를 차지하여 전체의 약 25%를 점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輸入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總 95억달러의 수입가운데 약 22억달러가 貴金屬·寶石 관련 제품으로서 貴金屬·寶石 관련 산업이 국가의 基幹產業이 되고 있다²⁶⁾.

4. 毛皮類

가. 消費稅率

毛皮類에 대해서는 1977년 7월 1일 特別消費稅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物品稅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特別消費稅가 부과되고 있으며 適用稅率은 寶石類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다. 1970년대 중반에는 한 때 세율이 200%로 매우 높았으며 특별소비세가 도입된 1977년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100%로 인하되었으며 다시 1989년부터는 60%로 인하되었고 1988년에는 課稅最低限이 15만원으로 설정되어 製造場 搬出價格이 그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非課稅되었으며 1989년에는 그 한도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表 3-31〉 毛皮類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變遷

(單位: %, 만원)

	1970~1974	1975~1977.7.1	1977.7.1~1987	1988	1989~현재
稅 率	100	200	100	70*	60
課稅最低限	-	-	-	15	100

註: 1. 特別消費稅가 導入되기 前인 1977년 이전에는 物品稅의 稅率임.

2. *는 彈力稅率임.

資料: 財務部 消費稅制課.

26) 吳敬勝(1992) pp. 71~73 참조.

〈表 3-32〉 毛皮類에 대한 關稅率 및 輸入價格(100원 基準)
對比 稅負擔額

(單位 : %, 원)

	1989			1990~1991			1992		
	(1)	(2)	(3)	(1)	(2)	(3)	(1)	(2)	(3)
關稅率	10	20	15	10	16	13	9	13	11
總租稅負擔率	113.40	132.80	123.10	113.40	125.04	119.22	111.46	119.22	115.34
	(21)	(32)	(21.5)	(21)	(27.6)	(24.3)	(19.9)	(24.3)	(22.1)
關稅率	10.00	20.00	15.00	10.00	16.00	13.00	9.00	13.00	11.00
特別消費稅額	66.00	72.00	69.00	66.00	69.60	67.80	65.40	67.80	66.60
教育稅額	19.80	21.60	20.70	19.80	20.88	20.34	19.62	20.34	19.98
附加價值稅額	17.60	19.20	18.40	17.60	18.56	18.08	17.44	18.08	17.76

	1993			1994 以後		
	(1)	(2)	(3)	(1)	(2)	(3)
關稅率	7	10	9	5	8	8
總租稅負擔率	107.58	113.40	111.46	103.70	109.52	109.52
	(17.7)	(21)	(19.9)	(15.5)	(18.8)	(18.8)
關稅額	7.00	10.00	9.00	5.00	8.00	8.00
特別消費稅額	64.20	66.00	65.40	63.00	64.80	64.80
教育稅額	19.26	19.80	19.62	18.90	19.44	19.44
附加價值稅額	17.12	17.60	17.44	16.80	17.28	17.28

註 : 1. (1)은 유연처리 또는 完成加工한 毛皮임.

2. (2)는 毛皮衣類 및 附屬品, 其他製品임.

3. (3)은 人造毛皮와 그 製品임.

4. () 안은 課稅最低限 이하의 物품에 대한 總租稅負擔率임.

資料 : 關稅廳, 「關稅行政」, 1992. 10.

法制處 韓國法制研究院, 『大韓民國 現行法令集』, 24 關稅, 담배·人蔘, 1992. 7.

三逸會計法人, 『三逸叢書 國稅便覽』, 1992. 3.

財務部, 「關稅政策의 理解」, 1992. 10.

현재 輸入 毛皮類에는 關稅, 特別消費稅, 敎育稅, 附加價值稅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總租稅負擔率은 특별소비세율 60%를 포함하여 100% 이상의 高率이며, 課稅最低限은 1개 또는 1조 기준으로 100만원으로서 製造場 搬出價格이 그 이하인 물품과, 兔毛皮와 그 제품, 生毛皮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表 3-32〉 참조).

日本에서는 毛皮製品에 대하여 1989년 物品稅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小賣段階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25,000엔 이상의 물품에 한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물품은 非課稅하였으며 物品稅가 폐지된 이후에는 세율 3%의 附加價值稅의 일종인 消費稅를 부과하고 있다. 關稅率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더 높았으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어 현재에는 오히려 日本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33〉 韓國과 日本의 毛皮類 關稅率 比較

(單位 : %)

		1980~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韓國	원 피	30	10				5		4		3	
	가 공 피	40	30			25	20	10		9	7	5
	완 제 품	50		45		40	35	30	20	16	13	10
日本	원 피	밍크	20	16.9	16.3(15)		15(7)					
		여우	5	4.1	3.9(3.7)		3.7	3.5				
	가 공 피	15										
	완 제 품	20										

註 : 1. () 안은 협정세율 또는 잠정세율임.

2. 일본은 밍크에 대하여 1985년 4월 1일부터 7%의 잠정세율을 시행 중임.

資料 : 韓國毛皮家畜協會.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1989년 3월까지 부과되었던 日本의 物品稅의 課稅標準은 小賣價格인 반면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 課稅標準은

製造場 搬出價格이므로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의 세율 60%를 日本의 小賣價格에 대한 15%의 세율²⁷⁾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결론짓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小賣價格이 製造場 搬出價格의 2~3배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小賣價格에 대한 세율 15%를 製造場 搬出價格에 對比한 세율로 환산해 보면 약 30~45%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목세율에서는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의 세율 60%는 日本의 物品稅의 세율 15%의 4배에 이르지만 實效稅率(effective tax rate)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별로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物品稅가 폐지된 1989년 이후에는 총부가가치의 3%만큼의 消費稅가 적용되면서 일본과의 세율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美國에서는 毛皮에 대하여 聯邦消費稅²⁸⁾(Federal Excise Tax)와 州別 販賣稅(sales tax)가 부과되고 있다. 毛皮에 대한 聯邦消費稅는 奢侈稅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첫 小賣段階(first retail sale)에서의 價格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 10%를 과세하고 있으며 州別 販賣稅는 최종 小賣段階에서 판매가격의 高低에 관계없이 0~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輸入 毛皮에 대해서는 밍크의 경우 원피는 비과세되며 毛皮는 2.1%, 衣類(完製品)에는 5.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²⁹⁾.

나. 毛皮市場의 現況

毛皮와 그 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徵收實績은 세율이 100%였던 1988년까지는 100억원 이상으로 비교적 큰 규모였으며 세율이 60%로 인하되고 課稅最低限이 100만원으로 인상된 1989년부터는

27) 財務部, 『主要國의 消費稅制基本統計』, 1992. 9 참조.

28)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研究所,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1993. 4, pp. 137~138 참조.

29) 韓國毛皮家畜協會의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세수입 규모가 대폭 감소하여 30~40억원 수준에 머물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1992년에는 14억 8,500만원으로 다시 대폭 감소하였다³⁰⁾. 1989년부터 세수입 규모가 대폭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시장상황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세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됨에 따라 算術的으로 약 40% 정도의 稅收入 감소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³¹⁾. 둘째, 課稅最低限의 限度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과세대상의 상당 부분이 非課稅로 전환된 것을 들 수 있다. 세율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課稅最低限 制度가 15만원 수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에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1988년의 세수입이 1987년 對比 26% 정도의 감소를 시현하였던 것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表 3-34〉 毛皮와 同 製品의 特別消費稅 課稅實績

(單位：百萬元,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徵 收 額	16,795	12,458	3,081	4,226	3,176	1,485
前年對比增減率	-	-25.3	-75.3	37.2	-24.8	-53.2

資料：財務部 消費稅制課.

우리나라 毛皮의 小賣市場規模는 최소한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市場規模는 特別消費稅의 徵收實績을 기준으로 逆算하여 추정할 수 있다. 즉, 毛皮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課稅最低限이 도입되지 않았던 1987년 이전의 경우에는 特別消費稅의 課稅標準, 즉 製造場 搬出價格에 特別消費稅와 防衛稅, 附加價値稅를 합산한 稅後 出庫價格에 유통단계에서의 總附加價値를 더해 주면 小賣市場의 규모를 추

30) 신고된 과세대상의 물품의 數도 1991년의 6,352매에서 1992년에는 961매로 대폭 감소하였다(財務部 消費稅制課 資料).

31) 세율의 인하가 소비자 가격의 인하로 연결된다면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세수규모는 40%까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할 수 있다.

毛皮의 小賣市場規模(예 : 1987년)

$$\begin{aligned}
 &= \{ \text{製造場 搬出價格} + \text{特別消費稅}(100\%) + \text{防衛稅(특별소비세액의} 30\%) + \text{附加價値稅}[(\text{반출가격} + \text{특별소비세} + \text{방위세)의 } 10\%]) \} \times (1 + \text{流通段階의 總附加價値率}) \\
 &= (168\text{억원} + 168\text{억원} + 50\text{억원} + 39\text{억원}) \times (1 + 2\sim 3) \\
 &= 850 \sim 1,275\text{억원}
 \end{aligned}$$

毛皮의 特別消費稅 課稅標準은 製造場 搬出價格이므로 모피의 稅 包含 出庫價格의 연간규모는 課稅最低限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198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25억원 수준이며, 소매가격이 세포함 출고가격의 2~3배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할 때 약 850~1,300억원 정도의 小賣市場規模를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兎毛皮 제품 등 特別消費稅가 非課稅되는 물품의 市場과 상당한 규모로 추측되는 暗市場을 고려한다면 전체의 毛皮市場規模는 최소한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시장규모의 추정방법은, 課稅最低限이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毛皮 및 그 製品의 상당 부분이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된 1989년 이후부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부정확한 추정결과를 낳게 되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80년대 말에는 過消費 풍조의 만연과 더불어, 서울의 인하와 課稅最低限 인상에 의한 소비자 가격의 인하에 따라 課稅最低限 이하의 중·저급 모피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1990년의 세수실적이 前年 對比 30% 정도 증가하는 데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1980년대 말의 毛皮市場規模는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과소비 풍조가 후퇴하면서 모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며 1991년도의 세수실적도 전년도에 비해 약 25% 감소한 것을 볼 때 최근의 시

장규모는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상당히 큰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表 3-35〉 毛皮 關聯 製造業의 生産 및 出荷, 附加價値 動向
(單位：億원)

		毛皮 및 毛皮製品 製造業 (分類符號 3232) ¹⁾	毛皮製品 製造業 (分類符號 32323) ²⁾
1986	生 産	221	63
	出 荷	216	64
	附加價値	83	32
1987	生 産	687	41
	出 荷	680	41
	附加價値	221	17
1988	生 産	337	49
	出 荷	327	49
	附加價値	132	18
1989	生 産	854	300
	出 荷	845	296
	附加價値	280	68
1990	生 産	854	158
	出 荷	848	148
	附加價値	341	60
1991	生 産	3,184	2,274
	出 荷	3,109	2,251
	附加價値	1,446	1,107

註：1991년부터는 새로운 분류방식을 따름.

1) 1991년도는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임(분류부호 182).

2) 1991년도는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임(분류부호 18202).

資料：統計廳(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 年度.

特別消費稅의 徵收額이 아닌 毛皮産業의 出荷額을 기초로 하여도

毛皮市場의 規模를 추정할 수 있다.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에 의하면 1990년의 경우 모피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출하액이 약 850억원 정도로서 출하액으로부터 對外輸出(〈表 3-36〉, 〈表 3-37〉 참조)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출하액에 각종 소비세와 유통마진을 포함한 毛皮의 內需小賣市場의 規模는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어 특별소비세 징수액으로부터 역산하여 추정된 시장규모와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表 3-35〉 참조).

최근에 모피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生産과 出荷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1986년의 生産과 出荷가 약 220억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약 850억원 수준에 이르러 거의 4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附加價値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모피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은 1988년까지는 그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으나 1989년에 1회에 걸쳐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다시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表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도 毛皮産業의 生産, 出荷, 附加價値額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毛皮産業이 실질적으로 대폭 성장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분류방식에 의한 통계자료의 수집·집계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毛皮의 輸出入 現況은 다음과 같다. 밍크와 여우의 毛皮는 대체로 輸出보다는 輸入規模가 더 큰 양상을 보여 왔다. 밍크의 경우에는 원피와 모피의 수출이 모두 매우 미미한 반면 輸入規模는 1987년과 1988년을 두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완제품은 1980년 중반 이후까지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1988년에는 약 1억 달러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그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2년에는 前年 對比 82.9%의 대폭적인 감소를 시현하였다(〈表 3-36〉 참조).

여우의 原皮나 毛皮, 그리고 完製品의 수출입 거래규모는 밍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 原皮는 1988년부터 輸入이 급증하였으

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輸出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毛皮의 輸入規模는 크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輸出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완제품의 경우에는 수입보다 수출의 규모가 월등히 크며 1988년과 1989년 두 해 동안 수출이 매우 활발하여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졌으나 그 외에는 1991년의 1,127만달러를 제외하고는 절대규모가 매우 작다(〈表 3-37〉 참조).

밍크와 여우의 수출입 통계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1980년대 말 毛皮製品의 원재료인 原皮와 毛皮의 輸入規模와 完製品의 輸出規模가 모두 급증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수출, 수입 모두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입보다는 수출의 鈍化勢가 두드러지고, 이러한 수출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주요 毛皮輸出市場인 美國에 대한 수출이 매우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밍크와 여우는 공히 1988년에 輸出超過를 보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오면서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原皮에 대한 輸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 毛皮 및 毛皮製品의 수출이 매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原皮에 대한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되는 原皮가 모피제품 수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內需用 毛皮製品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表 3-36〉 밍크의 年度別 輸出入 現況

(單位：톤, 千枚, 千달러)

		1985		1986		1987		1988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原 皮	重 量	116	—	222	0	291	0	303	—
	數 量	1,214	—	1,754	0	2,167	1	2,515	—
	金 額	44,709	—	55,579	6	102,455	61	95,607	—
毛 皮	重 量	66	0	45	6	44	6	35	6
	數 量	476	3	497	57	498	70	376	66
	金 額	18,155	141	15,664	2,545	18,942	2,361	13,357	2,713
完製品	重 量	1	31	—	64	0	111	2	201
	數 量	—	19	—	36	—	56	6	195
	金 額	86	12,883	—	27,827	254	57,695	723	97,401
合 計	金 額	62,950	13,024	71,243	30,377	121,652	60,117	109,689	100,114

		1989		1990		1991		1992(1~11月)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原 皮	重 量	306	0	318	0	242	0	151	0
	數 量	2,579	1	2,613	2	1,945	1	1,168	0
	金 額	72,708	30	56,402	41	57,729	35	32,077	6
毛 皮	重 量	36	5	22	7	15	7	2	1
	數 量	345	40	225	71	226	126	24	8
	金 額	10,930	1,109	6,082	1,811	4,455	1,235	580	182
完製品	重 量	7	189	6	124	5	63	4	7
	數 量	4	137	4	99	3	34	2	5
	金 額	3,500	73,806	2,859	51,389	2,046	20,433	1,263	3,503
合 計	金 額	87,138	74,946	65,343	53,240	64,229	21,704	33,921	3,691

註：HS 번호 - 원피(건피임) 4301.10.0000

모피 4302.11.0000

완제품(의류) 4303.10.1100

資料：關稅廳 韓國關稅研究所, 「輸出入統計」, 各號.

〈表 3-37〉 여우의 年度別 輸出入 現況

(單位：톤, 千枚, 千달러)

		1985		1986		1987		1988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原 皮	重 量	-	-	-	-	-	-	434	0
	數 量	-	-	-	-	-	-	740	1
	金 額	-	-	-	-	-	-	50,707	10
毛 皮	重 量	79	0	56	3	21	4	21	7
	數 量	165	0	93	9	61	6	64	17
	金 額	11,122	15	5,081	686	3,433	426	3,192	1,309
完製品	重 量	-	-	-	-	-	-	3	348
	數 量	-	-	-	-	-	-	1	162
	金 額	-	-	-	-	-	-	403	54,228
合 計	金 額	11,122	15	5,081	686	3,433	426	54,300	55,548

		1989		1990		1991		1992(1~11월)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原 皮	重 量	465	-	379	-	306	-	184	0
	數 量	835	-	642	-	620	-	320	0
	金 額	44,523	-	28,926	-	28,064	-	20,672	4
毛 皮	重 量	14	6	15	3	13	2	4	1
	數 量	37	12	46	15	31	12	14	18
	金 額	2,455	590	1,983	414	1,229	129	427	226
完製品	重 量	2	181	2	2	1	59	-	16
	數 量	2	113	5	5	12	40	3	14
	金 額	286	34,353	375	375	178	11,277	66	3,355
合 計	金 額	47,264	34,943	31,284	31,284	29,470	11,407	21,165	3,585

註：HS 번호 - 원피(건피임) 4301.60.0000

모피 4302.19.3000

완제품(의류) 4303.10.1600

資料：關稅廳 韓國關稅研究所, 「輸出入統計」, 各號.

우리나라의 對美 毛皮製品輸出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表 3-38〉 참조). 특히 1991년과 1992년의 輸出減少趨勢가 매우 두드러지는데, 밍크의 경우에는 美國의 밍크 毛皮輸入市場의 감소폭인 20~30%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52%와 94%의 감소를 나타내어 전체 對美 毛皮輸出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주도하였다(〈表 3-39〉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우리의 毛皮輸出 競爭相對國인 홍콩의 경우에는 수출의 감소폭이 미국 모피시장의 감소폭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도 수출의 감소폭이 매우 작은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쟁력이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美 毛皮輸出이 美國 毛皮市場의 減少速度보다 더 급속히 감소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된 對美 毛皮輸出品이 대외적인 여건의 호조 속에서 低賃金 勞動을 바탕으로 한 中·低級品이 대부분으로서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함에 따라 계속적인 賃金引上으로 인한 低賃金 勞動이 고갈되면서 中·

〈表 3-38〉 美國의 毛皮衣類 國家別 輸入現況 I

(單位：千달러, %)

	1984	1989	1990		1991		1992	
	金額	金額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韓 國	111,500	88,204	50,382	-42.9	22,689	-55.0	5,241	-76.9
홍 콩	5,900	79,188	57,132	-27.9	41,735	-26.9	36,262	-13.1
캐 나 다	74,000	66,853	35,846	-46.4	35,598	-0.7	31,648	-11.1
그 리 스	2,000	39,835	32,555	-18.3	18,677	-42.6	18,998	1.7
其 他	143,000	69,933	51,906	-25.8	32,275	-37.8	29,630	-8.2
計	336,400	344,013	227,821	-33.8	150,974	-33.7	121,779	-19.3

原資料：美國 商務部.

資料：Sandy Parker Reports, 1992. 3. 23호와 1993. 3. 15호.

Japanese Monthly Fur Journal for Fur Specialists, 제175호, 1991. 4.

〈表 3-39〉 美國의 毛皮衣類 國家別 輸入現況 II

(單位：千달러, %)

	밍 크			其 他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韓 國	29,180	14,005(-52)	849 (-94)	21,202	8,684(-59)	4,392(-49)
홍 콩	49,973	38,570(-23)	32,502 (-16)	7,159	3,165(-56)	3,760 (19)
中 國	8,791	11,314 (29)	9,109 (-19)	2,922	2,753 (-6)	2,646 (-4)
아르헨티나	24	24 (0)	0(-100)	3,943	2,169(-45)	1,709(-21)
캐 나 다	10,262	12,246 (19)	10,996 (-10)	25,584	23,352 (-9)	20,652(-12)
핀 란 드	286	391 (37)	475 (21)	1,644	1,149(-30)	1,606 (40)
獨 逸	1,114	597(-46)	862 (44)	1,438	523(-64)	273(-48)
그 리 스	27,282	15,468(-43)	16,311 (5)	5,273	3,209(-39)	2,687(-16)
이탈리아	3,575	2,396(-33)	2,982 (24)	5,901	2,473(-58)	2,202(-11)
其 他	7,641	3,271(-57)	2,350 (-28)	14,627	5,215(-64)	5,416 (4)
합 계	138,128	98,282(-29)	76,436 (-22)	89,693	52,692(-41)	45,343(-14)

註：()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原資料：美國 商務部.

資料：Sandy Parker Reports, 1992. 3. 23호와 1993. 3. 15호.

低級 毛皮製品의 供給源이 풍부한 低賃金 勞動力을 이용하는 中國 등과 같은 後發開途國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移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對外 競爭力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毛皮製品市場이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規模가 1980년대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毛皮家畜의 사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毛皮製品의 生産과 輸出, 內需가 호조를 보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까지는 밍크와 여우의 사육두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되고 課稅最低限이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毛皮製品의 內需市場이 급속히 성장한 1989년과 1990년을 정점으로 든든한 모피 생산기반이 구축되는 듯 하였으나, 모피제품 내수시장의 축소 및 세계 모피시장의

축소에 따른 수출부진과 더불어 飼育頭數가 다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毛皮家畜 飼育頭數의 감소와 함께 밍크와 여우의 飼育農家の 수도 1988년의 368가구를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1992년 현재에는 87가구에 불과한 반면 가구당 飼育頭數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²⁾.

〈表 3-40〉 밍크와 여우의 飼育頭數

(單位: 頭)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밍크	8,730	15,345	30,699	43,055	46,820	46,261	26,014	17,998
여우	4,530	7,818	11,894	17,214	19,204	19,428	8,519	3,912
計	13,260	23,163	42,593	60,269	66,024	65,689	34,533	21,910

資料: 韓國毛皮家畜協會.

다. 毛皮 關聯 問題點

현행 特別消費稅의 課稅現況(〈表 3-34〉 참조)을 보면 市場規模가 1,000억원 이상으로 매우 큰 규모이며 名目稅率 또한 60%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徵收實績이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92년도에는 약 15억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이처럼 세수실적이 매우 낮은 것은 課稅最低限이 100만원으로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즉, 본래 課稅物品으로 귀속되어 있었던 상당 부분의 제품이 課稅最低限 신설에 따라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課稅最低限은 생산자들의 생산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課稅最低限 이하의 제품생산에 종전보다 더욱 주력하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과세물품이 課稅最低限 이하의 가격에서 거래되는 기현상을 연출함으로써 特別消費稅가 非課稅되고 있기 때문이다. 毛皮製品은 소수의 신변잡화용 毛皮製品을 제외하고

32) 韓國毛皮家畜協會 內部資料에 근거한 것이다.

는 대부분이 고가의 고급품으로 거래되는 奢侈性 消費財이다. 그러나 特別消費稅의 稅收入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은 特別消費稅가 본래의 機能 중의 하나인 奢侈性 消費財에 대한 消費抑制의 效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또한 課稅最低限 부근에서 급격한 稅負擔의 隔差를 야기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생산행태를 변화시켜 資源配分을 비효율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즉, 현행의 매우 높은 課稅最低限은 과세최저한 부근에서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높아져 세부담 여부에 따라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생산자들이 품질개선에 의한 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수요의 확대 노력보다는 모피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課稅最低限 이하에서 억제·유지하기 위한 원가절감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품질개선을 통한 製品의 高級化보다는 원가가 적게 소요되는 低級品을 양산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결국 대외 수출에도 영향을 주어 최근에 毛皮 및 毛皮製品의 輸出이 급속히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表 3-41〉 世界 밍크 生産量

(單位：千枚)

	1987~88	1988~89	1989~90	1990~91	1991~92	1992~93	1993~94
덴 마 크			13,500	10,000	11,000	11,000	7,000
스칸디나비아			6,010	3,000	1,000	1,000	1,000
美國(캐나다)			5,800	3,500	3,500	4,000	3,000
네덜란드			1,900	1,500	2,000	2,000	1,500
其他 유럽			2,000	1,200	1,000	2,000	1,000
蘇 聯			4,000	4,500	4,500	3,000	2,000
其 他			3,250	3,460	2,170	2,340	1,500
計	35,440	41,980	36,460	27,160	25,170	25,340	17,000

註：1993~94년의 생산량은 예상치임.

資料：韓國毛皮家畜協會.

더욱이 최근 毛皮製品의 主要 消費市場인 선진국, 특히 美國에서는 景氣回復의 遲延에 따른 購買力의 減少와 自然保護團體들의 動物保護運動의 여과 등으로 동물성 의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毛皮도 예외가 아니어서 輸入需要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시장의 규모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생산량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表 3-41〉 참조). 특히 우리나라 수출모피제품의 주종인 중·저급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가 두드러져 우리나라에 미치는 수출감소의 타격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통관행을 볼 때 국내의 毛皮製品 생산업자들은 대외적인 수요감소 요인에 대처하여 품질향상 등에 노력하기보다는 중·저급 제품을 중심으로 內需市場의 開拓에만 주력하여 國內 消費만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고급화를 통한 輸出競爭力 提高에 역행하여 자생적인 自活意志가 미약한 실정이다.

모피의류 즉, 모피 완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內需는 1980년대 말 과소비 풍조의 만연기에 特別消費稅率의 引下와 課稅最低限의 대폭적인 引上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발맞춰 절대규모는 작은 편이나 완제품의 輸入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모피에 대한 關稅率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수입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 오면서부터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수입억제 및 국내산업 보호장벽이 약화되고 있다(〈表 3-33〉 참조).

현재 우리나라 毛皮衣類 縫製業은 소수의 대규모 생산자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소규모 봉제업체가 不渡 또는 生産中斷, 閉鎖, 轉業 등 생산 영업활동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1989년 特別消費稅의 稅率引下와 課稅最低限의 대폭적인 引上으로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 모피시장의 여건이 매우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에 접어 들면서 경기후퇴와 과소비 풍조의 퇴조로

인한 우리나라 內需의 減少와 둘째, 우리의 주요 輸出對象國이었던 美國에서 경기부진에 따른 구매력 감퇴와 동물보호운동의 확산에 따른 消費激減으로 인하여 美國市場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력과 판로개척에 많은 애로가 있어 품질향상이나 제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따라서 대외적인 수출에 매우 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유통 판매조직이 취약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넷째, 關稅가 낮은 편으로서 국내산업 보호기능이 취약하며 다섯째, 국내 생산업자들의 企業家 精神이 다소 해이하여 산업부진의 원인을 내부적인 경쟁력의 약화라는 내부요인이 아니라 소비세제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特別消費稅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毛皮製品이 課稅最低限 이하에서 非課稅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特別消費稅가 과세됨에 따른 실질적인 產業의 成長抑制效果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課稅最低限이 설정됨에 따라 그 이상의 제품생산이 간접적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 모피시장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모든 책임의 원천을 제도적인 측면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득력 또한 미약하다.

中國과 같이 풍부한 低賃金 勞動力을 바탕으로 한 後發 開途國들의 追擊이 가속화되면서 중·저급 모피제품 시장의 판도는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모피제품 수출은 중·저급품을 중심으로 상당히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 홍콩, 중국 등에게 시장을 내주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범세계적인 모피시장의 감소추세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풍부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後發開途國에서 생산된 低價의 毛皮製品은 우리의 海外市場뿐만 아니라 國內市場으로 침투하면서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모피산업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酒 類

우리나라의 酒稅는 從量稅(unit tax)가 적용되는 酒精을 제외하고는 모두 從價稅(ad valorem tax)의 형태로 과세되고 있다³³⁾. 현재 위스키와 브랜디,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150%로서 모든 주류 중에서 最高의 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중주인 소주에는 35%, 전통주이며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탁주에는 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현재 주류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으로는 酒稅率 調整問題와 流通過程上의 問題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의 문제는, EC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韓·EC 酒稅 兩者協義의 協의안에 따라 1994년과 1996년의 양차 연도에 걸쳐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을 引下하고, 그 동안 소주에 대하여 비과세되어 온 教育稅를 1996년부터 부과(10%)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들 주류와 기타의 주류간에 稅負擔 측면에서 衡平性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주세율 체계는 주류의 高級度 또는 大衆度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 주류소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外部不經濟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⁴⁾. 두번째는 酒類 流通構造上의 제반 不公正 去來 행위와 無資料去來 행위 등 부정거래와 脫稅, 節稅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不正去來 및 課稅根據資料의 은폐를 통하여 특히 주류의 最終 消費段階에서 脫稅의 문제가 심각하며,

33) 從價稅와 從量稅에 관한 특성은 崔洸(1992)을 참조.

34) 成明宰(1993 b) 참조.

稅務行政上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課稅標準에 대한 捕捉率이 매우 낮은 유흥업소 등과도 밀접한 연계를 이루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본 연구의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피하기로 하며 本節에서는 두번째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가. 酒類의 流通過程

『酒稅事務處理規程』에 규정되어 있는 주류판매 도매업 면허는 濁·藥酒 都賣免許, 綜合酒類都賣免許, 輸入酒類專門都賣免許, 수퍼·連?!店 本·支部와 각종 협동조합의 仲介業免許, 輸出入 仲介業免許, 軍納 仲介業免許 등으로 구분된다. 綜合酒類都賣業者는 국산, 수입 주류를 불문하고 모든 주류를 취급하고 전국을 공급대상으로 하며³⁵⁾ 수퍼·連?!店 本·支部는 국산, 수입 주류 모두를 취급한다. 酒類 輸入商免許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며 자본금 5,000만원 이상으로서 외국 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발급자격이 주어지며, 輸入酒類專門都賣業者는 수입업자가 수입한 주류를 도매하는 법인이다.

酒類販賣 小賣免許는 小賣販賣免許와 擬制販賣免許(신고사항)로 구분되는데, 前者는 주류 판매업을 主業으로 하지 않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인데 소위 ‘구멍가게’로 지칭되는 영세한 소매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後者는 食品衛生法에 의해 營業許可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³⁶⁾. <表 3-42>에서는 酒類에 대한 각종 都賣免許의 지역별·면허 종류별 분포현황을 보여 준다.

과거 영세한 도매업자들의 난립에 따른 過當競爭 및 變則去來의 防止와 課稅資料의 양성화 등을 목적으로 都賣場을 統·廢合하면서

35) 國稅廳, 『酒稅事務處理規程』, 1992 p.28 참조.

36) 資料: 財務部 消費稅制課.

〈表 3-42〉 酒類 販賣免許 現況(1992年 1月 現在)

(單位：個)

	綜合酒類 都賣業免許	수퍼·連鎖店 免 許	濁·藥酒都賣免許		酒類輸入商 免 許	輸入酒類 專門都賣免許	
			濁 酒	藥 酒			
서울	175	59	115	12	서울 38	서울廳 18	
仁川	31	5	23	—	馬山 1	中部廳 5	
京畿	126	20	55	11	大邱 1	大田廳 4	
江原	64	17	45	—	釜山 3	光州廳 5	
大田	24	7	11	1	蔚山 1	大邱廳 3	
忠北	36	7	3	—	天安 1	釜山廳 9	
忠南	40	2	—	—			
光州	20	9	11	—			
全北	53	11	—	—			
全南	92	4	2	—			
大邱	30	15	—	—			
慶北	89	16	—	—			
釜山	51	14	21	—			
慶南	92	17	7	—			
濟州	18	4	—	—			
合 計	941	207	293	24	45	44	

資料：財務部 消費稅制課, 『消費稅制基本統計』, 1992. 9.

도매유통구조를 대형화한 이래 1980년대 후반까지 新規의 酒類販賣 都賣免許는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체 금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어 탁주·약주·주정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신규면허가 발급된다.

주류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免許制度 이외에도 주류의 판매를 用途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데, 크게 遊興飲食店用, 家庭用, 酒稅免稅用 酒類로 구분하고 있다. 遊興飲食店用 酒類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유통음식업자, 家庭用 酒類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수퍼·연쇄점 본·지부 등, 酒稅免稅用 酒類는 해당 도매면허를 가진 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의 본래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시 말해 綜合酒類販賣業者는 酒類製造者와 輸入業

者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며, 遊興飲食店用 酒類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그리고 家庭用 酒類는 소매업자와 擬制販賣業者에게만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수퍼·連鎖店 本·支部는 세무서장이 지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당해 수퍼·연쇄점의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仲介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家計消費者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³⁷⁾.

주류의 가격은 국세청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일부의 주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가격으로 되어 있다. 즉, 酒精의 製造場 出庫價格과 販賣場 販賣價格과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류에 대한 製造場 出庫價格은 국세청장이 명령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변경된 가격을 변경실시 1일전까지 稅務署長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³⁸⁾.

나. 外國의 酒類流通構造 : 免許制度를 中心으로³⁹⁾

酒類免許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한 방법을 따르면 「온-프레미스」(on-premise) 면허와 「오프-프레미스」(off-premise) 면허로 나눌 수 있다. 「온-프레미스」는 販賣場所와 消費場所가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흥음식점이 여기에 해당되며 「오프-프레미스」는 위의 두 장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즉 店舖 외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소매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주류의 生産段階에서 消費段階에 이르기까지 免許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약간씩 내용이 상이하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오프-프레미스」의 경우 免許가 필요없으며,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에서는

37) 國稅廳, 『酒稅事務處理規程』, 1992. 1, pp. 69~75 참조

38) 國稅廳, 『酒稅事務處理規程』, 1992. 1, 第70條 참조.

39)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Alcoholic Beverage Taxation and Control Policies*(1992), 참조.

일반판매업면허를 가진 자는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면허 없이도 주류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日本과 포르투갈에서는 음식점이나 간이술집 등에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家庭消費用 와인이나 맥주에 대하여 일반식품판매면허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며 룩셈부르크에서는 면허 없이도 음식점같은 장소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온-프레미스」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오프-프레미스」 면허가 없이도 판매장소 외부로 유통되는 주류의 판매가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온-프레미스」 면허를 소지한 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 소매면허 즉, 「오프-프레미스」 면허도 소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는 발급하는 免許의 數에 제한을 두며 그 數는 人口를 기준으로 한다. 이탈리아에서도 인구를 기준으로 免許의 數를 제한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주류에 따라 서로 相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피릿類에 대한 면허 하나에 필요한 인구는 맥주 또는 와인 면허 하나에 필요한 인구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美國에서는 두 가지의 酒類販賣 小賣制度를 시행하고 있다. 그 하나는 獨占體制로 운영되는 專賣制度로서 州政府(state government)가 酒類의 都賣 및 일부 또는 모든 酒類에 대한 小賣를 감독(control)하고, 또한 酒類의 판매는 정부가 소유한 장소에서만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92년 현재 모두 18개 州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專賣制度가 아니라 免許制度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주류는 원칙적으로 政府로부터 免許를 취득한 업자에 의해서만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美國에서는 주류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미리 지정된 판매요일과 판매시간을 엄격히 지킬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음주허용연령에 대해서는 과거에 州別로 18~21세로 큰 차이가 있었으나

1984년 연방하원의회에서 모든 주류에 대한 음주허용연령을 21세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매년 음주허용연령을 21세로 조정하는 州의 수가 증가하여 1988년 와이오밍州를 마지막으로 현재에는 모든 州에서 그 연령을 21세로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다.

日本에서의 주류관련 면허는 製造免許와 都賣免許, 그리고 小賣免許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前述한 바와 마찬가지로 都·小賣免許와 관련하여 「온-프리미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酒稅法상에 정의된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 酒類 流通過程의 問題點

주류의 유통은 家庭用, 遊興飲食店用, 免稅用 등 각 용도별로 지정된 都·小賣業者를 통하여 家計消費者나 遊興飲食店 등에 판매되어야 하나 현실의 유통과정에서는 『酒稅事務處理規程』에 규정된 용도별 주류판매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無資料 去來 등 각종의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여타의 다른 용도로 다량의 주류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용도 내의 주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부가 無資料로 거래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無資料 去來에 대한 需要者들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都·小賣業者로부터 규정된 정상적인 용도의 주류도 일정량 구입하여 課稅의 根據資料로 확보함으로써 불법으로 위장 구입한 주류에 대한 課稅資料를 은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課稅資料가 은폐됨에 따라 根據課稅의 沮害要因으로 작용하여 脫稅의 原因이 되고 있으며 地下經濟의 擴大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류의 생산·출고단계에서는 위스키와 브랜디 등 몇몇 주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류의 과반수 이상이 家庭用으로 출고되고 있다(〈表 3-43〉, 〈表 3-44〉 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家庭用 酒類

가 모두 小賣商 등을 통해 일반 家計消費者에게만 판매되지는 않으며 상당 부분이 유흥음식점 등 다른 용도로 불법적으로 전용되어 유통되고 있다. 일례로 슈퍼·연쇄점에서의 주류 판매의 실상을 보면 그런 사실이 보다 명백해진다. 『酒稅事務處理規程』에 따르면 슈퍼·연쇄점이 재판매를 위하여 구입하는 모든 주류는 家庭用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슈퍼·연쇄점이 구입하는 주류는 모두 가맹점 및 직영점을 통해 최종적으로 家計消費者에게만 판매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無資料로 유흥음식점이나 덤핑시장 등으로 반출되고 있다. 1987년 슈퍼·연쇄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주류 구입량 중에서 17.4%만이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僞裝去來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⁴⁰⁾. 이와 같이 불법으로 위장거래된 주류의 대부분은 다른 용

〈表 3-43〉 酒類의 用途別 出庫實績(1992年)

(單位: kl, %)

	家庭用	遊興飲食店用	免稅用	合計
위스키 (40% 基準)	4,434(40.3)	5,996(54.5)	574 (5.2)	11,004
브랜드 (40% 基準)	143(32.3)	1 (0.3)	298(67.4)	442
清酒 (16% 基準)	39,886(78.6)	10,439(20.6)	397 (0.8)	50,722
一般蒸溜酒 (40% 基準)	9,338(82.4)	1,587(14.5)	338 (3.1)	10,963
리큐어 (30% 基準)	3,230(78.2)	687(16.6)	211 (5.1)	4,128
果實酒 (12% 基準)	7,641(79.7)	1,925(20.1)	22 (0.2)	9,588
麥酒 (4% 基準)	903,779(58.5)	617,365(39.9)	24,542 (1.6)	1,545,686

註: 1. () 안은 구성비임.

2. () 안의 기준은 알콜농도임.

3. 맥주는 동양맥주와 조선맥주의 합계치임.

資料: 大韓酒類工業協會.

東洋麥酒.

40) 鄭憲培(1988) pp. 85~86 참조.

〈表 3-44〉 稀釋式 燒酒의 用途別 出庫實績(1992年)

(單位: kl, %)

家庭用	飲食店用	觀光用	課稅軍納用	免稅用	合計
526,912 (73.5)	127,133 (17.7)	47,762 (6.7)	7,222 (1.0)	7,862 (1.1)	716,891 (100.0)

註: 1. () 안은 구성비임.

2. 알콜농도 25% 기준임.

資料: 大韓酒類工業協會.

도, 즉 유흥음식점 등으로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과거의 酒類市場에서의 경험을 보면 특히 1980년대 중반에 이러한 현상이 매우 심각하였으며, 또한 슈퍼·연쇄점에만 국한하여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酒類販賣 都賣業者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었던 것으로서, 현재의 酒類消費行態로부터 유추해 볼 때에도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많이 완화되었으나 어느 정도는 현재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먼저 需要 측면에서의 원인으로는 脫稅를 들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無資料로 거래하면 賣出을 과소하게 偽裝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 등을 脫稅할 수 있으며, 이는 이차적으로 所得稅의 課稅標準도 축소시키므로 所得稅의 일부분까지도 脫稅하게 된다. 그러나 脫稅와 관련한 문제는 유통과정상에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課稅根據資料를 은폐 또는 위장함에 의한 脫稅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 所得稅 등과 관련이 깊고 酒稅에 대한 탈세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酒稅는 國稅廳에 의해 製造場으로부터 搬出될 때에 일괄 징수되기 때문이며, 여타의 세목들은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課稅根據資料를 은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에 이에 대한 추적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의 원인으로는 酒類 都賣商들이 『酒稅事務處理規程』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시장영역을 불법적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課稅特例者로 분류되는 소규모의 영세한 小賣業者와 최종 家計消費者들은 課稅資料 노출을 우려하여 영수증 受取를 꺼리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受取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규모의 도매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판매영역의 확대를 위해 여타 용도의 주류를 다른 용도로 불법적으로 판매하면서도 매출자료는 영수증을 受取하지 않은 정상적인 판매행위로부터 조달하거나 또는 資料商으로부터 허위로 조작하여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주류의 포장용기에 붙어 있는 상표에는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의 유통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酒類市場 전체를 놓고 보면 他用途로 전용되어 판매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제품이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의 市場을 인위적으로 複數의 市場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각기 분할된 市場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超過需要(excess demand)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暗市場이 형성되어 다른 시장에서의 물품이 유입된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시장에서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서만 곤란한 無資料 去來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거나 증대된다면 역시 暗市場이 발생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同一市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시장에서의 물품도 暗市場으로 유입됨은 물론이다.

주류의 出庫 및 都賣段階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끼워 팔기’와 ‘밀어 내기’, ‘덤핑 행위’, 인위적인 ‘出庫制限’, ‘自己資本의 脆弱性’으로 인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끼워 팔기’란 유통구조상 우월한 위치에 있는 주류 제조업자 또는 대형 도매업자가 人氣酒類를 판매할 때에 非人氣酒類도 함께 끼워 強賣하는 것으로서 販賣者의 입장에서는 非人氣酒類의 재고를 처분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買入者의 입장에서는 ‘올며 겨 자먹기’式으로 非人氣酒類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매입하게 되어 資金壓迫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결국 매입자로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에서는 판매가 부진하고 在庫로 쌓이는 非人氣酒類를 低價로 덤핑시장에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하다. 이와 같은 ‘끼워 팔기’ 행위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中·소규모의 都·小賣業者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不公正去來로 유통구조를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밀어 내기’란 非人氣酒類에 대한 ‘끼워 팔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과잉생산이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在庫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在庫分을 都·小賣商들에게 강매하는 것으로서 人氣酒類의 경우에도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덤핑 행위’란 시장확보 또는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低價攻勢를 취하거나, 자금압박에 따른 運轉資金의 凍結效果를 타파하고자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유출시켜 정상적인 市場의 機能이 왜곡되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특히 酒類市場에서는 無資料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용도의 주류를 他用途로 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장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덤핑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체로 덤핑시장에서는 非人氣酒類의 需要量 增大를 위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人氣酒類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出庫制限’은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獨占(또는 寡占)의인 위치를 제고시켜 都·小賣商들을 예속화시키거나 또는 가격을 조작하여 暴利를 취하기 위해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不公正去來 行爲의 하나이다.

많은 수의 都賣業者들은 自己資本이 상당히 취약하여 주류 제조업자 또는 상위의 위치에 있는 대형 도매업자들에 대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이루지 못하고, 제조업자나 다른 도매업자에 예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끼워 팔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또는 특정 주류 제조회사의 제품이나 특정한 상표의 주류만을 취급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와 같은 ‘끼워 팔기’와 ‘밀어 내기’, ‘덤핑 행위’, ‘出庫制限’ 행위 등과 같은 不公正去來 행위는 모두 건전한 주류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역행하고 根據課稅의 확립에 沮害要因으로 작용하는 것들로서, 특히 稅務行政이나 不公正去來에 대한 감시활동이 이완된 시기에는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 오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改善方案 및 期待效果

本章에서는 현행의 高消費稅率下에서 파악된 上記 품목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품목별로 모색해 보고 期待效果를 분석해 본다.

1. 寶石類(貴金屬類 包含)

前述한 바와 같이 寶石類와 貴金屬類와 관련한 문제점은 지나치게 높은 名目稅率 적용에 따른 課稅의 實效性 상실과 地下經濟의 확대에 따른 脫稅와 所得分配의 惡化, 나아가서는 寶石·貴金屬加工產業의 國際競爭力 弱化 및 消費者의 厚生減少 등으로 요약된다.

寶石類와 貴金屬類는 대개 高價의 奢侈品으로서 高所得 階層으로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는 奢侈財의 하나이다. 따라서 一般消費稅인 附加價値稅의 특성 중의 하나인 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할 목적으로 寶石類와 貴金屬類와 같은 高價의 奢侈性이 짙은 제품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경제학적 논리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寶石類와 貴金屬類는 이와 같이 단순한 奢侈性 消費財로서의 특성도 지니지만 동시에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價値가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되는 價値貯藏財, 즉 貯蓄手段의 하나로서 인식될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後者의 측면에서는 寶石類와 貴金屬類에 特別消費稅와 같은 소비세를 重課稅하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미약해진다.

稅負擔의 逆進性 완화문제와 관련해서는 名目稅率과 實效稅率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稅負擔의 逆進性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奢侈性 消費財에 高率의 消費稅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것이 實效性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名目稅率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充分條件이 되지 못하며 實效稅率 또한 높아야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名目稅率은 높지만 實效稅率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消費稅 賦課의 實效性이 낮아지므로 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적절하며, 이보다는 오히려 名目稅率은 낮더라도 實效稅率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높은 實效性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현재의 여건을 볼 때 명목세율은 60%(寶石類)로 매우 높지만 실효세율은 거의 零에 가까워 稅收實績도 지극히 미미하므로 高率의 特別消費稅를 부과함에 따른 逆進性 緩和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寶石類(貴金屬類)에 대한 과세문제는 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하기 위한 所得再分配의 측면을 고찰함과 동시에 단순소비재로서가 아니라 價値貯藏財로서의 측면, 그리고 높은 名目稅率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實效性 問題 및 產業政策的인 측면 등에 대한 고려와 같이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改善方案을 제시하고 期待效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高價의 奢侈性이 짙은 제품에 高消費稅率을 적용하면 脫稅의 유인이 증대되며 또한 寶石類와 貴金屬類와 같이 부피가 작고 은닉이 용이한 것은 밀거래 또는 밀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 名目稅率이 높은 消費稅를 부과하더라도 脫稅 및 각종의 비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결과로 名目稅率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實效稅率은 매우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寶石類의 경우에 연간 소매시장의 규모가 수천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율 60%(課稅最低限 50만원)의 特別消費稅의 세수 실적이 수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名目稅率이 名目的으로만 존재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名目稅率을 引下하여 實效稅率을 제고시킴으로써 名目稅率과 實效稅率을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名目稅率을 引下하게 되면 정상적인 국내가격이 하락하므로 諸稅負擔 後의 國內의 價格隔差가 축소되어 密輸의 限界便益, 즉 탈세액을 포함하는 전매차익의 크기가 감소되므로 밀수의 유인이 감소된다.

그러므로 脫稅 및 密輸, 密去來의 유인을 차단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높은 名目稅率을 引下하는 것이 필요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非課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非課稅하는 것은 稅負擔의 衡平性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稅率을 引下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特別消費稅의 稅率이 현재처럼 과중하게 높은 것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크므로, 복잡한 特別消費稅 稅率體系의 單純化에 발맞춰 石油類에 대한 세율을 제외한 세율 중에서 가장 稅收比重이 높은 10%와 15%, 25%를 중심으로 改善案을 마련할 수 있다⁴¹⁾. 特別消費稅의 課稅最低限을 확대하는 것은 課稅回避를 위한 편법적인 수단을 발달시켜 資源의 非正常的인 配分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율의 引下案과 더불어 課稅最低限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特別消費稅의 稅率 및 課稅最低限에 대한 改善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案－稅率 10%, 課稅最低限 30만원

2案－稅率 15%, 課稅最低限 30만원

3案(寶石類만 해당)－稅率 25%, 課稅最低限 50만원(현행)

稅率引下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즉 유통시장의 정상화·양성화를 위해서는 寶石類와 貴金屬類의 특성상 매우 낮은 세율이 유지되어야

41) 成明宰(1993 a) 참조.

特別消費稅 課稅의 實效性이 있으므로 세율의 인하는 큰 폭일수록 효과가 크며 따라서 3案보다는 1案 또는 2案에서와 같이 10~15%의 세율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액의 물품에 대해 과세함에 따라 徵稅費用의 增加 및 業務量의 폭주를 야기하여 稅務行政에 과중한 부담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課稅最低限을 폐지하는 것은 稅政의 單純化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세율을 10~15% 정도로 대폭 인하할 경우에 현행의 課稅最低限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낮은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므로 公平한 稅負擔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무행정 업무량이 폭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徵稅便宜와 納稅費用을 감안하고 또한 稅負擔의 衡平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의 課稅最低限은 현행보다 약간 낮은 30만원 정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案과 같이 세율을 25% 수준에서 유지한다면 稅率引下의 효과는 반감되며 또한 低價品에 대한 稅負擔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되어 실효성을 반감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 경우에는 課稅最低限을 인하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寶石類와 貴金屬類 市場에서의 탈세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附加價值稅의 課稅特例 적용에 따른 限界課稅特例者들의 賣出隱蔽에 있으므로 세율의 인하만으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課稅特例制度에 대한 改善도 필요하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들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附加價值稅의 課稅特例制度는 현재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課稅特例者들의 稅負擔의 絶對水準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納稅者들에게는 稅負擔 減免制度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課稅特例者들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課稅特例者들은 사업규모의 증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여 기

준인 3,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課稅特例者로부터 제외되어 일반세율인 10%가 적용되어 납세자 입장에서의 稅負擔의 絶對水準이 급격히 증대되므로 租稅抵抗이 급속히 증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세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급속히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세부담 수준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納稅者의 입장에서는 담세액의 절대액이 급속히 증대되므로 저항을 느끼는 것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납세자들은 課稅特例者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세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課稅資料를 은폐하여 課稅特例者로 잔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제품을 地下經濟에서의 밀수 및 밀거래에 의존하는 寶石·貴金屬類 市場의 경우에는 더욱 극심하여 백화점 등에 있는 寶石·貴金屬商을 제외한 거의 모든 寶石·貴金屬商이 課稅特例者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거래량의 거의 모두가 無資料 또는 偽裝去來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둘째로는, 附加價值稅의 課稅特例排除 基準을 강화하여 課稅特例者 선정에 보다 신중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根據課稅의 確立 및 脫稅의 防止를 위하여 課稅特例制度를 대폭 축소하고 一般課稅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稅務行政도 대폭 강화하여 고의적인 課標漏落이나 課標縮小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納稅者들의 자발적인 納稅協力 意志를 제고하는 것도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寶石類와 貴金屬類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納稅義務者를 製造業者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타의 特別消費稅의 納稅義務者들은 대부분이 製造業者인 반면에 寶石類·貴金屬類의 경우에는 小賣業者들로서 그 수가 매우 많고, 또한 대부분이 매우 영세하므로 徵稅行政上에 많은 애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단계보다는 소매단계에서 課稅資料를 은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

므로 根據課稅의 基盤을 확립하면서 課標를 제대로 추적하기 위하여 納稅義務者를 小賣業者에서 製造業者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寶石類와 貴金屬類의 경우에 製造業者들의 대부분이 小賣業者와 마찬가지로 매우 영세하고 그 수도 매우 많아 稅務管理 측면에서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과 같이 小賣業者를 納稅義務者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現實的인 實效性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개선안을 시행하여 國內의 流通市場이 正常化·陽性化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비록 名目稅率은 인하하더라도 實效稅率은 상승하여 課標가 增大되고 이에 따라 稅收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각종의 밀수 및 밀거래 등의 감소에 따라 이러한 것의 단속에 소요되었던 불필요한 行政力 및 經費의 감축이 가능하고 셋째, 健全한 納稅風土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넷째, 稅負擔의 逆進性 緩和, 즉 所得再分配의 機能을 強化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뿐만 아니라 流通構造가 정상화됨에 따라 밀수 또는 암거래 등에 의해 불평등하였던 稅負擔의 公平性을 회복하여 탈세를 방지하면, 국내 寶石·貴金屬加工產業에서 가공·생산된 제품의 價格競爭力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수기반을 다지고 나아가서는 기술개발 및 축적을 통해 경쟁력을 배양하여 高附加價值產業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망한 輸出產業으로도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毛皮類

毛皮類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범세계적인 毛皮市場의 縮小에 따른 輸出不振과 低賃金 勞動에 의존하는 產業의 後進性과 後發開途國의 毛皮市場 잠식, 그리고 國內의 暗市場 擴大 및 稅負擔의 衡平性 문제를 초래하는 稅率 및 課稅最低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上記의

문제 중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나 객관적인 국내외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방향전환이 필요한 측면도 혼재되어 있다. 本節에서는 먼저 制度 및 行政의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관련된 부작용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다음으로는 방향전환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의 特別消費稅는, 製造場 搬出價格(또는 出庫價格)이 課稅最低限(1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만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附加價值稅 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課稅最低限이 지나치게 높아 逆進性緩和의 實效性이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課稅最低限 100만원을 중심으로 稅負擔의 隔差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製造場 搬出價格이 100만원 이하인 中·低級品에 치중하여 資源이 왜곡되어 배분되는 非效率性을 낳고 있다. 또한 100만원의 課稅最低限은 資本力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流通業者들이 特別消費稅의 과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出庫價格을 100만원 이하에서 억제함에 따라 소수의 대형 모피제품 생산업자(봉제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영세한 생산업자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世界 毛皮市場의 축소와 反毛皮(anti-fur) 運動에 따른 輸出不振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모피 봉제업자들이 도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課稅最低限 부근에서의 급격한 세부담의 변화를 축소하면서 逆進性을 緩和하고 稅負擔의 衡平性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特別消費稅의 稅率 및 課稅最低限의 改善案은 다음과 같다.

1案－課稅最低限：30만원, 세율：15%(出庫價格 30~100만원), 25%(出庫價格 100만원 이상)

2案－課稅最低限：50만원, 세율：15%(出庫價格 50~100만원)

원), 25%(出庫價格 100만원 이상)

3案－課稅最低限：50만원, 세율：出庫價格 50만원 超過分の
25%

4案－課稅最低限：100만원, 세율：出庫價格 100만원 超過分の
60%

1案과 2案은 課稅最低限을 30~50만원으로 引下하면서 稅率은 출고가격별로 두 단계로 나누어 과세하는 방안이며, 3案과 4案은 課稅最低限을 인하하거나 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課稅標準을 課稅最低限의 超過分으로 변경하여 稅率을 25%로 인하하거나 또는 현행의 60%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모두 세부담이 일정한 범위에서 급격히 증대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課稅最低限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徵稅의 便宜를 도모하면서 徵稅費用을 절감하고 둘째, 生必需品化된 장갑이나 低價의 毛皮製品을 非課稅함으로써 中·低所得層의 稅負擔을 상대적으로 緩和하기 위한 것이다. 稅率을 引下하거나 高價品에 대한 課稅標準을 조정한 것은 급격한 세부담의 증대에 따른 음성적인 시장의 확대와 탈세의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正常化·陽性化된 市場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名目稅率을 引下하더라도 課稅最低限 이상의 물품에 대한 課稅標準이 확대되므로 세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1案과 2案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서 課稅最低限에 약간의 격차를 보이지만 課稅의 衡平性 增進과 예외적인 非課稅 범위의 축소를 위해서는 2案보다는 1案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1案과 2案에서는 모두 100만원을 사이에 두고 세부담의 격차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案과 4案은 현행의 特別消費稅 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課稅最低限 부근에서의 稅負擔의

連續性を 보장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寶石類나 毛皮類에 대한 美國의 聯邦消費稅의 체계와도 동일한 구조를 지닌 것이다. 현행의 流通慣行이나 特別消費稅의 稅收規模를 볼 때 課稅最低限이 100만원인 4案은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4案보다는 3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稅率 및 課稅最低限의 조정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稅負擔의 급격한 增大를 완화함으로써 脫稅의 유인을 감소시키며 資源配分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둘째, 課稅標準의 확대가 매우 클 것으로 추측되므로 引下된 稅率을 적용하더라도 稅收入의 規模는 현재보다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완만한 차등세율의 과세를 통해 稅負擔의 衡平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特別消費稅가 부과되는 여타의 품목과도 課稅의 均衡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유통업자들이 特別消費稅의 非課稅를 목적으로 納品價格을 課稅最低限 이하로 억제하려는 유인을 축소시켜 영세한 제조업자(봉제업자)들의 採算性을 제고시킬 수 있다. 다섯째, 陰性的인 內需市場을 陽性化하여 稅負擔의 公平性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納稅協力 意志를 제고시켜 건전한 納稅風土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규모에는 등락이 있었으나 음성적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과세에 대한 예외 범위도 지나치게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稅務行政의 강화도 동반되어야 實效性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産業側面에서 문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와 같은 영세한 毛皮製品 生產業體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자본설비를 확충하고 품질 검사에 주력함으로써, 홍콩이나 중국같은 後發開途國들의 추격에 따라 比較優位를 상실하고 있는 中·低級品の 생산을 지양하고 高價의 高級品에 特化하는 것이 輸出市場의 지속적인 확보와 競爭力 強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즉, 우리나라의 毛皮産業은 比較優位가 사라진 勞動集約的인 저임금을 이용한 중·저급제품 생산에 주력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資本集約的이며 高附加價値를 창출하는 高價의 高級製品 開發 및 市場開拓에 주력하는 것이 축소되고 있는 모피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毛皮 및 毛皮製品에 대한 관세율은 日本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물론 관세율을 높이면 국내 毛皮市場을 보호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中·低級 毛皮製品에 대하여 比較優位(comparative advantage)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根本的인 解決方案도 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關稅와 관련해서는 해당 품목만을 고찰하여 改善案을 마련하는 것이 通商摩擦과 같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므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외국과의 通商問題 등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므로 보다 신중한 對應策이 필요하다. 關稅率과 관련된 부분은 통상문제와도 결부된 사항으로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關稅관련 문제는 차후의 다른 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3. 酒 類

酒類와 관련한 문제로는 크게 稅率問題와 流通過程上의 문제, 즉 稅務行政과 관련된 문제로 양분된다. 本節에서는 後者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前者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⁴²⁾.

주류와 관련한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은 일부 酒類의 無資料 去來와 脫稅 문제, 덤핑行爲와 끼워 팔기, 밀어 내기, 出庫制限 등의 不公正

42) 前者에 대해서는 成明宰(1993 b) 참조.

去來行爲, 酒類의 지정된 用途 이외로의 不法流通을 포함한 暗市場 문제, 出庫價格(또는 販賣價格) 命令制의 非效率性 문제, 販賣免許 制度의 伸縮性 및 基準 문제, 酒類 都賣業者들의 販賣地域制限에 따른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주류산업 전체적으로 시장의 여건을 좌우하는 外部的인 要因으로는 외국과 주류시장에서의 潛在的인 競爭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酒類產業의 成長 可能性을 들 수 있다.

本節에서는 위에서 파악된 流通構造上의 問題에 대하여 改善方案과 期待效果를 살펴보고 또한 酒類市場의 外部的인 결정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無資料 去來와 脫稅의 문제는 酒類關聯 稅務行政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酒類 流通秩序의 確立과 自發的인 納稅協力 風土의 造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無資料 去來와 脫稅의 문제는 종이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無資料 去來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販賣 實績의 增大 및 販賣領域의 擴大를 목적으로 無資料로 판매하며 수요자는 供給不足 또는 故意的인 脫稅를 위해 음성적인 시장으로부터의 매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課稅資料가 은폐 또는 축소되면서 附加價值稅와 所得稅 등이 脫稅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유흥업소 등과도 연결되어 特別消費稅까지도 脫稅되는 동시에 地下經濟의 확대에도 기여하여 과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稅務行政 측면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류매매시에 판매자들이 정확한 매출자료를 비치하도록 유도하고 매입자들이 영수증 수취를 꺼리는 관행을 제거하여 無資料 去來 또는 資料商들의 不法行爲를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차적으로는 無資料 去來 行爲에 대한 事前的인 계몽과 事後的인 관리 및 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酒類購入時에 자신들의 課標露出을 우려하여 영수증 授受를 인위적으로 기피하는 課稅特例者와 기타의 납세자들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자발적인 영수증 授受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一般 消費者에게는 영수증 수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민들의 납세협력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여야 하고, 課稅特例者들에게는 記帳을 유도하면서 또한 附加價値稅의 買入稅額控除의 한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稅負擔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⁴³⁾. 판매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記帳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주류를 他用途로 불법으로 전용하여 판매하거나 無資料로 불법유통시키는 것에 대한 조사도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종 수요자들의 각성과 협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종 消費者들은 유흥업소에서 주류를 소비할 때 다른 용도의 주류, 즉 家庭用 酒類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國稅廳이나 政府의 關聯部處에서만 담당하여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매우 큰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물론 消費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작고 귀찮은 일이며 그에 따른 이득 또한 간접적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우나,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酒類 流通構造의 健全化와 脫稅防止 및 公平한 稅負擔의 정착을 통한 衡平性을 提高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消費者들의 자발적인 신고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稅務行政을 담당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稅務行政

43) 柳時權(1993) 참조

努力的 강화를 통한 稅源捕捉率을 提高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각종의 脫稅行爲와 같은 고의적인 不法行爲가 발견되면 면허 취소 등의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끼워 팔기, 밀어 내기, 出庫制限⁴⁴⁾ 등과 같은 不公正去來 행위는 增加되는 在庫를 처분하거나 市場에서의 影響力 또는 占有率을 증대시킬 목적, 또는 하위의 流通業者(都賣業者)들을 예측화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製造者의 市場支配力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하위의 유통업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판매가 부진한 非人氣酒나 적정 수준 이상의 不必要한 酒類를 매입함으로써 자금압박을 받게 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이차적으로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해 필요 이상의 주류를 덤핑市場으로 유출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⁴⁵⁾.

위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製造業者에 대한 都賣業者의 對應力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치유책은 근본적으로 買入者의 販賣者에 대한 隸屬化를 탈피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매업자들의 對應力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매업자를 大型化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부수적으로 稅務行政當局의 지속적인 不公正去來 행위에 대한 단속도 요청된다. 물론 도매업자들을 대형화시키면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非效率性이 증가하고 하위의 都·小賣業者에 대한 不公正去來 행위가 빈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前者는 분업을 통한 전문화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後者는 不公正去來에 대한 단속과 감독의 강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한다.

셋째는 暗市場 또는 陰性的인 市場의 문제로서 대부분이 上記의

44) 姜信逸(1988 a, b) 참조.

45) 이러한 경우에는 덤핑행위는 첫째 문제에서의 덤핑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며 필연적으로 脫稅의 문제와도 연계된다. 暗市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양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바, 稅務行政의 強化가 필요하며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양측 모두의 자성이 요청된다. 기본적인 대응책은 上記의 첫째와 둘째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같다.

셋째, 酒精에 대한 製造場 出庫價格 또는 販賣場에서의 販賣價格은 국세청장의 명령에 의해 결정되는 命令價格制가 시행되고 있다⁴⁶⁾. 酒精은 대부분이 大衆酒인 燒酒의 원료로서 사용되고, 燒酒의 주된 소비자는 서민 대중을 포함한 中·低所得 階層이므로 서민 생계의 안정과 후생증대라는 차원에서 명령가격제도를 시행하여 정부가 酒精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그 동안 酒精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命令價格制度란 기본적으로 경쟁시장에서 需要·供給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價格機構의 機能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資源配分을 非效率的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명령가격이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가격에서 벗어난다면 과잉 또는 과소 생산이 이루어져 덩핑市場 또는 暗市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행히 1992년 1월 1일 현재 酒精製造會社의 數와 주된 需要者인 燒酒製造會社의 數가 각각 14개와 15개로 매우 소수여서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통제가 용이하여 위와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命令價格이 市場機構에서 결정되는 均衡價格에서 크게 벗어나고 관련회사들의 酒精流通에 대한 관리·통제가 허술해지면 언제든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價格自由化 또는 여타의 酒類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申告價格制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이 어렵다면 命令價格制度를 유지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

46) 酒精 이외에도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製造場 出庫價格에 대하여 명령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서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주는 것이 보장되도록 하고 관련회사의 酒精流通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販賣免許는 過當競爭 등의 防止를 위하여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신규발급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免許의 利權化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酒精 등 일부의 주류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규면허의 발급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라 함은 대체로 資力이나 저장·운반시설 등 공급자 측면에서의 요건이 대부분이며 수요측면, 즉 市場與件에 대한 요건은 「酒稅事務處理規程」 등에 明文化된 조항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물론 행정적으로 신규면허를 발급할 때 시장여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기는 하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룩셈부르크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酒類 販賣免許의 數에 제한을 두는데 그 기준의 하나가 바로 人口의 數로 명문화하고 있어 市場與件, 즉 酒類 消費者의 數에 따라 신축적으로 면허의 수를 가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면허의 요건 중에 人口의 數를 명문화하여 보다 명료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는 행정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都賣業者들의 販賣地域制限의 문제는 종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엄격하였던 것으로 소수의 도매업자별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주류를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寡占化 현상과 이에 따른 不公正去來 행위 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물론 판매지역의 제한은 過當競爭의 防止와 徵稅便宜 등의 장점도 지니고 있어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⁴⁷⁾. 그러나 지나친 경쟁의 제한은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를 가져다 주므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47) 鄭憲培(1988) 참조.

현재에도 주류 도매업자들에 대한 販賣地域制限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綜合酒類都賣免許의 경우에는 販賣地域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어 경쟁의 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販賣地域의 제한문제에는 도매업자의 大型化에 따른 지역적인 寡占化와 過當競爭의 防止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trade-off)가 존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유통과정상의 문제 이외에 외부적으로 시장여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酒類產業의 成長 可能性 또는 市場規模를 결정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酒類產業의 성장을 결정짓는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酒類 消費패턴 및 酒類 消費者的 數를 들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所得水準이나 生活水準의 변화에 따른 酒類 消費構造의 변화에 따라 소비행태가 점차 低級酒에서 高級酒로 高度化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酒類의 消費量은 酒類 消費者的 數에 비례하고, 酒類 消費者的 數는 장기적으로 人口增加率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내적인 酒類市場의 規模는 이상과 같이 酒類 消費패턴과 酒類 消費者的 數에 의해 결정된다.

酒類市場의 成長 可能性에 대한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輸出 可能性 및 輸入現況과 展望 등을 들 수 있다. 酒類는 특성상 기호품의 하나로서 여타의 財貨와는 달리 소수의 酒類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특정한 전통주 및 대중주에 대한 非彈力的인 酒類 消費패턴으로 인하여 또는 가격에 비하여 과중한 輸送費 負擔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수출입이 용이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酒類市場의 規模와 成長 可能性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경제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酒類市場의 成長은 위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약된다.

上記의 成長決定要因과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酒類産業의 성장에는 酒類 消費패턴과 消費者의 數, 대외적인 市場與件 등에 의해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上限線⁴⁸⁾이 있으므로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酒類産業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量的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質的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8) 成明宰(1993 b) 참조.

IV. 結 論

본 연구는 매우 높은 消費稅率이 적용됨에 따라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暗市場 등 비정상적인 經濟活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이 매우 높고 적용되는 消費稅率 또한 높을수록 脫稅에 따른 限界便益이 증가하므로 脫稅의 유인도 증가한다. 더욱이 부패가 작아 밀거래가 용이하거나, 市場이 記帳能力이 없는 다수의 영세한 사업자 또는 課稅特例者들에 의해 운영되어 根據 課稅의 확립이 어려운 경우, 유통관행상 영수증의 수수를 기피하고 課稅資料를 은폐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暗市場에서의 去來 및 脫稅의 유인이 더욱 커진다.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脫稅와 不當利得에 의한 所得分配의 惡化 또는 稅負擔의 逆進性 深化, 稅收의 減少, 納稅意識 沮害, 비정상적인 거래의 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정부의 行政力과 費用의 浪費, 정상적인 地上經濟의 衰退, 資源配分の 歪曲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책으로는 첫째,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稅率을 引下하고 稅負擔의 급격한 증가를 緩和하여 제도적인 것으로부터 과생되는 부작용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완화하여야 하고 둘째, 세무행정을 포함한 각종의 不公正 去來와 暗去來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監督의 強化라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자의성이 개입하기 쉬운 것을 明文化함으로써 제도의 透明性을 제고시켜야 하다.

寶石類와 貴金屬類는 奢侈性 消費財이면서도 價値貯藏財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현행과 같이 높은 세율(寶石類: 60%, 貴金

屬類: 20%)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다소 미약한 편이다. 이들 품목은 거의 대부분이 輸入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부피가 작고 高價여서 密去來가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행의 總租稅負擔率도 매우 높아 밀수 및 밀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의 波及效果로서 現在 裡里寶石加工團地에 조성되어 있는 寶石·貴金屬加工產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暗市場의 규모를 축소하고 稅收增大를 이루며 관련 산업의 競爭力을 回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의 特別消費稅의 稅率을 引下하여야 하며 課稅의 衡平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現行의 課稅最低限을 引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毛皮類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奢侈性이 짙은 消費財로서 一般消費稅의 稅負擔의 逆進性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여 현행과 같이 60%의 세율(特別消費稅)을 적용하고 있으나 課稅最低限이 100만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課稅對象의 거의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로 전환되어 비과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수입 실적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稅負擔의 衡平性 증진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課稅의 衡平을 증진하고 稅收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課稅最低限을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60%라는 높은 세율은 課稅最低限 부근에서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상당한 租稅抵抗을 불러 일으켜 資源配分을 왜곡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므로 세율도 함께 인하하거나, 또는 課稅最低限을 초과하는 부분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稅負擔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世界 毛皮市場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종전에 우리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中·低級 毛皮製品에 대한 後發開途國들의 추적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우회하여 지속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高價의 高級製品에 特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酒類는 不公正去來와 脫稅가 주된 문제이다. 주류의 流通構造上에서는 덤핑행위나 밀어 내기, 끼워 팔기, 出庫制限 등에 의하여 각종의 不公正去來 및 暗市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不法流通은 최종적으로 遊興業所 등과 연결되어 脫稅와 暗市場(또는 地下經濟)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의 不公正去來와 暗市場, 脫稅의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업자들을 大型化·近代化하여 製造業者들로부터의 獨立性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稅務行政의 強化를 통해 根據課稅의 基盤을 확충하여 無資料 또는 偽裝資料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暗市場을 축소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종의 行政에 있어서의 恣意性을 배제하고 稅務行政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不文化되어 있는 규정을 明文化하는 것도 필요하다.

第 1 部 參考文獻

- 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92.
- 郭泰元, 「우리나라 特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7 가을號, pp. 27~43.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3. 5.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92.
- 內務部, 『地方稅政年鑑』, 1992.
- 李啓植, 裴峻皓,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 分析」,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郭泰元·李啓植(編),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 86-01, 韓國開發研究院, 1986, pp. 61~122.

第 2 部 參考文獻

- 郭泰元, 「우리나라 特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7 가을號, pp. 27~43.
- 國稅廳, 「國稅行政概要」, 1992. 10.
- 金珍洙, 「담배消費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3.
- 羅城麟, 「한국의 조세/사회부조 모형 I」, 『政策研究 資料 91-41』, 韓國開發研究院, 1991. 12.
- 羅城麟·玄鎮權, 『韓國의 社會扶助模型 2: 母集團化 適用을 통한 租稅 - 社會扶助의 所得分配 效果』, 韓國租稅研究院, 1993.
- 農林水產部, 『1991 農家經濟統計』, 1992.
- 柳時權, 「附加價值稅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3.
- 朴定樹, 「韓國의 地域別 財政歸着」, 『財政論集』, 第4輯, 韓國財政學會, 1990, pp. 193~217.

- 朴鍾九, 「地域別 租稅歸着에 관한 實證分析」, 1992.
- 三逸會計法人, 『三逸叢書 國稅便覽』, 1992. 3.
- 徐遵鎬, 「現行 附加價值稅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 『經商論叢』
8, 西江大學校 經濟經營問題研究所, 1984, pp. 125~126.
- 成明宰a, 「現行 特別消費稅의 問題點과 向後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
院, 1993.
- _____ b, 「現行 酒稅의 問題點과 向後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3.
- 稅經社, 『租稅大典』, 5 地方稅, 1990. 8.
- 李啓植, 「地方財政과 地域別 所得分配」,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郭
泰元·李啓植(編), 韓國開發研究院, 1988, pp. 135~176.
- 李啓植·裴竣皓,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 分析」,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郭泰元·李啓植(編),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
86-01, 韓國開發研究院, 1986, pp. 61~122.
- 李俊求, 『所得分配의 理論과 現實』, 茶山出版社, 1992.
- 財務部, 『消費稅制基本統計』, 1992. 9.
- _____, 「租稅概要」, 1992. 3.
- _____, 『財政金融統計』, 1992. 10.
-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 (上),(下)』, 韓國開發研究院,
1979, 1982.
- 車軻權, 「우리나라의 租稅負擔에 관한 考察」, 『經濟論集』, 第5卷 第
4號,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66.
- 崔 洸, 「消費課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7.
12.
- _____, 「租稅負擔에 관한 實證的 分析」, 『分配正義와 財政政策』 第
8章, 經濟研究叢書 218,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터,
1991, pp. 159~206.
- 統計廳, 『1991 都市家計年報』, 1992.

- _____, 『1990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1992. 12.
- 韓國開發研究院, 『韓國財政 40年史』, 各 卷, 韓國開發研究院, 1990
~1991.
- 韓昇洙, 「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
究院 研究叢書』 5, 韓國經濟研究院, 1982.
- Atkinson, A.,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1970, pp. 244~263.
- Bahl, R. W.,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Korean Budget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Syracuse University,
October 1977(unpublished).
- Davies, James, France St-Hilaire and John Whalley, “Some Cal-
culations of Lifetime Tax Inc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1984, pp. 633~649.
- Fullerton, D. and Diane L. Rogers,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 Guthrie, Robert S., “Measurement of Relative Tax Progressivity”,
National Tax Journal, Vol. 32, March 1979.
- Heller, P. S., “The Incidence of Taxation in Korea”, IMF Fiscal
Affair Department, October 1978(mimeographed).
- _____, “Testing the Impact of Value-Added and Global Income
Tax Reforms on Korean Tax Incidence in 1976: An
Input-Output and Sensitivity Analysis”, IMF Staff Pap-
ers, Vol. 28, No. 2, June 1981, pp. 375~410.
- Kakwani, N. C.,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
national Comparison”, *Econometric Journal*, 87, March
1977, pp. 71~80.
- _____, “Applications of Lorenz Curves in Economic Analysis”,
Econometrica, Vol. 45, No. 3, April 1977, pp. 719~727.

- _____, "Progressivity Index of Sales Tax on Individual Expenditure Items in Australia", *Economic Record*, Vol. 59, No. 164, March 1983, pp. 61~79.
- Khetan, C. P. and S. N. Poddar, "Measurement of Income Tax Progression in a Growing Economy: The Canadian Experi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 No. 4, November 1976, pp. 613~629.
- Kiefer, D. W., "Distributional Tax Progressivity Indexes", *National Tax Journal*, Vol. 37, No. 4, 1984, pp. 497~513.
- Kuznets, S.,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II : Industrial Distribution of National Product and Labor For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Supplement to Vol. 5, 1957, pp. 1~80.
- Manski, Charles F., "Anatomy of the Selection Problem", *Journal of Human Resources*, 24, 1989, pp. 343~360.
- _____, "Severity of the Selection Problem in the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Soci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Workshop Series*, 9004, Univ. of Wisconsin—Madison, March 1990.
- Musgrave, Richard A. and Peggy 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fifth ed., 1989.
- OECD, "The Impact of Consumption Taxes at Different Income Levels", *OECD Studies in Taxation*, 1981.
- _____, *Taxing Consumption*, 1988.
- Oh, Yeon Cheon, "An Evaluation of the Tax Reform for a Value-Added Tax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Distribution of Tax Burde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xport", 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 University, February 1982.
- Pechman, J. A., *Who paid the Taxes, 1965-85?*, Brookings Institution, 1985.
- Pechman, J. A. and B. A.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Brookings Institution, 1974.
- Prest, Alan R., "The Budget and Interpersonal Distribution", *Public Finance*, Vol. 23, No. 1~2, 1968, pp. 79~105.
- Suits, Daniel 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September 1977, pp. 734~752.
- Theil, H., *Economics and Information Theory*, Amsterdam: North-Holland, 1967.
- Wertz, Kenneth, "Empirical Studies of Tax Burdens: Design and Interpretation", *National Tax Association*, Vol. 68, 1975.
- Wulf, Luc De, "Fiscal Incidence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Survey and Critique", IMF Staff Papers, Vol. 22, No. 1, March 1975.

第 3 部 參考文獻

- 姜信逸 a), 「酒類產業의 構造分析」, 『政策研究資料 88-06』, 韓國開發研究院, 1988.
- _____ b), 「酒類產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 가을號, 韓國開發研究院, 1988, pp. 119~138.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 _____, 「關稅行政」, 1992. 10.
- _____, 「금·다이아몬드 유통현황과 밀수동향」, 1992. 12.
- _____, 『輸出入統計』, 韓國關稅研究所, 各號.

- 國稅廳, 「國稅行政概要」, 1992. 10.
- _____, 「酒稅事務處理規程」, 1992. 1.
- 金寬洙, 「地下經濟가 公經濟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1992. 4.
- 法制處 韓國法制研究院, 『大韓民國 現行法令集』, 24 關稅, 담배·人蔘, 1992. 7.
- 三逸會計法人, 『三逸叢書 國稅便覽』, 1992. 3.
- 商工部, 「裡里工業團地現況」, 1991. 12. 31.
- 成明宰a), 「現行 特別消費稅의 問題點 및 向後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3.
- _____ b), 「現行 酒稅의 問題點 및 向後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3.
- 吳敬勝, 『우리나라 貴金屬寶石業界의 問題點과 輸出產業化 戰略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 圓光大學校 附設 產業經營研究所, 『裡里 寶石都市 育成에 관한 研究』, 1990. 9.
- 柳時權, 「附加價值稅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3.
- 財務部, 「關稅政策의 理解」, 1992. 10.
- _____, 『主要國의 租稅關聯統計』, 1992. 9.
- _____, 消費稅制課, 『消費稅制基本統計』, 1992. 9.
- 鄭憲培, 『우리나라 酒類產業의 發展的 改編 課題에 관한 研究』, 國際經營經濟研究所, 1988.
- 崔 洸a),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研究叢書』 42, 韓國經濟研究院, 1987. 4.
- _____ b), 『消費課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7. 12.
- _____, 「酒稅의 課稅論理와 政策課題」, 1992.
- 統計廳(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 年度.
-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研究所,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1993. 4.

Brazeau, Ron and Nancy Burr (edited by Margo Dewar and Howard Collins), *Alcoholic Beverage Taxation and Control Policies*, eighth edition,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1992.

Gold Fields Mineral Services, *Gold*, 1992.

Japanese Monthly Fur Journal for Fur Specialists 第175號, 1991. 4.

Sandy Parker Reports, 1992. 3. 23號와 1993. 3. 15號.